

수탁보고 2007-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서문희
신나리
이정원
이세원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제 출 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의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1월

육아 정책 개발 센터

소장 이 옥

목 차

요 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4. 용어의 정의	17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8
1. 가정내 보육	18
2. 가정내 보육 관련 선행연구	25
III. 가정내 보육 관련 제도 및 현황	29
1. 가정내 보육 관련 법 및 제도	29
2.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35
3.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46
4. 정책시사점	52
IV. 베이비시터 공급 실태	55
1. 베이비시터회사 일반 현황	55
2. 회사, 시터, 부모의 의무와 책임	69
3.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 및 비용	80
4. 베이비시터 관리 및 활동	86
5. 정책시사점	109
V. 베이비시터 이용 및 만족도	112
1. 이용자 특성	112
2. 이용 특성	119

3. 만족도	130
4. 정책시사점	132
VI. 외국의 베이비시터 제도 및 현황	135
1. 일본의 베이비시터 현황	135
2. 미국의 베이비시터 현황	155
3. 캐나다의 베이비시터 현황	172
4. 영국의 베이비시터 현황	184
5.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 현황	196
6. 정책시사점	206
VII. 정책방안	209
1. 기본 방향	209
2. 보육도우미 제도화 방안	210
참고문헌	223
부록	229
1. 프랑스 노동법전 중 특수형태근로자 부분: 가정보육모	233
2. 베이비시터회사 조사표	236
3. 베이비시터 조사표	242
4.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표	244

표 목 차

〈표 I-3- 1〉 베이비시터 회사 설문조사 내용	14
〈표 I-3- 2〉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대상 및 분석 대상	15
〈표 I-3- 3〉 베이비시터 설문조사 내용	15
〈표 I-3- 4〉 조사 완료된 베이비시터 수	15
〈표 I-3- 5〉 베이비시터 이용자 설문조사 내용	16
〈표 I-3- 6〉 조사 완료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수	16
〈표 II-1- 1〉 국제내니협회의 보육관련 가정고용 유형	21
〈표 III-1- 1〉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자 및 상담원 자격조건	33
〈표 III-1- 2〉 유료직업소개업 요금	35
〈표 III-2- 1〉 아이돌보미 교육 내용	37
〈표 III-2- 2〉 아이돌보미 이용비용	37
〈표 III-2- 3〉 보육도우미 이용비용	40
〈표 III-2- 4〉 보육도우미 교육내용 및 시간	42
〈표 III-2- 5〉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현황(2007)	46
〈표 III-2- 6〉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실적(2006)	46
〈표 III-3- 1〉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47
〈표 III-3- 2〉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1)	48
〈표 III-3- 3〉 사회통계조사 결과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49
〈표 III-3- 4〉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50
〈표 III-3- 5〉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51
〈표 IV-1- 1〉 베이비시터 회사의 성격	55
〈표 IV-1- 2〉 프랜차이즈 본사인 경우 가맹점 수	56
〈표 IV-1- 3〉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연도	56
〈표 IV-1- 4〉 베이비시터 회사 현 대표자의 운영기간	57
〈표 IV-1- 5〉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57
〈표 IV-1- 6〉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58
〈표 IV-1- 7〉 서울에 위치한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59
〈표 IV-1- 8〉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평균	60

〈표 IV-1- 9〉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분포	60
〈표 IV-1-10〉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달 기준)	61
〈표 IV-1-11〉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달 기준) 분포	61
〈표 IV-1-12〉 베이비시터 수요 대비 지원자 충분성	62
〈표 IV-1-13〉 본사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함께 하는 업무(복수응답)	62
〈표 IV-1-14〉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시 본사 지원 현황	63
〈표 IV-1-15〉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후 본사 지원 현황	64
〈표 IV-1-16〉 베이비시터 회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65
〈표 IV-1-17〉 베이비시터 회사 특성별 협력 필요성	66
〈표 IV-1-18〉 베이비시터 회사가 가입한 보험과 그 대상	67
〈표 IV-1-19〉 LIG 손해보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 내용	68
〈표 IV-1-20〉 베이비시터 회사 대표자 성별 및 연령	69
〈표 IV-1-21〉 베이비시터 회사 대표자 학력 및 전공	69
〈표 IV-2- 1〉 베이비시터 회원제 여부	70
〈표 IV-2- 2〉 회원제 베이비시터 1년 회비	70
〈표 IV-2- 3〉 베이비시터 회원 가입비	71
〈표 IV-2- 4〉 베이비시터 회사와 시터의 서면계약 및 약관 유무	71
〈표 IV-2- 5〉 베이비시터 약관 구성	72
〈표 IV-2- 6〉 베이비시터 행동지침서 사례	73
〈표 IV-2- 7〉 베이비시터 육아일지 작성 관리 실태	74
〈표 IV-2- 8〉 베이비시터 육아 결과 보고 관리 실태	74
〈표 IV-2- 9〉 베이비시터 육아업무 보고 방법	75
〈표 IV-2-10〉 이용 부모 회원제 여부	75
〈표 IV-2-11〉 회원제 운영시 이용 부모 회비	76
〈표 IV-2-12〉 부모회원 가입비 사례	76
〈표 IV-2-13〉 베이비시터 회사와 부모와의 서면계약 및 약관 유무	77
〈표 IV-2-14〉 부모 회원 약관 구성	77
〈표 IV-2-15〉 부모 회원 이용규칙 사례	78
〈표 IV-2-16〉 부모 기록 사항 요약	79
〈표 IV-3- 1〉 회사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	80
〈표 IV-3- 2〉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81

〈표 IV-3- 3〉	단순택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	81
〈표 IV-3- 4〉	베이비시터 최소 이용시간의 시간당 요금 평균	82
〈표 IV-3- 5〉	베이비시터 최소 이용시간의 시간당 요금 분포	83
〈표 IV-3- 6〉	시간제 베이비시터 추가 요금	83
〈표 IV-3- 7〉	종일제 베이비시터 하루 및 한달 요금	84
〈표 IV-3- 8〉	베이비시터 요금 사례 1	85
〈표 IV-3- 9〉	베이비시터 요금 사례 2	85
〈표 IV-4- 1〉	베이비시터 모집시 연령 제한 여부	87
〈표 IV-4- 2〉	베이비시터 모집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87
〈표 IV-4- 3〉	베이비시터 모집시 결혼 상태 제한 여부	88
〈표 IV-4- 4〉	베이비시터 모집시 선호 자격	88
〈표 IV-4- 5〉	베이비시터 모집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89
〈표 IV-4- 6〉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연령대	90
〈표 IV-4- 7〉	조사된 베이비시터 연령 평균	90
〈표 IV-4- 8〉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결혼상태 및 자녀유무	90
〈표 IV-4- 9〉	조사된 베이비시터 결혼 상태	91
〈표 IV-4-10〉	조사된 베이비시터 자녀 유무와 수	91
〈표 IV-4-11〉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최종학력	92
〈표 IV-4-12〉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최종학력	92
〈표 IV-4-13〉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자격	92
〈표 IV-4-14〉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공공기관 베이비시터 교육 경험자 수	93
〈표 IV-4-15〉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93
〈표 IV-4-16〉	베이비시터의 월 평균 가구소득	93
〈표 IV-4-17〉	등록된 베이비시터가 회사 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거주하는 비율	94
〈표 IV-4-18〉	베이비시터 활동 경력	95
〈표 IV-4-19〉	베이비시터 이전 직업	95
〈표 IV-4-20〉	베이비시터 기본 과정 교육내용	96
〈표 IV-4-21〉	베이비시터 초기 교육시간	96
〈표 IV-4-22〉	베이비시터 교육 담당자	97
〈표 IV-4-23〉	베이비시터 교육시 사용하는 교재	97
〈표 IV-4-24〉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98

〈표 IV-4-25〉	교육의 베이비시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충분성: 베이비시터 회사	98
〈표 IV-4-26〉	초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충분성: 베이비시터	99
〈표 IV-4-27〉	앞으로 가장 받고 싶은 교육내용: 베이비시터	99
〈표 IV-4-28〉	재교육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와 시간	100
〈표 IV-4-29〉	베이비시터 정기 모임 유무 및 주기	100
〈표 IV-4-30〉	베이비시터의 일주일 평균 활동 횟수와 시간	101
〈표 IV-4-31〉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는 아동	102
〈표 IV-4-32〉	베이비시터 활동 선택 이유(복수응답)	102
〈표 IV-4-33〉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이유	103
〈표 IV-4-34〉	베이비시터 외 다른 직업 종사 여부	103
〈표 IV-4-35〉	등록 업체 이외 타 베이비시터 업체 근무 여부	103
〈표 IV-4-36〉	베이비시터 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	104
〈표 IV-4-37〉	베이비시터의 한 달 평균 급여	105
〈표 IV-4-38〉	베이비시터 요금 적절성에 대한 시터 의견	105
〈표 IV-4-39〉	베이비시터의 적절한 요금 수준 의견	105
〈표 IV-4-40〉	시간당 베이비시터의 적당한 수당액	106
〈표 IV-4-41〉	베이비시터 활동 만족도	106
〈표 IV-4-42〉	베이비시터 활동에 만족·불만족하는 이유	107
〈표 IV-4-43〉	베이비시터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할 의사	108
〈표 IV-4-44〉	베이비시터 이외 다른 일을 찾는 이유	108
〈표 IV-4-45〉	비영리업체와 영리업체와의 차이: YMCA소속	109
〈표 V-1- 1〉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연령 및 학력	112
〈표 V-1- 2〉	베이비시터 이용 가구의 월 평균 수입	113
〈표 V-1- 3〉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취업모와 전업주부 비율	114
〈표 V-1- 4〉	조사된 베이비시터 이용자의 취업모와 전업주부 비율	114
〈표 V-1- 5〉	취업한 어머니의 직업	115
〈표 V-1- 6〉	취업한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근무 시간	115
〈표 V-1- 7〉	취업한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월평균 수입	116
〈표 V-1- 8〉	베이비시터 방문 시 돌보는 자녀 수	117
〈표 V-1- 9〉	베이비시터 주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	117
〈표 V-1-10〉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연령 평균	118

〈표 V-1-11〉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자녀의 연령	118
〈표 V-1-12〉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성별	118
〈표 V-2- 1〉	베이비시터 이용 빈도	119
〈표 V-2- 2〉	베이비시터 이용 형태	120
〈표 V-2- 3〉	한 달 평균 베이비시터 이용 시간 및 횟수	120
〈표 V-2- 4〉	주당 아이돌보미 이용 빈도	121
〈표 V-2- 5〉	일일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시간	121
〈표 V-2- 6〉	아이돌보미 이용 시간대	121
〈표 V-2- 7〉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유	122
〈표 V-2- 8〉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이유	123
〈표 V-2- 9〉	현 베이비시터 소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123
〈표 V-2-10〉	타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이용 경험 여부	124
〈표 V-2-11〉	베이비시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125
〈표 V-2-12〉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125
〈표 V-2-13〉	월 평균 베이비시터 이용비용	126
〈표 V-2-14〉	아이돌보미 시간당 적당할 이용요금	126
〈표 V-2-15〉	베이비시터 회사 이용 아동의 기관 이용 여부	127
〈표 V-2-16〉	베이비시터 이용 아동의 이용 기관	127
〈표 V-2-17〉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 실시 인지 여부	128
〈표 V-2-18〉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29
〈표 V-3- 1〉	베이비시터 회사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130
〈표 V-3- 2〉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131
〈표 V-3- 3〉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	131
〈표 V-3- 4〉	베이비시터 이용자 불만 접수 여부: 2007	132
〈표 VI-1- 1〉	일본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2006	137
〈표 VI-1- 2〉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의 자주기준	138
〈표 VI-1- 3〉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연수 I 교육과정: 3일 13시간	140
〈표 VI-1- 4〉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수험자수, 합격자수	141
〈표 VI-1- 5〉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회원 및 사업소의 연도별 추이	143
〈표 VI-1- 6〉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회원수 분포	143

〈표 VI-1- 7〉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 등록 베이비시터 수	144
〈표 VI-1- 8〉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 1일 평균 가동 베이비시터 수	144
〈표 VI-1- 9〉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육관련 매상고(과건과 탁아서비스) ..	144
〈표 VI-1-10〉	일본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유무	145
〈표 VI-1-11〉	일본 방문형 베이비시터 고용형태	146
〈표 VI-1-12〉	일본 방문형 시터의 사회보험	146
〈표 VI-1-13〉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의 이용요금 사례	148
〈표 VI-1-14〉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발행 한도	151
〈표 VI-1-15〉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이용한 육아지원사업 실적	151
〈표 VI-1-16〉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직업	152
〈표 VI-1-17〉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형태	153
〈표 VI-1-18〉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용도 및 좋은 점(복수응답)	153
〈표 VI-1-19〉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이유	154
〈표 VI-1-20〉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만족도	154
〈표 VI-1-21〉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불만사항	155
〈표 VI-2- 1〉	미국 육아지원 유형별 이용 아동수(2003)	156
〈표 VI-2- 2〉	두 가지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 4세 이하 취업모 자녀의 서비스 종합(2000)	158
〈표 VI-2- 3〉	매사추세츠 대학 부설 4-H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162
〈표 VI-2- 4〉	미국 내니 및 가정교사 3개월 교육내용의 예	163
〈표 VI-2- 5〉	미국 베이비시터 체크리스트	164
〈표 VI-2- 6〉	미국 가구의 보육 유형별 주당 이용비용	165
〈표 VI-2- 7〉	내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수입	167
〈표 VI-2- 8〉	내니 보육 비용 추가 필요 여부	168
〈표 VI-2- 9〉	내니의 활동 기간	169
〈표 VI-2-10〉	내니의 활동 유형	169
〈표 VI-2-11〉	내니의 취업 경로(복수응답)	170
〈표 VI-2-12〉	내니 고용 계약 시 서명계약 요구 비율	170
〈표 VI-2-13〉	내니의 선호하는 계약 형태	171
〈표 VI-2-14〉	가정에서 특정 내니를 고용한 최대 기간	171
〈표 VI-2-15〉	내니 1인당 보육 아동 수	171

〈표 VI-2-16〉	두 명 이상 아동 대상의 보육 제공 경험 유무	172
〈표 VI-3- 1〉	캐나다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173
〈표 VI-3- 2〉	캐나다 6개월~5세까지 아동 보육 현황	174
〈표 VI-3- 3〉	캐나다 주정부별 최저임금	176
〈표 VI-3- 4〉	캐나다 주요 주의 가정내 보육(비공식 보육) 최대 허용 인원수	177
〈표 VI-3- 5〉	내니의 자격 조건	178
〈표 VI-3- 6〉	내니 및 베이비시터 등록시 인터뷰 질문	178
〈표 VI-3- 7〉	캐나다 내니 훈련 학교 과정	179
〈표 VI-3- 8〉	캐나다 안전위원회의 베이비시터 양성 코스	180
〈표 VI-3- 9〉	입주 보호제공자 프로그램시 내니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181
〈표 VI-3-10〉	베이비시터 체크리스트	182
〈표 VI-3-11〉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동 보육 보조금 비율	183
〈표 VI-4- 1〉	영국의 서비스 제공 주체별 교육·보육 서비스	185
〈표 VI-4- 2〉	영국의 공적 보육 서비스 및 공적 지출	185
〈표 VI-4- 3〉	영국 취업모 자녀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2002)	186
〈표 VI-4- 4〉	영국 가정내 아동보육 제공자 인증 기준	187
〈표 VI-4- 5〉	영국 보육 국립직업자격(NVQ) 교육과정	193
〈표 VI-4- 6〉	영국 내니 면접 지침	194
〈표 VI-4- 7〉	영국 내니 고용시 순임금별 주당 비용	195
〈표 VI-5- 1〉	프랑스 영아보육 유형 분포	197
〈표 VI-5- 2〉	프랑스 노동법전 중 가사사용인 관련 조항	199
〈표 VI-5- 3〉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203
〈표 VI-5- 4〉	보육모와 AFEAMA 수급자수의 변화(1991-2002)	204
〈표 VI-5- 5〉	프랑스 보육 유형별 이용률 및 비용: 2002	206
〈표 VII-2- 1〉	보육서비스 제 특성 비교	215
〈표 VII-2- 2〉	보육도우미 소개업 조항(안)	219
〈표 VII-2- 3〉	보육도우미 조항(안)	220
〈표 VII-2- 4〉	국고 보조 및 비밀보장 의무 조항(안)	221
〈부표 1〉	프랑스 노동법전 중 특수형태근로자 부분 - 가정보육모	233

그림 목 차

[그림 III-3-1]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48
[그림 III-3-2]	전체 및 비용 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50
[그림 III-3-3]	개인양육지원 비용 지불 영아와 유아 비용 및 비율	52
[그림 IV-1-1]	베이비시터 회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65
[그림 VI-1-1]	일본 베이비시터 자격인정제도의 개요	140
[그림 VI-1-2]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취득 개요	142
[그림 VI-1-3]	일본 시간대별 베이비시터 요금 설정 1	147
[그림 VI-1-4]	일본 시간대별 베이비시터 요금 설정 2	147
[그림 VI-1-5]	일본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사업 흐름도	150
[그림 VI-2-1]	미국 주요 6개주의 베이비시터 시간당 평균 임금	166
[그림 VI-3-1]	캐나다 보육 서비스 유형	173
[그림 VII-2-1]	보육도우미 사업 및 관리 체계도	214

요 약

I. 목적 및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영리 및 비영리부분 베이비시터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여 가정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에서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영리 및 비영리 부문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과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 둘째,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베이비시터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업 근거, 사업자의 특성, 이용대상, 베이비시터 관리 등 현황을 분석한다.
 - 셋째, 영리 및 비영리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이용 아동 및 보호자의 특성, 이용 이유, 이용시간 등 이용양상과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파악한다.
 - 넷째, 외국의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 보육 현황과 이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 다섯째,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가정내 보육과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II.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연구 고찰, 인터넷 검색을 통한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베이비시터회사 조사, 베이비시터 및 이용부모 조사, 관련 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 관련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내외 가정내 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베이비시터 회사 93개소, 베이비시터 385명,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285명 등 3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 추진과정에서 베이비시터 업체 관계자, 이용 부모,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보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Ⅲ.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도와 현황

1. 법 및 제도

- 근로와 관련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나, 가정내(in-home)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내 보육 제공자 소개업 관련법으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이는 세금 납부, 사업 신고, 물적·인적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베이비시터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예치나 보험 가입 등 필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유형

- 비영리 부문 가정내 보육을 관리·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다른 명칭과 목적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보육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육아돌보는 이 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노동부가 지원하는 YMCA 아가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이외에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2008년 예정) 등이 있다.
 - 비영리 부문 가정내 보육 서비스는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늘리고 저소득 가구에게도 개별 보육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과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 영리부분은 완전히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중산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93개소의 베이비시터 회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가정내 보육 이용 현황

- 2004년 기준으로 가정내 보육 이용은 영아의 21.6%는 단독이용이고 3.4%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다. 유아는 3.3%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17.6%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비율은 비혈연과 혈연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율이 높고, 전체 이용을 보면 혈연은 3분위가 가장 낮은 모양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IV. 영리 베이비시터 현황

1. 베이비시터 회사 일반 현황

- 2007년 5월 인터넷에서 검색된 192여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04개 업체가 활동 중이었는데, 이중 93개 업체가 베이비시터 소개업무가 전체 업무의 10% 이상인 베이비시터 업체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본점이 15.1%, 가맹점이 75.3%,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단독업체가 9.7%이다.
- 조사된 업체 본사 중 100.0%, 가맹점 중 44.3%, 단독업체는 88.9%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유료직업소개업소로의 등록은 본사 71.4%, 가맹점 28.6%, 단독 업체는 55.6%로 절반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유료직업소개업 미등록 이유는 법이 요구하는 대표자 조건, 20㎡ 이상의 사무실 및 법으로 정한 상담원 1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 1인이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73.1%이고 대표자 이외에 직원을 한 명 두고 2명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12.9%이고, 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최대 규모는 상근자의 수가 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베이비시터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보면 아동 대상 보험이 전체의 78.5%로 가장 많았으나, 단독업체의 경우는 55.6%만이 아동 대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 업체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교육인력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8.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표준화된 교재 제작, 베이비시터 공동 교육, 응급 상황 발생시 처리 절차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고, 표준화된 규정, 복무 규칙 등이 90%에 다소 못 미친다. 반면에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와 베이비시터 회사 협회 가입은 각각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7.2%, 22.6%이다.

2. 베이비시터 교육 및 관리

- 조사 결과, 회사가 베이비시터 채용시 연령과 경력을 고려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학력이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 회사들이 베이비시터 채용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연령 기준으로 평균 23.5세에서 55.7세까지의 하한 및 상한 연령 기준이 있었다.
 - 학력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31.2%에 달하였는데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고졸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16.1%에 불과하였다.
- 베이비시터회사는 베이비시터 모집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 61.3%가 ‘인성’을 꼽았고 그 다음이 시터 경력 25.8%, 육아경험 10.8%이었다.¹⁾
- 베이비시터로 파견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교육시간은 평균 14시간인데, 업체

1) 이는 베이비시터 이용시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표 V-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베이비시터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있어서도 ‘인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별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편차가 크다.

□ 베이비시터의 사후관리는 미흡하다.

- 베이비시터의 약 20%만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지를 쓰도록 하나 잘 안 지킴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고, 일지 작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6.1%이다.

3. 베이비시터의 특성

□ 현재 활동 중인 베이비시터는 평균 2년 정도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베이비시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베이비시터의 평균 활동 경력이 짧다는 점은 베이비시터가 장기적, 안정적 직업이 되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시터의 학력은 80% 이상이 고졸이하이다.

□ 베이비시터 활동을 선택한 이유를 나타내는데, 적성에 맞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응답과 주변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다는 응답 순이었는데, 반면 수입이 괜찮아서라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4. 베이비시터 이용

□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았다. 또한 이용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며, 이용 아동의 연령은 3세 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우 베이비시터 이용을 장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경향을 가진다.

- 특히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학력으로, 영리 회사 이용자의 71.6%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였다.
- 조사된 베이비시터 이용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나타내는데, 500만원 이상이 23.5%로 가장 다수였으며, 400만원 이상은 55.1%이다. 반면 200만원 미만은 전체의 3.2%에 불과하였다.
- 조사한 93개의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이용 가구 중 취업모의 경우는 약 74.3%인 반면 전업주부는 25.6%이다.

-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과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9.4%, 38.7%로 비슷하게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집안 일로 바쁘거나 평소 자녀를 돌보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몸이 불편할 때는 각각 6.2%, 5.8%, 4.0% 정도로 낮게 응답되었다.
 - 취업모 대부분은 근무시간 중의 대리양육이 61.0%로 가장 큰 이용 이유이다.
 - 미취업모는 사회여가활동이 71.8%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다.
-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는 95.6%와 98.2%가 만족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45.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0%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이가 보육시설에 적응을 잘 못해서, 주변에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보육시설을 믿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9.1%, 8.6%, 6.5% 정도로 보고되었다.

V. 외국의 베이비시터 현황 및 시사점

1.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 및 관리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을 국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종일제 내니 등에게는 시간제 베이비시터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 일본은 전국베이비시터 협회에서 단기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5년간이다. 이외 대학교과 제휴하여 해당자에게 베이비시터 인증서를 주고 있다.
 - 미국은 민간 관련 업체가 연령, 흡연, 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개인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 인증 신청 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처치 훈련,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등을 적용한다.

-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 제공자 대부분이 등록보육모인데, 단기 교육으로 자격을 준다.
-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가정내 보육제공자에 대한 관리를 한다.
 - 영국은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기준청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 자율등록 대상이다.
 - 미국도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등의 일부 주에서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단기 시간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외되지만 종일제 등 장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각종 노동법과 사회보장 관련법의 대상이다.
 - 프랑스는 가정에서의 1인 고용자도 근로자로서 노동 관련법으로 보호한다.

2. 정부의 지원

- 정부와 기업이 가정내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많다.
 - 일본의 영리 베이비시터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주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을 영아보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보육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프랑스의 가정보육 고용자는 노동 관련법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보호 받으며, 가정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와 기업이 마련한 기금으로 지원한다.
 - 미국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등의 주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에 비혈연 및 혈연을 포함한다.

3. 일자리로서의 베이비시터

- 프랑스는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을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이는 영아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사회가 당면한 실업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 이러한 정책으로 보육모 등록, 인증 제도로 수십만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수당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저변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양육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VI.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

1. 기본 방향

- 영리 및 비영리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둘째,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비용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다.
 -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2. 보육도우미 제도화 방안

가. 보육도우미 제 기준 마련

- 보육도우미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
 - 보육도우미 자격은 관련 단체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며, 자격 인증기간은 5년으로 매 5년마다 교육을 받고 갱신하도록 한다.
- 보육도우미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사업체 관련 단체에서 초기교육,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월 1회 집단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협회에 보육도우미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관련 육아 관련 인력 교육과 연계한다.
-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한다.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보육도우미는 자신의 가정에

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한다.

- 보육도우미 파견 후 부모와 보육도우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사업 주체 관리 강화

- 국가가 설치한 기구 이외에 영리, 비영리 민간사업체는 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갖추어 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 －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정도 경영자 연수회 등의 형태로 교육한다. 이 역시 관련 단체에서 담당한다.

- 중앙 및 지방에 보육도우미 소개업 사업자 단체를 둔다. 영리 회사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소개업자의 유형별로 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 － 단체가 거점으로서 사업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보육도우미 인력 교육과 자격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지침이나 기준 등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체 경영자 교육도 담당한다.

다. 공공 보육도우미 사업 확대 추진

- 정부는 지자체 이외에 등록된 비영리 사업체를 우선으로 정부 사업을 위탁한다. 위탁을 받은 업체는 장기적으로 동 단위 1-2개 정도를 목표로 한다.

- 위탁 사업체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 － 위탁 사업체에는 정부가 운영비, 보육도우미의 상해보험과 이용 아동의 배상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정부 사업체 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으로 부모 부담 비용의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라.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영리 부문 베이비시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한다.

- 영리 베이비시터회사도 정부 사업을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증도우미 사용을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 수단의 하나이다.
- 협회에서 참여하여 교육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
- 영리 사업체가 자격인증 도우미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 제도화 방법

- 현재 직업안정법으로 가정내 근로를 하는 사람 소개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영리 업체와 비영리 기구를 모두 포함한다.
 - 새로운 법 제정 또는 기존 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보육도우미 제도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또는 어려운 점은 단순한 보육도우미나 시터와 학습시터, 영어시터 등 기타 기능 시터와 구분, 과출부 등 가사와 아이 돌보기를 동시에 하는 사람의 구별 등이 문제가 된다.

바. 타 정책과의 관련성

- 가정내 보육지원은 보육정책의 주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가정내 보육서비스 기능은 시설보육의 보완 및 대체 기능을 모두 한다.
 - 부모 부담 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수준은 민간시설 이용 아동 지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
-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 예산의 제한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학원에 다니는 아동 조부모나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혼합된 형태의 정책 등장이 가능하다.
-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부모 자녀양육 지원수단의 하나가 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데 주목표를 두고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지만, 이 역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취약보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보육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정보육모의 가정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이라기보다는 가정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설보육화 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 보육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아이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정보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어서 비공식 부분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모 요구는 적지 않다.

정부가 영아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조부모나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웃에서 알음알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찾아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부모들의 개별적인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일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교육하였고, 이를 희망하는 가정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시키는 역할도 부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틈새시장을 찾아서 베이비시터를 가정에 소개하는 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에도 파출부 등을 소개하는 인력 소개업체는 있었으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전문으로 하는 베이비시터 사업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²⁾ 시기는 1996년 3월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업체들은 주로 중산층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따라 베이비시터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점차로

2) 현재는 폐업한 '아이들세상'이 시발업체이며, 98년도부터 놀이친구, 프리맘, 베이비투맘, 케어베이비, 사랑방 아이들, 베이비스카이, 베이비시터 코리아 등의 업체들이 개업하여 시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음.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보육서비스가 주부 및 준고령자에게 단기 훈련으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일자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는 경향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부모의 보육 욕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이유는 보육제공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의 취미생활, 부부의 문화생활, 집안의 경조사, 급박한 외출 또는 육아 스트레스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등 부모의 다양한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 아이들이 함께 보육 받는 것을 꺼리는 부모에게 적합하다는 점, 시간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베이비시터 소개업은 국가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는 틈새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이 영유아 및 아동이고, 주로 부모나 다른 성인이 없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서비스로 보육제공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데, 베이비시터 자격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맡기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베이비시터가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베이비시터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베이비시터를 감시하기 위한 몰래 카메라의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시터 소개업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누구든 베이비시터와 베이비시터를 파견할 가정만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영리사업이다. 그러다보니, 베이비시터 자격, 교육 등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많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일정하지 않다.

또한 비영리 부문에의 가정내 보육 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하기는 하지만 영리 베이비시터 업체에게는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정부는 2001년도에도 베이비시터 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서문희 외, 2001). 그러나 그 동안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의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영리 및 비영리부분 베이비시터에 대한 현황을 검토

하여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관리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베이비시터 소개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영리 및 비영리 부문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과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베이비시터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업근거, 사업자의 특성, 이용대상, 베이비시터 관리 등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영리 및 비영리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이용 아동 및 보호자의 특성, 이용 이유, 이용시간 등 이용양상과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파악한다.

넷째, 외국의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 보육 현황과 이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가정내 보육과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연구 고찰, 인터넷 검색을 통한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베이비시터회사 조사, 베이비시터 및 이용부모 조사, 관련 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가. 문헌 및 기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내외 가정내 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문헌 이외의 자료는 대체로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국내 관련 자료는 주로 베이비시터 소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외국 관련 자료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설문 조사

1) 베이비시터 회사 설문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베이비시터 사업체를 파악하고 업체 대상 조사표를 구조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표를 우선 발송한 후 연구자 또는 전문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재된 사항을 확인, 보완하여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과 우편 수거 방법을 사용하였다.³⁾ 면접조사 대상 업체 중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총 규모는 192개소이었다. 이 중에서 104개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88개소는 인터넷 사이트만 개설하여 두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사 완료된 104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업체 사업에서 베이비시터 관련 업무가 10% 미만의 비중을 갖는 업체는 제외하고 10% 이상이라는 업체만을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 완료 후 제외된 11개 업체는 대개가 베이비시터보다는 파출부 등 일반 인력 소개업체로 베이비시터 업무의 비중이 매우 낮은 업체이다.

베이비시터 회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등록 여부, 회사 일반현황,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 비상시 사후관리 방법, 회원제 운영여부 및 회비, 베이비시터 선호 기준, 베이비시터 교육 및 관리 방법, 등록된 베이비시터 수, 베이비시터의 제 특성, 이용 아동 및 부모의 특성, 관련 업체 간의 교류 필요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3-1〉 베이비시터 회사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현황 및 운영	- 등록 등, 규모, 회원제 여부, 베이비시터 업무 비중, 회사 간 협조 필요성, 대표자 특성
서비스	- 서비스 종류, 비용,
베이비시터	- 신규 및 보수교육, 관리, 선발 기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 및 부모	- 아동연령대, 모취업여부

3) 대체로 사업체의 협조 정도가 낮아서 일부 사업체는 조사표를 수거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와 방문이 이루어졌음.

〈표 1-3-2〉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대상 및 분석 대상

단위: 개소, %

구분	조사 대상				분석 대상			
	본사	가맹점	단독	전체	본사	가맹점	단독	전체
수	22	127	43	192	14	70	9	93
비율	11.5	66.1	22.4	100.0	15.1	75.3	9.7	100.0

2) 베이비시터 설문조사

베이비시터 이용부모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첫째는 영리 베이비시터회사의 협조를 받아 이들 회사에 베이비시터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비영리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YMCA에 의뢰하여 ‘아가야 사업’에 등록된 베이비시터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협조를 받아 교육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베이비시터의 일반특성, 활동 특성, 요구도 및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하는 베이비시터 275명과 YMCA ‘아가야 사업’에서 활동하는 베이비시터 110명에 대한 조사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1-3-3〉 베이비시터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특성	-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자격
활동 특성	- 교육, 활동 빈도, 주로 돌보는 아동, 활동 동기
요구 및 만족도	- 적정 수당, 만족도

〈표 1-3-4〉 조사 완료된 베이비시터 수

단위: 명, %

구분	영리	비영리	계
수	275	110	385
비율	71.4	28.6	100.0

3)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설문조사

베이비시터 이용부모에 대한 조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첫째는 영리 베이비시터회사의 협조를 받아 이들 회사에 부모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비영리로 베이비시터 소개를 하는 YMCA에 의뢰하여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부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베이비시터 이용부모의 일반특성, 아동 특성, 이용행태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 베이비시터 회사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139명과 YMCA ‘아가야 사업’ 베이비시터 이용부모 141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1-3-5〉 베이비시터 이용자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부모 특성	- 연령, 학력, 직업, 근무형태, 소득, 거주지
이용아동 특성	- 연령, 성별, 기관 이용 여부
이용행태	- 이용 빈도, 이용형태, 이용이유, 시터 선택기준
만족도	- 회사 및 시터 만족도

〈표 1-3-6〉 조사 완료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수

단위: 명, %

구분	영리	비영리	계
수	139	141	280
비율	49.6	50.4	100.0

다. 집담회

연구 추진과정에서 또한 베이비시터 업체 관계자, 이용 부모,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여 조사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심층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로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집담회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초기 및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 보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안에 반영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주요용어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소개업, 파견 등이다.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은 아동의 가정에서 친인척 및 이외 사람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보육을 의미한다. 가정 중심의 보육(home-based child care)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가정보육을 공식부분 보육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나,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은 대부분 비공식 부분의 보육으로 재택보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베이비시터는 아동의 가정에서 그 가정 아동만을 보육하는 방문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이고, 베이비시터 소개업은 이러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일을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영리 위주의 방문탁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사회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베이비시터는 내니와 구별된다. 대부분은 베이비시터는 학생 등이 비정기적으로 다른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를 나타낸다면 내니는 입주 또는 출퇴근의 방법으로 탁아를 일정하게 주된 일로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이비시터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의 학생 중심의 아르바이트 개념인 베이비시터와 직업 중심의 내니 개념의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파견과 소개는 다르다. 소개는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반면에 파견은 어느 한쪽에 속한 인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로서의 보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베이비시터회사는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유료직업소개업체로, 직업안정법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파견이라는 용어는 베이비시터를 가정에 보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하므로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는 가정내 보육, 가정내 보육관련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비시터가 주로 가정에서 실시되는 자녀 양육지원서비스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그 개념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내 보육 전반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위상을 짚어보고, 가정내 보육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장단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내 보육

가. 가정내 보육의 위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의 가정에서 실시되는 가정내 보육은 정부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비공식부분의 보육이다. 가정내 비공식부분의 보육은 친척보육(relatives (or kin) care), 일가보육(kith care), 친구에 의한 보육, 이웃에 의한 보육 및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가정내 보육(in-home care)으로 구분할 수 있다(Morgan et al., 2001). 이들은 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를 대신하거나 또는 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있다. 친인척, 친구 이웃에 의한 보육과 그 이외의 사람에 의한 보육은 그 특성이 달라서, 친인척 이외의 보육제공자에 의한 보육이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규제가 없는 만큼 보육인력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결여 등으로 그 내용이 단순 탁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서비스에 따른 가격형성은 온전히 시장경제에 맡겨지게 된다.

이러한 보육에 대하여 국가마다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Pollard(1991)는 국가단위의 이념이 아닌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적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민주주의 각국의 정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회주의(Socialist),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이 나타

나는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4가지 이념 분류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한 보육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시설보육 및 가정을 중심으로 한 보육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은 부모의 선택과 아동 및 가정의 차이를 존중하므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의 비중이 크고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비중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보수주의적 입장은 가정 중심의 보육을 아동 양육, 탄력성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선호하고 시설보육은 규모가 너무 크고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서 취약하다는 입장이므로, 이 역시 가정보육의 비중이 크지만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한편 사회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협동, 사회적 평등, 성 평등 측면에서 시설보육을 선호하고 보육시설을 지역사회서비스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가정 중심의 보육 비중이 미미하다. 끝으로 사회 재생산적 입장에서는 아동, 부모, 보육제공자,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유형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하여 정부가 동일하게 지원하고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가정 중심의 보육도 다양한 보육유형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 가정내 보육의 장단점

베이비시터, 내니 등 가정내 보육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보육제공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아동은 환경의 변화 없이 익숙한 집에서 긴장하지 않고 보육 받을 수 있다. 둘째,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의 취미생활, 부부의 문화생활, 집안의 경조사, 급박한 외출 또는 육아 스트레스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등 부모의 다양한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시간단위로도 비용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보육 대상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동일한 공간에서 보육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집의 여러 아이들이 함께 보육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정내 보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보육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그 질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통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안전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특히 보육인력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매우 중요한 단점이 된다. 둘째 정규적인 가정내 보육제공자는 최소임금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고소득 부부들이 이를 정규적인 보육으로 선호한다 (Morgan et al., 2001). 셋째는 아동의 부모가 고용주로서 피고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만약의 사고 시에 대한 보험가입 등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정규적인 가정보육자를 위하여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거나 최소 임금을 지키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가정내 보육제공자

1) 가정내 보육제공자 유형

우리나라에서의 가정내 보육 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하고, 이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데,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에서는 개별적 서비스 제공자를 이웃 탁아모, 파출부, 베이비시터, 개별 방문지도를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그 이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의 조사 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하였다. 첫째, 탁아모는 이웃 사람이나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단기적으로 교육하여 소개한 사람으로 아동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장소는 아동의 집에서 돌보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돌보기도 한다. 둘째, 베이비시터는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베이비시터 회사를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으로 주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돌보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많은 경우 회원제로 이용하며 시간제로 비용을 지불한다. 셋째, 파출부는 주로 집안 일 도움을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가정에 파견된 사람으로 아동을 돌보기도 한다. 넷째, 개별방문지도는 개인과외 등 특정 개인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이 개인가정을 방문하여 지도를 받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회사에서 단순하게 아이만 돌보는 베이비시터 이외에 가사도우미, 학습도우미, 놀이시터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표 II-1-1>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국제내니협회에서 가정내 보육 관련 직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 2007).

베이비시터는 아동의 가정에 비정기적으로 종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되어 아동에 대한 감독 후견 보호 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비정기적 고용이므로 아동의 가정에 집에 입주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기대하지 않는다.

내니(nanny)는 가정에 고용되어서 동거하거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업무는 주로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사에 국한하며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니는 이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체로 일주일에 40~60시간을 일하며 별도의 지도 및 감독을 받지 않는다.

〈표 II-1-1〉 국제내니협회의 보육관련 가정고용 유형

구분	내용	우리나라와 비교
베이비시터 (Babysitter)	- 업무는 아동에 대한 감독 후견 및 보호 - 종일제 및 시간제로 부정기적으로 고용됨. - 교육 및 자격 기준 없음.	- 유사한 개념
내니 (Nanny)	- 가정에 고용되어서 동거하거나 또는 출퇴근함. - 아동보호와 아동 보호와 관련된 가사에 국한함. - 일정한 교육 요건 없으나, 경험 풍부함. - 주 40~60시간 일하고, 지도 감독 없음.	- 과거 탁아모, 최근 입주시터와 유사
오페어 (Au Pair)	- 외국인으로 가정에서 아이 돌보거나 가사 일을 도우면서 숙식 및 약간의 수당을 지급 받음. - 보육의 경험여부 및 교육 기준은 일정하지 않음.	
Nursery Nurse	- 영국 가정에 고용되며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함. - 아동보호 관련 교육과 준비 및 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oard)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업무는 아동보호와 그에 관련된 가사 일에 국한되며, 주당 50~60시간 근무함.	
Governess	- 일정한 교육수준 이상을 요구함. - 가정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됨. - 학령기 아동의 교육을 담당함. - 근무시간 등 조건은 계약에 의하여 조정함.	- 학습도우미와 개념 유사
부모도우미 (Parent/Mother's Helper)	- 최소 한 부모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 종일제로 고용되며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함. - 아동보호 및 가사일 담당, 보육 경험 제한 없음.	- 파출부, 가사도우미가 유사하나 이는 주로 시간제도 있음.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 2007. URL: <http://www.nanny.org>.

Nursery Nurse는 영국에서 가정에 고용되어 동거하거나 출퇴근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oard)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이들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이들의 업무는 주로 아동 돌보기 및 아동 돌보기와 관련된 가사 일에 국한된다. 대부분 일주일당 50~60시간을 근무한다. 이외 오페어(Au Pair), 가정교사(Governess), 부모도우미(Parent/Mother's Helper) 등이 있다. 오페어(Au Pair)는 외국인으로 특정 가정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아이 돌보기나 가사 일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는 자이다.⁴⁾ 가정교사(Governess)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교육 수준 이상의 사람들로 가정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되어 학령기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모 도우미(Parent/Mother's Helper)는 최소 1인 이상의 부모가 주로 집에 있는 가정에 종일제로 고용되어 함께 살거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이 돌보기 및 가사 일을 종일제로 하는 자를 나타낸다. 짧은 기간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아동 돌보기 경험 유무를 가리지는 않는다.

2) 가정내 보육 제공 체계

베이비시터, 내니 등 가정내 보육제공자는 크게 비영리 유형과 영리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비영리 유형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작동된다. 대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베이비시터 인력과 이용희망 부모를 확보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사업은 놀이방과 같이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을 데려다 보호하는 것,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 인력을 아이 집으로 가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베이비시터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과 베이비시터 파견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각각 가입비 및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주 업무이고, 대개의 사업체가 보육제공자에 대한 교육 등 자질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베이비시터 사업체 수는 세계적으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또한 그 규모도 개인 및 몇몇 시터가 공공으로 개설한 업체 및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부터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가정내 보육 제공자 특성

가정내 보육제공자의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특성, 자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4) 동일하게 교환한다는(as an equal)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로, 숙식과 일정한 노동을 교환하는 것임.

저 연령은 가정내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체로 친인척에 비하여 시터의 연령이 낮고, 시간제 베이비시터보다는 입주제인 내니의 연령이 많은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로데 아일랜드에서 친인척 및 가정내 보육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에 등록된 친인척 및 시터에 대한 조사에서 시터 가정내 보육제공자의 연령은 평균 36세로 친인척 보육제공자 54세에 비하여 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많다. 한편 영국의 베이비시터 사업체에 의하면 내니(Nanny)는 13%만이 2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내니는 3%에 불과하였다.

한편 교육은 비공식 보육제공자는 공식적인 보육자에 비하여 교육 수준 및 보육 관련 교육 및 훈련 정도가 낮다. 그러나 비공식분야에서도 친인척이 아닌 보육제공자의 교육 및 훈련 수준이 친인척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own-Lynos, 2001). 비공식분야의 보육제공자는 직업에 대한 동기 및 직업의식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약한데, 이중에서도 친인척이 가장 약하다.

라. 가정내 보육 이용

1) 이용자 특성

가정내 보육 내용 및 제공자의 질이나 수준 등이 다양하고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몇몇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 및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고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인보다 비공식부분의 보육 및 시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육유형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육이용권(Voucher)을 통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 일리노이주는 66% 메릴랜드주는 30%가 비공식부분 보육인데 시터에 의한 가정내 보육은 각각 25%, 17%로 조사되어서 저소득층의 시터 등 비공식 보육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냈다(Piecyk, Collins & Kreader, 1999). 비공식보육이라도 친인척 이외의 사람을 고용하는 가정내 보육이용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다(NICHHD, 1997).

우리나라에서는 만 3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보육 욕구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육보다는 개별적 대리양육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김승권 외, 2000).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소득계층이 낮을 경우 이용률이 높다(서문희·나정·최혜선, 2006).

2) 가정내 보육 이용 이유

부모의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택 조건으로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설이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비공식 보육제공자는 부모 사정에 따라 시간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이나 가정에서 탄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육제공자에게서 탄력성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설보육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탄력성이 높은 보육제공자를 찾게 되기 때문에 가정내 보육을 이용하는 것이다. 탄력성은 친인척, 가정내 보육, 가정보육 순으로 높고 시설보육이 가장 낮다. 미국의 경우 보육 시설에서의 연장보육은 낮은 이용률로 실패하게 되었다(Brown-Lynos, 2001).

아동의 연령도 보육 유형과 관련성이 있다. 아동의 연령이 3세 미만이면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게 되고 3세 이상이면 시설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가정적 분위기가 부족한 보육시설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안전·교육면에서의 불신 또한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에는 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게 때문에 단순보호를 위한 가정내 보호를 선호한다고 한다(Morgan et al. 2001). 우리나라에서도 만 3세 미만인 자녀일 경우 교육보다는 안전 및 보호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이웃에 의한 대리양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0, 서문희 외, 2004). 이외 특별한 요구를 가진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에서의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 저소득층이 비공식부분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일치된 결과는 아니지만 비용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Fuller et al, 2000).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조금의 지급과 시설보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Piecyk, Collins & Kreader, 1999).

보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도 가정내 보육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Brown-Lyons, 2001). 가정내 보육의 가치는 부모가 보육제공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보호는 부모의 보호와 같은 보호이고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강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부모와 보육제공자가 문화 및 종교적으로 유사하고 인생이나 보육에 대한 견해가 유사한 등의 공통점이 많다는 데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보육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관보육을 하는 부모는 인지 및 사회발달에 강조하며 전문성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비공식부분의 보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이보다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3) 부모와 아동의 경험

보육의 질에 대한 개념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설보육이 가정내 보육보다 높고, 공식보육이 비공식보육보다 높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보육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비공식보육은 시설보육에 비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교육이나 사회성 발달보다는 신체적 발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한 아동 잘못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Zinsser, 1991). 이외에 책이나 교육적인 장난감의 이용 등에서도 떨어지고 그 대신에 TV나 비디오 시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Porter, 1998). 이러한 보육과정 상의 차이는 시설보육아동이 가정내 보육 아동에 비하여 인지 및 언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의 질에는 보육유형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부모의 만족에 단순한 보육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일 및 보육제공자와의 관련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 아프거나 할 때 비공식 보육이 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은 상쇄된다고 하겠다.

2. 가정내 보육 관련 선행연구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시설보육에 대비한 가정보육, 영리 사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베이비시터, 그리고 비영리 가정보육도우미 파견사업 관련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정보육 관련 연구

먼저 가정보육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문희 외, 2002)에서는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의 가정보육제도를 검토하고 가정보육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5명 미만의 아동을 자기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국공립 또는 법인 보육시설, YWCA 등 비영리단체 등에 가칭 가정보육모지원센터를 두고 가정보육모와 가정보육모를 필요로 하는 보호자를 연결시켜 주자는 것이다. 가정보육모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육모를 지원하기, 아동가족보육모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배치하기, 제공된 보육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행정적 책임을 맡기 등이다. 또한 특히 가정보육모는 혼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육의 질을 모니터하고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옥 외(2004) 연구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가정보육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영아보육 수요자인 0세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영아보육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보육모와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정보육교사와 가정보육모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 사업 실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정보육교사는 자기집 소규모 가정보육을, 가정보육모는 아이 집에 파견되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육아지원센터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베이비시터 연구

영리 부분에서의 파견 서비스인 베이비시터제도에 대해서는 2002년에 한차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벤처사업으로 기관 중심의 보육 틈새 시장을 겨냥한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체가 등장하자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문희 외, 2002)에서 이러한 베이비시터회사 설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베이비시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베이비시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시터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은 업체들 간에 협력 위에서 공동으로 마련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베이비시터 자

격기준, 교육과정, 시터 및 아동 안전 기준, 부모의 의무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각종 양식 작성의 마련 및 베이비시터 교육의 실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협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체는 베이비시터회사 단체의 대 정부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 체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사회적 일자리 관점에서의 연구

최근에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등 비영리 파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사회적 일자리는 주로 유럽국가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넓게 정의될 수 있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3섹터형 기업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integration)⁵⁾을 위해 단기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다(전병휴 외, 2003).

성지미 등(2006)은 노동부 지원으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영아보육을 설정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탁아모형, 영아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형, 그리고 시설형태의 영아보육센터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영아보육센터모형은 보육교사 이외에 여성직업훈련기관에서 100~120시간 영아발달·안전 및 보육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인증 받은 유자녀 기혼여성을 보조요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이용자는 기혼취업여성 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등록한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노동부는 교육기간 중 훈련비 지원 및 보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의 교사인건비 80% 이외에 원장 및 보조요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보육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탁아모형은 100~120시간 정도 교육받은 2인 1조 1팀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가정에서 4명까지 보육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 제공자 1명이 설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주거환경 제공 및 가족사항/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베이비시터형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가정보육교사 1인이 영아의 집으로 파견되는 형태이다. 일정한 보육보조원

5) 프랑스의 경우 insertion임.

으로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신분보장이 확인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들 모형은 아동보다는 성인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아동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연구진도, 표준교육프로그램과 자격에 대한 규정, 관리 주체 선정 및 법제화,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정립 등을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민자 등(2006)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을 중심으로 비영리 가정내 보육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가정내 보육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경영과 재정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등록 대상범위 설정, 등록기준, 아이돌보미 양성 프로그램의 교과 기준안, 이용요금 기준과 보험 등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설계에 반영되었다.

Ⅲ. 가정내 보육 관련 제도 및 현황

현재 가정내 보육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일자리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간 민간 비영리단체나 영리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가정내 육아지원이나 파견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비혈연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이웃, 기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게 된다. 제3장에서는 보육제공자 교육기관, 정부, 비영리 및 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가정내 보육서비스 등 가정내 보육 서비스 관련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내 보육 관련 법 및 제도

가. 가정내 보육 제공자의 법적 위상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법 제1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최소연령 제한, 최저 임금 등 모두 베이비시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도 베이비시터회사나 베이비시터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법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이며, ‘파견근로자’라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베이비시터 회사가 이들을 가정과 연결한다고 하여도 이들은 베이비시터 회사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회원으로 확보하여 소개만 할 뿐이다. 베이비시터 회사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파견한다고 하여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부분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준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적용 대상인 항목⁶⁾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나. 가정내 보육 제공자 소개업 관련 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베이비시터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회사가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가정과 연결한다고 하여도 이들은 소개사업자가 이들을 고용하여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회원으로 확보하여 소개만 할 뿐이다.

베이비시터 소개업과 관련된 현행 법규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을 들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현행 법규상 방문택아 회사 설립자는 세금납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를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개인, 법인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용

6) 사용사업주가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시간(제50조), 탄력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적용의 제외(제63조), 근로시간(제69조), 야외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시간외 근로(제71조), 갭내근로의 금지(제72조), 생리휴가(제73조), 임신부의 보호(제74조), 육아시간(제75조)임.

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방문탁아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할 수 있다.

2)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신고와 유료소개사업자의 등록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공익단체는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이들 비영리 법인 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일부 법인, 단체는 기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 소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 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가 이에 해당된다.

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문탁아 사업체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키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⁷⁾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적용 받게 된다.

(1) 소개업체 물적 인적 기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자 자격,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담원 및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이 요구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개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임원 2인 역시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 사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직업상담원은 사업소마다 1명을 두어야 한다(표 III-1-1 참조).

여기서 사업자 및 법인의 임원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란 직업상담사,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 자격자, 노동조합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노무관리업무전담 2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 초·중등 교사 자격자로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또한 법 제22조에서는 직업소개소에서는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직업안정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직업안정법에서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음.

〈표 III-1-1〉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자 및 상담원 자격조건

구분	자격
사업자 및 법인체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령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경력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 2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 - 초·중등 교사 자격자로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직업상담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초·중등 교사 자격자로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 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직업상담사

자료: 직업안정법.

(2) 재정 보증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직업소개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자 및 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는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 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

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3) 소개 대상 제한

직업소개 대상으로 종전에는 법 제21조의3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하는 경우 18세 미만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으로 2007년 법 개정으로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경우도 장소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소개 대상 제한은 무료직업소개업에도 적용된다.

(4) 요금

직업안정법 제21조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업자로 등록하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업 요금을 기준으로 베이비시터에 적용하여 요금은 지급임금의 10%이고,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유료직업소개업 요금

구분	자격
일반	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고위관리자, 전문직 1개월 이상	- 20% 범위에서 자율적
패션 및 기타 모델	- 20% 범위에서 자율적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중 회화지도	- 10% 범위에서 자율적
회원제 소개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같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자료: 노동부 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2.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가. 가정내 보육 제공 유형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가) 사업 수행 및 관리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만 0세~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조항은 제21조 가족해체예방, 제22조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제30조 가정봉사원 조항이다. 특히 제3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인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지원기관으로 사업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돌보미 및 이용회원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관리 평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 양성 및 파견,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앙건강가정센터가 각 기관에 시달한 지도 및 감독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활동일지를 기간 내 제출받아 보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돌보미들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또한 현장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 가정의 의견을 청취하여 돌보미 회의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시 이를 반영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가정에 전화로, 연말에는 심층 면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자원 봉사자, 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돌봄 현장 파견 및 점검, 면접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후 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

사업 예산은 2007년도에 39억 5천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70%인 26억원이고, 30%인 13억 5천만원이 지방비이다.

나) 아이돌보미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이다. 돌보미 교육은 교육시간이 일반은 40시간이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이다. 교육시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우대자는 교육과정 40시간 중 후반기부터 참여한다(표 III-2-참조).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고, 주말,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비로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다.

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3회 이상 접수 된 경우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 받는 경우에 돌보미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표 III-2-1〉 아이돌보미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아이돌보미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원리이해(1) (2) - 영·유아 교육방법(동화구연, 미술 지도, 음악지도, 언어지도) -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 지역사회네트워킹 및 사례실습 - 가족지원 사례 면접실습, 육아상담 사례실습 - MBTI를 통한 성격유형의 이해,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스타일 - 아이돌보미 전문요원의 역할과 기본업무 및 방문예절 - 자녀의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자녀의 건강관리지원 - 자녀의 식습관 지도방법, 부모교육: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 - 부모상담 기법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관리 사례 토의 - 아동 문제 행동과 육아지원 기술 사례 토의

자료: 여성가족부(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다) 이용비용

부모가 부담하는 이용비용은 저소득 가정(차상위 130%)은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며 일반 가정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요금 조정 가능하고, 한 달에 80시간 이용이 원칙이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아이돌보미 이용비용

단위: 원

시 간	아동 1명		아동 2명		비 고
	차상위 130%	일반	차상위 130%	일반	
기본 2시간	2,000	10,000	3,000	15,000	- 회원 회비: 없음
기본 3시간	3,000	15,000	4,500	22,500	- 토, 일, 공휴일은 심
추가시간당	1,000	4,000	1,500	6,000	야시간(오후 9시 ~ 오
심야시간당	1,500	5,000	2,500	7,500	전 8시) 요금 적용

자료: 여성가족부(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라)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지침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용자 가정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하기 등이며 가사활동은 제외된

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준수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이다. 지속되는 서비스의 경우 활동일지는 7일 단위로 하고, 일시적인 서비스의 경우 3일 이내에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시작 전과 종료 후 센터 실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아이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돌보미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가) 사업 수행 및 관리

경기도가 2008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숙련된 전문보육교사를 0세아 가정에 파견하여 1:1로 0세아를 보육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 유형을 ‘전담기관 관리운영’과, ‘기존 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나누고 있다. 전담기관은 경기도내에 산재한 9개 보육정보센터를 말하며 기존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희망해 시장군수가 선정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보육정보센터에는 사업관리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사업 참여 시설장에게는 월 30만원의 관리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5억9천여 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인 0세아 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 정서를 감안하여 24개월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제·자매 중 장애아나 미취학아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과 동시에 교사 1인이 0세아 2명을 보육하는 0세아 전담보육시설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비용과의 차액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두개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0세아 전담보육시설에 비하여 단순히 자격이 있는 교사 소개에 그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이용을 유도할 동기가 미약하다.

나) 가정보육교사 자격, 교육, 근무조건

가정보육교사의 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주어진다. 도·시·군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를 선발하며 40시간의 가정보육교사 전문과정교육을 실시 후 현장에 배치한다. 경기도는 2008년 교육인원으로 370명을 예상하고 있다.

교사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교사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용 부모는 0세아의 상해 및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장소는 영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와 교사 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집에서 가능하다. 보육시간 역시 부모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

3) YMCA 아가야 사업

가정내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하거나 이용자와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는 매우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업인 YMCA의 ‘아가야’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각각 노동부와 공동모금회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다.

가) 사업수행체계

YMCA에서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과 ‘아가야’ 사업을 통하여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과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가야 사업은 시간제 보육공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시에 베이비시터 파견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야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가야는 3년 기한으로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에 지원센터가 있고 전국 YMCA 16개 개소에 시간제 육아센터를 두고 시간제 공간보육을 하고 동시에 가정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 베이비시터 파견 이외에 영유아의 즐거운 성장을 돕는 놀이 안내 시터, 방학 및 노는 토요일 체험활동 도우미시터, 교회, 동우회, 친목회, 공공기관 등 행사시 혼합연령지도가 가능한 기관 파견 시터, 보조교사로 도움을 주는 보육시설 파견 도우미 시터 등 다양하다.

나)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베이비시터로서의 자격은 보육·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여성, 한 부모, 실질 가장 여성, 고학력 실업여성, 30~40대 고졸 여성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과정교육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는 회비를 센터에 납부하며, 센터는 이를 시터들의 교육 및 활동에 사용한다. 월 회비는 월수입 20만원 미만은 없고, 월수입 20만원~50만원은 1만원, 월수입 50만원~90만원은 2만원, 월수입 90만원이상은 3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아가야에 회원으로 가입한 베이비시터는 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할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돌봄 복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약관에 베이비시터 자격 상실 조항을 두어서 베이비시터 월 1회 정기모임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제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약관에 있는 의무와 복무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로 재교육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와 태도가 불량할 경우, 고객과 예약을 해놓고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자격 승인절차에 걸려사유가 있을 때 등에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다) 이용비용

<표 III-2-3>는 이용비용을 나타낸다.

<표 III-2-3> 보육도우미 이용비용

단위: 원

시 간	1명	쌍둥이	3명	비 고
기본 3시간	16,000	19,000	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 공휴일은 심야시간 적용 ▪ 심야시간: 평일 아침 9시 이전, 저녁9시 이후 / 토요일 6시 이후 ▪ 휴일 시간당(1명)1,000원 추가 ▪ 교통비: 아침 8시 이전 3,000원 밤11시 이후 5,000원 밤12시 이후 10,000원
추가시간당	5,000	6,000	7,000	
심야시간당	6,000	7,000	9,000	
평일 8시간	41,000	49,000	57,000	
1박	73,000	83,000	98,000	
월-금(오전9시~오후6시)	900,000			▪ 아이1명 추가당 100,000
월-토(오전9시~오후6시)	1,000,000			▪ 쌍둥이1명 추가당 150,000

자료: YMCA(2007).

비용은 아동수별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 1명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에 16,000원 이고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외 종일, 1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하게 서비스별 비용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라) 활동 및 지침

베이비시터 약관을 정하여 아가야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약관 제5조 베이비시터의 의무와 복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가정에 방문할 경우 아가야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시작 10분전에 도착해야 하고, 육아일지 및 도우미 출퇴근 확인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베이비시터 섭외 시 결정된 금액 외에 탑이나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면접을 보거나 시터로 활동하는 동안 센터에 대한 불평이나 이용금액에 대한 불평을 해서는 안되며, 베이비시터는 활동하는 동안 알게 된 센터 및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베이비시터는 근무 중 무단이탈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이용자 집으로 불러들여서는 안된다.

마) 책임과 의무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는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베이비시터는 업무 중에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당사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고,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시터가 책임을 진다고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센터도 베이비시터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베이비시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4)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가) 사업수행체계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은 실직여성을 보육도우미로 교육하여 보육시설에서 보호받

기 어렵거나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보육부담 경감으로 간접적인 소득지원 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여성노동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저소득 135가구에 무료 보육도우미가 파견되었다.

보육도우미 파견가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전자는 영아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육하는 것이고, 후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동을 부모 귀가시간에 맞추어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사업에는 수혜가구와 1:1 상담 및 사례관리도 실시하는 등, 보육도우미 파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나)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보육도우미는 실직여성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훈련생 모집시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진단서만 첨부하면 된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신입교육시간은 80시간 교육, 24시간(1박 2일 MBTI 교육), 현장실습 40시간으로 총 144시간이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보육도우미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보육도우미 (14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관계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이해 - 영유아기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 이해, 영유아 놀이지도(언어, 음률 지도) - 돌봄 노동 사회화와 조직화의 필요성, 직업인의 자세 -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과의 대화법, 문제 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 - 방과후 아동지도 및 학습, 생활지도 프로그램 짜기 -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종이접기, 풍선아트 동화구연 등) - MBTI를 통한 자존감 향상 훈련,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돌봄 -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만들기 및 식단 짜기 -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부모교육훈련, 빈곤가정에 대한 이해 -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사회(아동)복지의 역사 - 보육 정책 현황과 과제

자료: 한국여성노동자회(2007). 내부자료.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월 1회 보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월례모임을 통하여 서로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도우미 급여는 영아보육도우미는 시간급 3,503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28,759원이 기본이고,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674,710원이 실 수령액에 된다. 야간도우미는 시급 5,300원으로 최대 6시간을 일하면 699,600원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실 수령액이 651,072원이 된다.

쌍둥이, 연년생 등 중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1명 추가될 경우 월 10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아이 한명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와 간단한 보살핌이 필요한 큰 아이가 추가될 경우 월 5만원 추가수당 지급한다.

근로시간은 영아보육도우미는 오전 8시 이후 하루 8~11시간(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급에서 제외), 야간보육도우미는 4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영아보육도우미는 3개 보험에 가입하고, 야간보육도우미는 희망자에 한해 3개 보험에 가입한다. 보육도우미에 대해 기관에서 단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배상의 범위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하여 아이가 다쳤을 경우 적용되도록 한다.

영아보육도우미는 월 1회 유급 월차휴가를 사용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보육도우미의 월차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 마련은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영아보육도우미의 병가, 경조사 휴가 시 유급휴가로 하고 단체에서는 수혜자에게 대체인력을 파견한다.

다) 이용비용

보육도우미 이용은 무료이다. 보육도우미 수당은 모두 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라) 활동 및 지침

보육도우미 기본 활동은 아이 돌봄, 건강 돌봄, 정서 돌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 돌봄은 우유이유식 먹이기, 목욕과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잠재우기 등이며, 건강 돌봄은 질병 소독, 병원 또는 보건소 가기, 약 먹이기, 예방접종하기이고, 정서 돌봄은 음악, 동화책 읽어주기, 연령별 놀이지도, 언어발달 지도 등이며 이외에 아동용품정리와 아기 옷 빨래가 포함된다.

보육도우미는 매일 가정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및 학습

지도를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5) 영리 베이비시터회사 유형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종의 벤처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도권 보육의 사각지대인 가정내 보육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영리사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베이비시터 파견 업체 현황이나 이용자 규모, 시장의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고, 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 교육과정, 베이비시터와 아동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없고, 시터를 근로자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베이비시터에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소득공제 등 간접적 조세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서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시간제 베이비시터 전문업체와 가정을 대상으로 홈 아웃 소싱 성격의 포괄적인 인력 파견을 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 서비스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일반 탁아 이외에도 장애아동 탁아, 소풍 및 탐방탁아, 간호탁아 등이 있고, 장소도 아동의 가정뿐 아니라 호텔 및 콘도로 시터를 파견하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공연장, 운전연습장 등에서 고객에 대한 부가적 서비스로 마련된 탁아놀이방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 사업으로 생일파티, 장난감 파티 등의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아동조기 영어교육방법의 일환으로 영어시터에 의한 탁아가 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오피어와 같이 영어권의 외국인을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서 아동을 돌보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몇 업체에서는 자녀관찰 시스템을 개발하여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베이비시터 업체의 서비스는 예약제를 원칙으로 제공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특히 중산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 모여 있다. 이들 베이비시터 업체는 다수다 영세하게 운영되는데,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업체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에 대해서는 제 IV장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나.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지원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교육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중심적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평생능력개발 사업 중 하나로 주부 및 준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가정내 보육제공자 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이다.⁸⁾ 이는 2주 과정으로 육아 돌보는 이 프로그램과 4주 과정의 영유아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노동부 지원으로 23개 지방에서 훈련기관을 추천받아 훈련비를 지원한다.

주부 및 준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에게 우선고용직종을 중심으로 단기간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및 가계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실시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등이다.⁹⁾ 프로그램은 간병인, 산후조리사, 독서지도사, 가사보조원, 경비원, 미용보조원, 개호복지사 등 매우 다양하다. 2007년에는 135개 기관에 훈련이 위탁하고 있다.

육아돌보는 이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관에서 위탁교육하고 있고, 1인당 64,000원이 지원된다. 교육대상은 심신이 양호하고 근로능력을 갖춘 주부 및 준고령자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표 III-2-5>와 같다.

영유아생활지도는 실업자, 주부 및 준·고령자 등으로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표 III-2-5>와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20% 이내에서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게 된다.

이 두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인원은 2007년 현재 육아돌보는 이 430명, 영유아생활지도 227명이다. 2006년 실적은 다음 <표 III-2-6>과 같다.

8) 2주 과정의 산모와 신생아 돌보는 이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그 대상이 협소하여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함.

9)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실업자, 영세농어민 등에게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 실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노동부장관은 1개월이내 단기훈련 실시·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는 법 조항 등임.

〈표 III-2-5〉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현황(2007)

구분	교육내용	위탁교육기관	인원
육아 돌보는 이 (2주,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실무분야 ○육아돌보는 이의 필요성과 전망 ○육아돌보는 이의 역할과 자세 ○아동의 성장발달 이론 ○아동의 건강관리 ○자율편성(30% 이내) ○총체적 실습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종합복지관 자활후견기관	430명
영유아 생활지도 (4주, 8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영유아 생활지도의 개념 및 목표 ○영유아 발달의 특징 ○영유아의 공격성 ○영유아 문제행동의 관련 요인 ○효율적인 영유아 생활지도의 전략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영유아의 성교육 ○영유아의 자아존중감 ○자율편성(20% 이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아카데미 등	227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7). 내부자료.

〈표 III-2-6〉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실적(2006)

단위: 명, %

구분	입교(A)	수료(B)	취업(C)	수료율(B/A)	취업률(C/A)
육아 돌보는 이	431	416	385	96.5	92.5
영유아 생활지도	324	305	257	94.1	84.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7). 내부자료

산업인력공단 지원을 받는 교육 이외에도 단체별로 많은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고, 개인 베이비시터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 업체에서의 교육시간을 일정하지 않다.¹⁰⁾

3.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그러면 이러한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제3절에서는 가정내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10) 업체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의 비디오 시청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가. 영유아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이 절에서는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 자료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영아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는 25.1%이고, 유아는 20.9%로, 영유아 모두 22.6%이다(표 III-3-1 참조).

또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기관과 함께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 영아의 21.6%는 단독이용이고 3.4%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다. 유아는 3.3%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17.6%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또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 중 2.4%인 26명이 2개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2명은 3개의 개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을 기관이용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단독 이용에 한하여 산출해보면 영아는 혈연 19.3%, 비혈연 2.6%이다. 유아는 혈연 3.0%, 비혈연 0.3%이다. 영유아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0세아는 혈연의 비율이 모두 19.6%인데 동거조부모 7.0%, 비동거 조부모 11.2%로 다수이고 비동거 친인척도 2.2%가 된다. 비혈연은 3.3%이다. 베이비시터도 1.1%이다. 만1세아는 혈연의 비율이 21.0%, 비혈연 3.3%로 0세아와 유사한 수준이다. 만2세아는 혈연 17.5%, 비혈연 1.4%로 혈연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3세가 되면 혈연의 비율은 7.7%로 급격하게 감소한다(표 III-3-2 참조).

〈표 III-3-1〉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소계
전체 보육대상아동(a)	1,171	1,791	2,962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	294	375	669
비율(b/a)	25.1	20.9	22.6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253	59	312
비율(c/a)	21.6	3.3	10.5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 이용 아동(d)	40	316	356
비율(d/a)	3.4	17.6	12.0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표 III-3-2〉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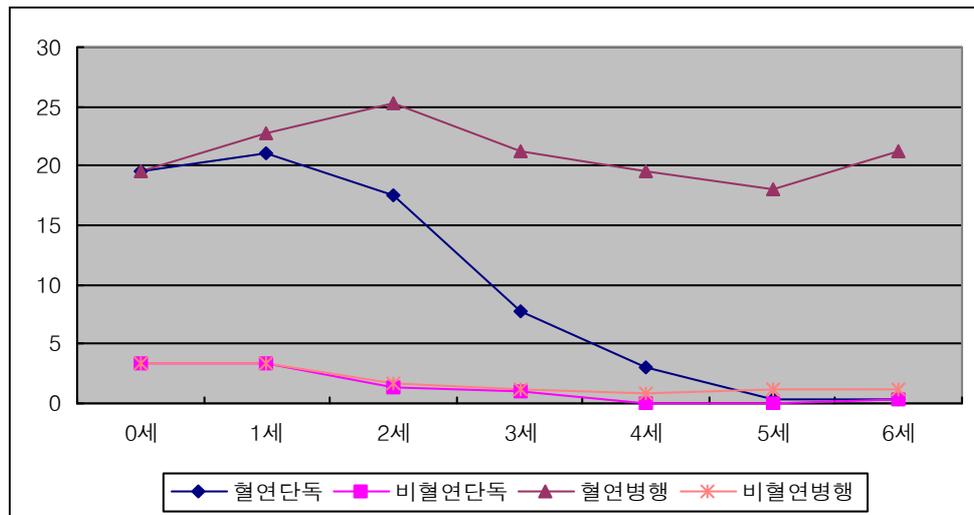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혈연	19.6	21.0	17.5	7.7	3.0	0.4	0.3	9.4
동거조부모	7.0	7.4	8.3	4.3	2.0	0.2	0.3	4.1
비동거조부모	11.2	12.3	7.3	3.2	0.6	0.2	-	4.6
동거친인척	0.3	1.3	0.5	-	-	-	-	0.3
비동거친인척	2.2	1.0	2.1	0.7	0.4	-	-	0.9
비혈연	3.3	3.3	1.4	1.0	-	-	0.3	1.1
이웃탁아모	2.2	2.3	1.4	0.5	-	-	0.3	0.9
베이비시터	1.1	1.0	-	-	-	-	-	0.1
파출부	-	-	-	0.5	-	-	-	0.1
(수)	(358)	(391)	(422)	(441)	(508)	(493)	(348)	(2,962)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동거비혈연은 이용한다는 응답이 없어서 삭제함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그림 III-3-1]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이는 [그림 III-3-1]에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기관과 병행하는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비율은 2세 때부터 크게 벌어져서 3세 이상이 되면 이용률

자체도 급격하게 낮아지지만 대부분이 기관과의 병행이용이고 단독이용은 소수가 된다.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도 아동연령이 많아지면서 단독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

최근의 유사한 조사 자료로는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¹¹⁾ 자료가 있다. <표 III-3-3>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의 기관 및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전체 영아 중 혈연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부모 22.9%, 기타 친인척 3.7%, 탁아모 등 비혈연이 1.5%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2005년 자료는 앞에서 제시한 2004년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2005년 사회통계조사는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12.0%로 추정하여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3> 사회통계조사 결과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단위: %(명)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영아 전체
조부모	22.2	25.0	21.4	22.9
기타 가족 친인척	4.5	3.5	3.3	3.7
탁아모 가정부 이웃사람	1.3	2.3	1.0	1.5
(수)	(713)	(925)	(889)	(2,527)

자료: 통계청(2005). 2005년 사회통계조사 원자료.

개인서비스 이용을 소득계층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일반적 이용과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개인서비스 이용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은 1분위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비교적 높고 3분위까지 점차 낮아져서 최저 이용률은 3분위이고 이후 점차 높아져서 9분위가 가장 높고 10분위는 이보다 다소 낮아지는 모양을 나타냈다(표 III-3-4 참조).

비혈연은 소득 7분위를 넘으면서 비율이 2% 수준으로 증가하고 10분위는 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국 전체적인 이용률은 3분위까지 낮아진 후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3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 시기는 6월 19~28일 10일간임.

<표 III-3-4>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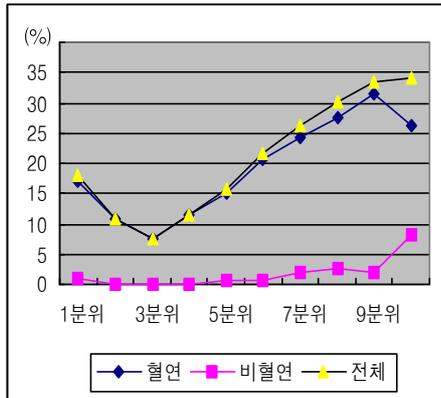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용 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혈연	비혈연	소계	
전체	18.7	1.5	20.2	6.9	1.4	10.5	(2,940)
1분위	16.9	1.0	17.9	-	-	2.1	(195)
2분위	10.8	-	10.8	1.5	-	3.4	(324)
3분위	7.5	-	7.5	2.5	-	4.4	(320)
4분위	11.5	-	11.5	1.9	-	3.1	(321)
5분위	15.1	0.6	15.7	4.9	0.6	7.3	(344)
6분위	20.8	0.8	21.6	5.3	0.8	8.3	(361)
7분위	24.2	2.0	26.3	9.6	2.0	14.7	(293)
8분위	27.6	2.6	30.3	13.8	2.0	19.4	(304)
9분위	31.6	2.0	33.6	17.2	2.0	23.2	(250)
10분위	26.3	8.3	34.2	15.4	7.9	24.6	(228)
$\chi^2(df=9)$	112.8**	91.9**	151.5**	147.2**	93.5**	190.6**	-
10분위/1분위	1.6	8.3	1.9	(10.3)	(13.2)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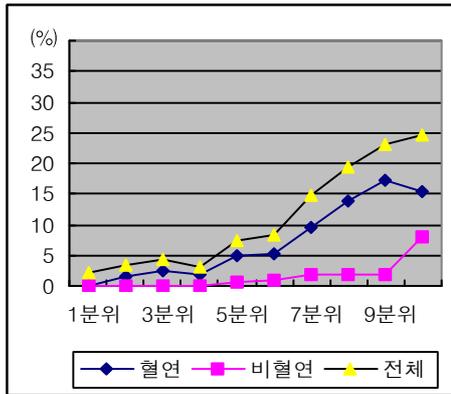
주: 1) ** p < .01

2) 분위 구분에서 괄호 안은 최소분위대비임.

자료: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 비용 걱정 분담 방안 연구.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그림 III-3-2] 전체 및 비용 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에서 비혈연은 전체 이용률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혈연은 일반 이용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 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II-3-2 참조).

나. 이용비용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비용은 전체적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를 보면 비용은 5.0배, 소득 대비 비율은 0.7배이다(표 III-3-5 참조).

〈표 III-3-5〉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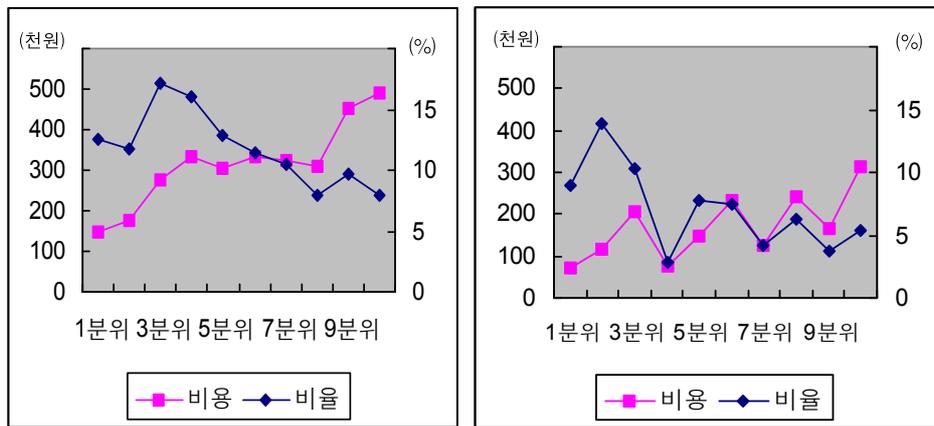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95.2	8.4	13.9	372.7	10.0	17.2	203.6	6.4	10.0
1분위	80.1	9.3	9.3	150.0	12.5	12.5	72.3	8.9	8.9
2분위	125.2	13.5	15.6	176.7	11.8	17.4	115.3	13.9	15.3
3분위	238.3	13.4	17.1	277.3	17.1	17.7	204.8	10.3	16.6
4분위	257.6	12.1	17.6	335.7	16.1	23.6	74.1	2.8	3.5
5분위	224.2	10.2	14.7	303.7	12.8	19.6	146.5	7.7	9.9
6분위	281.6	9.4	14.2	331.4	11.5	18.2	234.9	7.5	10.5
7분위	243.9	8.0	12.0	323.3	10.5	15.2	127.4	4.2	7.3
8분위	283.2	7.2	14.4	310.0	8.0	16.0	243.7	6.2	12.0
9분위	345.6	7.6	12.7	450.3	9.7	15.9	164.5	3.8	7.1
10분위	400.4	6.6	14.4	488.9	7.9	19.6	312.9	5.3	9.3
F	4.2**	3.0**	0.5	2.34 [†]	2.5 [†]	0.6	4.0**	3.1**	1.3
10분위/1분위	5.0	0.7	1.5	3.3	0.6	1.6	4.3	0.6	1.0

주: * $p < .05$, ** $p < .01$

자료: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 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아동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유아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을 찾

기 어렵다. 이는 개인양육지원에는 소득이나 취업 요인 이외에도 가족특성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아에게 개인양육지원은 기관 이용에 대한 보조적 또는 중복되는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III-3-3 참조).



<영아>

<유아>

[그림 III-3-3] 개인양육지원 비용 지불 영아와 유아 비용 및 비율

4. 정책시사점

본 장에서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가정내 보육이 정부, 비영리기관, 민간업체 등에 의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정내 보육 관련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내 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립이 필요하다.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기서는 가사 사용인은 적용 범위 내에 두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연령 제한, 최저 임금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항들이 베이비시터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정내 보육 제공자 소개업과 관련한 법으로 부가가치세

법과 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이는 세금 납부, 사업 신고, 물적·인적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베이비시터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종일제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업안정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부처가 가정내 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노동부 YMCA 아가야, 보건복지부 내니¹²⁾가 서로 다른 명칭과 목적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보육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 등은 자녀양육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처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 수행 체계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내 보육 서비스 관리 부처는 하나로 하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비영리 부문에서의 가정내 보육 서비스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즉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노동취약 계층의 고용창출을 늘리고 저소득 가구에게도 개별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리 부문은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되,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할 부서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부문은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의 문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최소 40시간의 베이비시터 교육과 시터 보육 이후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영리 베이비시터 업체는 교육시간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사후 관리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부처 하에서 사업자 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계하여 모든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최소한의 초기 교육은 이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

12) 2007년에 계획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였음.

다섯째,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가정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간과할 수 없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관 보육이 아닌 가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관할 부처와 사업자 협회가 인증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가정에 대해서는 이용 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목적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 도우미가 사업체를 통하여 자기 집 손자를 돌보는 경우에도 아동 모의 취업이 인정되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기관과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고 있는 때에는 가정내 보육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베이비시터 공급 실태

제IV장에서는 베이비시터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베이비시터회사 설립 관련 법 적용여부, 업체 규모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베이비시터 회사, 부모, 시터 간의 의무와 책임, 서비스와 비용, 베이비시터 활동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1. 베이비시터회사 일반 현황

본 절에서는 가정내 보육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베이비시터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로 이들 업체의 설립연도, 등록 및 인가 여부, 업체 소재지, 회사 규모,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 업체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지, 가입한 보험 여부, 대표자 특성 등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베이비시터 소개가 회사 업무의 10% 이상이라고 설문에 응답한 업체로 총 93개소이다.

이들 업체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93개 중 2007년 현재 프랜차이즈 본점이 15.1%, 가맹점이 75.3%,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단독업체가 9.7%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 베이비시터 회사의 성격

단위: 개소, %

구분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독	계
수	14	70	9	93
비율	15.1	75.3	9.7	100.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본사인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수는 평균 7.2개지만, 최소 1개에서 최대 25개까지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³⁾

13) 그러나 조사수행 중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어 있는 곳 중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만 형식적으로 본사와 별도로 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이는 회사 운영전략 중 하나로 보임.

〈표 IV-1-2〉 프랜차이즈 본사인 경우 가맹점 수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7.2	6.8	1	25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가. 설립 및 운영

우리나라에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대신 아동을 맡아봐 주는 방문탁아를 하는 베이비시터 과건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6년은 정부의 보육3개년확충계획에 의한 보육의 양적 확충이 한참 추진되던 시기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었다. 그 후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또한 국가 경제위기 등으로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일종의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업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2007년 11월 현재 본사 및 지사 등 약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IV-1-3>은 이번에 조사된 베이비시터 과건업체의 설립연도로, 본사가 2000년대 초반에 집중 설치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들은 그 이후에 꾸준히 설치된 것이다.

〈표 IV-1-3〉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연도

단위: 개소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전체	1	13	11	13	11	10	16	13	5	(93)
본사	1	3	5	1	3	0	0	1	0	(14)
가맹점	0	8	3	10	7	9	16	12	5	(70)
단독	0	2	3	2	1	1	0	0	0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1-4>는 현재 회사 대표자의 회사 운영기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운영기간은 평균 3.9년으로 본사는 평균 5.7년, 가맹점은 평균 3.3년이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회사는 운영기간이 평균 5.6년이다.¹⁴⁾ 본사나 단독 회사들에 비하여 가맹점이

14) 베이비시터 회사들은 그 동안 생기고 생겼다 없어진 곳도 많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업체인 「(주) 아이들 세상」의 경우도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음.

운영기간이 짧은 것은 이들 가맹점의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표 IV-1-4〉 베이비시터 회사 현 대표자의 운영기간

단위: 년(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3.9	2.2	1	9	(93)	
본사	5.7	1.8	2	9	(14)	12.0**
가맹점	3.3	2.1	1	7	(70)	
단독	5.6	1.5	3	8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나. 등록 및 인가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업체 본사 중 100.0%, 가맹점 중 44.3%, 단독업체는 88.9%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V-1-5 참조).

〈표 IV-1-5〉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사업자 등록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그렇다	아니다	계(수)	X ² (df)	그렇다	아니다	계(수)	X ² (df)
전체	57.0	43.0	100.0(93)		37.6	62.4	100.0(93)	
본사	100.0	-	100.0(14)		71.4	28.6	100.0(14)	
가맹점	44.3	55.7	100.0(70)	18.9(2)*	28.6	71.4	100.0(70)	10.5(2)**
단독	88.9	11.1	100.0(9)		55.6	44.4	100.0(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업소로의 등록은 본사 중 71.4%, 가맹점 중에서는 28.6%만이 유료 직업 소개업으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단독 업체는 55.6%로 절반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5) 업체 대표자의 말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 많다', '한 곳이 생기면서 한 곳을 문을 닫는다'라고 함.

이렇게 특히 사업자 등록 비율이나 직업 소개업으로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가맹점들의 사업자 등록 비율이 낮은 것은 많은 지점들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들이 직업 소개업으로의 등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직업안정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조건, 20㎡ 이상의 사무실 및 법으로 정한 상담원 1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본사가 직업소개업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 지점은 별도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업체 소재지

업체의 소재지와 수요 지역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은 수요 지역을 추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IV-1-6〉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수)
전체	44.1	7.5	3.2	4.3	1.1	3.2	2.2	28.0	1.1	1.1	1.1	2.2	1.1	100.0(93)
본사	78.6	14.3	-	-	-	-	-	7.1	-	-	-	-	-	100.0(14)
가맹점	32.9	7.1	4.3	5.7		4.3	2.9	35.7		1.4	1.4	2.9	1.4	100.0(70)
단독	77.8	-	-	-	11.1	-	-	-	11.1	-	-	-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업체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본사와 단독업체는 78.6%, 77.8%로 거의 80%에 이르는 회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 비교적 서울 소재지의 비율이 낮고¹⁶⁾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이도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표 IV-1-6 참조).

〈표 IV-1-7〉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자치구별로 소재지를 파악한 현황 표이다. 본사와 단독업체에서 서울 소재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사와 단독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송파구·양천구·강남구 등에 주로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중산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는 곳으로서, 0~9세 인구와 일반회계 총계 예산이 높은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16) 본사와 단독업체에 비하여 가맹점의 서울 소재지 비율이 낮은 이유는 본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을 영업 범위로 하여 가맹점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표 IV-1-7〉 서울에 위치한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분포 ¹⁾				0-9세 인구 ²⁾	일반회계 총계예산 ³⁾
	전체	본사	가맹점	단독		
강남구	4.9	18.2	-	-	45,424	395,497
강동구	2.4	-	4.3	-	43,713	177,911
강서구	2.4	-	4.3	-	57,623	217,385
광진구	4.9	-	8.7	-	36,489	159,193
노원구	4.9	-	4.3	14.3	68,742	232,615
도봉구	12.2	9.1	17.4	-	38,442	146,735
동대문구	2.4	-	4.3	-	34,669	179,000
마포구	2.4	-	4.3	-	39,815	192,500
서대문구	7.3	-	13.0	-	34,012	181,605
서초구	2.4	-	4.3	-	37,363	218,882
송파구	24.4	36.4	4.3	71.4	58,695	223,395
양천구	14.6	27.3	13.0	-	52,586	177,535
영등포구	7.3	-	13.0	-	41,871	194,000
은평구	2.4	9.1	-	-	46,970	182,000
종로구	2.4	-	4.3	-	13,109	165,607
중구	2.4	-	-	14.3	11,179	189,901
계(수)	100.0(41)	100.0(11)	100.0(23)	100.0(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2) 통계청(2006). 주민등록인구통계.
 3) 행정자치부(2005).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참고자료.

라. 회사 규모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의 규모를 상근 직원 수 및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수로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사업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표 IV-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문택아 파견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된 회사 전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종일제 근무 직원 평균수는 1.3명이고, 시간제 종사자를 포함하면 1.5명이다. 베이비시터 회사 본사가 종일제 직원 평균이 2.4명으로 가맹점 1.0명이나 단독업체 1.9명보다 1명 정도가 더 많다.

〈표 IV-1-8〉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평균

단위: 명(개소)

구분	종일제			시간제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	1.0	(93)	0.2	0.5	(93)
본사	2.4	1.6	(14)	0.3	0.5	(14)
가맹점	1.0	0.4	(70)	0.2	0.5	(70)
단독	1.9	1.4	(9)	0.3	0.5	(9)
F		17.5**			0.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 1인이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73.1%이고 대표자 이외에 직원을 한 명 두고 2명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12.9%이고, 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최대 규모는 상근자의 수가 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9>에서 보면 상근인력이 없다는 업체가 6개가 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심지어 본사에서 전화를 연계하여 받기도 한다.

〈표 IV-1-9〉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분포

단위: %, 개소

상근 직원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9명	계
2007년									
비율	6.5	73.1	12.9	3.2	1.1	2.2	1.1	-	100.0
수	6	68	12	3	1	2	1	-	93
2001년									
비율	-	57.9	23.7	7.9	3.9	5.3	-	1.3	100.0
수	-	44	18	6	3	4	-	1	76

자료: 본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자료(2002; 2007).

그러나 2001년도 조사에서는 대표자 1인이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이 57.9%였던 것에 비교하면 6년 동안 베이비시터 업체의 운영의 규모가 비교적 오히려 작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파견업체의 규모는 베이비시터 등록자수로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7월 1개월 간 베이비시터로 등록되어 한 번이라도 일 한 사람의 수는 평균 20.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소 1명, 최대가 200명으로 업체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경우 1개월간 활동한 시터의 수가 20명 이하인 비율이 42.8%이고, 가맹점은 88.6%라고 응답하여 본사보다 가맹점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달 기준)

단위: 명(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0.4	29.1	1	200	(88)	14.2**
본사	20.2	16.9	2	60	(13)	
가맹점	15.0	18.3	1	150	(67)	
단독	65.9	65.1	4	200	(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1-11〉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달 기준) 분포

단위: %(개소)

구분	20명 이하	20~50명	51~100명	101명~200명	계(수)
전체	79.6	15.1	3.2	2.2	100.0(93)
본사	57.1	35.7	7.1	-	100.0(14)
가맹점	88.6	10.0	-	1.4	100.0(70)
단독	44.4	22.2	22.2	11.1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2001년 조사에서는 업체가 확보한 베이비시터 수를 조사하였는데 20명 이하가 27.6%, 21~50명이 26.3%이고, 51~100명이 23.6%로 총 업체의 77.5%가 베이비시터 수 10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고, 101~200명을 확보한 업체는 10.4%이며, 201명 이상은 12.1%로 조사되었다(표 IV-1-11 참조).

한 편 각 회사가 수요에 비하여 베이비시터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비시터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도 평균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의 공급이 약간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83.9%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부모 수요에 비해 시터 공급을 맞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IV-1-12 참조).

〈표 IV-1-12〉 베이비시터 수요 대비 지원자 충분성

단위: %(개소)

구분	매우 충분	어느 정도 충분	보통	약간 부족	매우 부족	계(수)
전체	1.1	6.5	8.6	57.0	26.9	100.0(93)
본사	-	14.3	-	57.1	28.6	100.0(14)
가맹점	1.4	4.3	8.6	55.7	30.0	100.0(70)
단독	-	11.1	22.2	66.7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

앞에서도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베이비시터 회사의 상당수가 동일한 상호를 쓰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특정지역의 방문탁아업체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사만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본사에서 지점 개설 희망자와 상담을 통하여 일정한 요구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여 일정한 가맹비¹⁷⁾를 받고 관할지역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지사를 내게 한다. 이 때 본사는 물품, 비품, 개설 준비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장 자격에 대하여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한 회사의 경우 지사장의 자격조건으로 35~49세, 유아교육 전공자 우대, 사회경력 3년 이상 및 자녀 5세 이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사와 가맹점의 응답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본사의 응답에 의하면 모든 본사와 지점이 시터 교육과 회사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3〉 본사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함께 하는 업무(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시터 교육	회사 홍보	시터약관 통일	부모약관 통일	회원정보 공유	없음	(수)
본사	100.0	100.0	84.6	92.3	38.5	-	(13)
가맹점	92.1	98.4	81.0	98.4	49.2	-	(6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17) 가맹비는 회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1,000~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시터와 부모의 약관을 통일하고 있는 곳이 각각 84.6%, 92.3%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원 정보를 공유한다는 비율은 38.5%에 그쳤다(표 IV-1-13 참조).

<표 IV-1-14>는 두 업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사 설치 시에 본사의 지원 사례를 나타낸다. 두 업체의 사례를 보면 교육 및 경영 컨설팅, 홍보 및 광고 지원, 각종 관리 프로그램 지원, 물품 지원 등이고, 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4>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시 본사 지원 현황

A 업체 ¹⁾	B 업체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주 4주 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상담직원 업무교육 2주 교육(상담 및 고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광고/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컨설팅, 생활 정보지 시터 모집 광고(1개월) ▪ 통인익스프레스 지사와 공동마케팅 제휴, 통인 제휴업체와 링크 - 프로그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 홈페이지 제작, 회원관리, 시터 관리, 상담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 - 물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운영 매뉴얼, 각종 서류양식(CD), 입간판, 명함, 전단지(4000장), 시터 및 도우미 교육 교재, 필요한 광고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간 집중 관리 시스템 활용. 지사 정착시까지 지원 - ON/OFF Line 광고/홍보 지원 - 전문 경영 컨설팅 제공 - 필요시 경영지원(비용별도) - 교육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점 운영자 교육(30일) ▪ 성공지점 합동 근무 ▪ 교육 필요물품 ▪ 경영 매뉴얼/전화응대 매뉴얼 ▪ 지속적인 보수교육 - 광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LINE: 육아잡지 3종 광고 및 홍보 기사(대중매체), 베이비페어 참가 홍보 ▪ ON-LINE: 홈페이지 및 산모관련 사이트 배너 광고, 주요 검색사이트 홍보, 관련업체 제휴홍보 - 판촉 Route 신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서 판촉 Route 신규개발(상세 내용은 상담시) - 기타, 참사랑어머니회 산후도우미 지점이 있는 지역은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자료: 1) URL:<http://daegu.baby-care.co.kr>
 2) URL:<http://www.charmlove.co.kr>

한편 개점 후에 이들의 관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한 회사의 사례를 보면 상담직원/시터 교육 및 재교육 지원, 가맹점 운영에 따른 업무지도 및 교육, 가맹점 운영 매뉴얼, 서비스별 교육교재 개발, 본사와 가맹점간의 시터 지원, 월 1회 가맹점주 회의를 통해 공동 마케팅 및 수익 증대 방안 논의, 공동 마케팅 등 결속이 비교적 단단함을 나타낸다(표 IV-1-15 참조).

〈표 IV-1-15〉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후 본사 지원 현황

A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직원/시터 교육 및 재교육 지원 - 가맹점 운영에 따른 업무지도 및 교육 - 가맹점 운영 매뉴얼, 서비스별 교육교재 개발 - 본사와 가맹점간의 시터 지원 - 월 1회 가맹점주 회의를 통해 공동 마케팅 및 수익 증대 방안 논의 - 본사 서비스 개발에 따른 지원과 교육 - 통인 협력업체와 공동 마케팅

자료: URL:<http://daegu.baby-care.co.kr>

바. 업체간 협력 및 교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1년 연구에서는 베이비시터 업체간에 공식적인 단체 구성과 이를 통한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전반적인 서비스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서비스 관련 매뉴얼 개발, 시터 교육을 위한 일정한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의 실시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은 업체 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협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3%만이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2.4%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2007년 현재 베이비시터 회사들의 협회는 정식으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설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한국베이비시터총연합회」¹⁸⁾로 현재 여기에는 9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다. 가입업체가 소수이긴 하나 지점을 두고 있는 본사업체이고 이들은 대표적인 베이비시터 업체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료의 공동 개발 등 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베이비시터 교육 교재 발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협회 설립 등 회사들 간의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 및 협력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 베이비시터 파견 회사 협회 가입, 공동 교육 기회 마련, 표준화된 교재 제작, 교육 인력 공동 활용,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표준화된 규정, 복무 규칙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IV-1-16>과 <그림 IV-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인력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8.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표준화된 교

18) URL:<http://www.kobsg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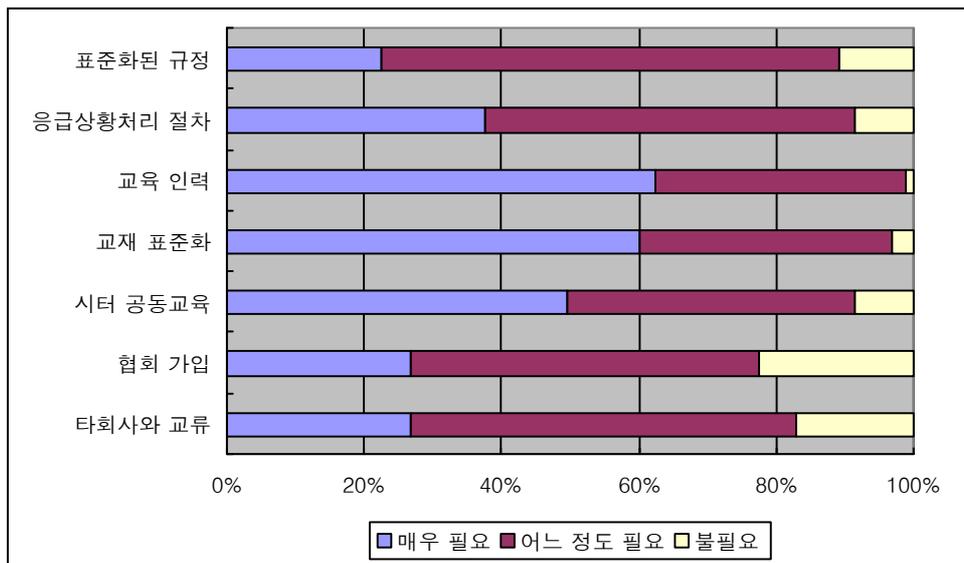
재 제작, 베이비시터 공동 교육,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 절차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고, 표준화된 규정, 복무 규칙 등이 90%에 다소 못 미친다. 반면에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와 베이비시터 회사 협회 가입은 각각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7.2%, 22.6%이다.

〈표 IV-1-16〉 베이비시터 회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단위: %(개소)

구분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불필요	계(수)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	26.9	55.9	17.2	100.0(93)
베이비시터 회사 협회 가입	26.9	50.5	22.6	100.0(93)
베이비시터 공동 교육	49.5	41.9	8.6	100.0(93)
표준화된 교재 제작	60.2	36.6	3.2	100.0(93)
교육 인력	62.4	36.6	1.1	100.0(93)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 절차	37.6	53.8	8.6	100.0(93)
표준화된 규정, 복무 규칙 등	22.6	66.7	10.8	100.0(9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그림 IV-1-1] 베이비시터 회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표 IV-1-17〉 베이비시터 회사 특성별 협력 필요성

단위: %(개소)

구분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불필요	계(수)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				
전체	26.9	55.9	17.2	100.0(93)
본사	28.6	50.0	21.4	100.0(14)
가맹점	28.6	55.7	15.7	100.0(70)
단독	11.1	66.7	22.2	100.0(9)
베이비시터 회사 협회 가입				
전체	26.9	50.5	22.6	100.0(93)
본사	35.7	28.6	35.7	100.0(14)
가맹점	27.1	55.7	17.1	100.0(70)
단독	11.1	44.4	44.4	100.0(9)
베이비시터 공동 교육				
전체	49.5	41.9	8.6	100.0(93)
본사	71.4	7.1	21.4	100.0(14)
가맹점	42.9	51.4	5.7	100.0(70)
단독	66.7	22.2	11.1	100.0(9)
표준화된 교재 제작				
전체	60.2	36.6	3.2	100.0(93)
본사	85.7	-	14.3	100.0(14)
가맹점	54.3	44.3	1.4	100.0(70)
단독	66.7	33.3	-	100.0(9)
교육 인력				
전체	62.4	36.6	1.1	100.0(93)
본사	78.6	14.3	7.1	100.0(14)
가맹점	58.6	41.4	-	100.0(70)
단독	66.7	33.3	-	100.0(9)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 절차				
전체	37.6	53.8	8.6	100.0(93)
본사	50.0	35.7	14.3	100.0(14)
가맹점	35.7	55.7	8.6	100.0(70)
단독	33.3	66.7	-	100.0(9)
표준화된 규정, 복무 규칙 등				
전체	22.6	66.7	10.8	100.0(93)
본사	21.4	64.3	14.3	100.0(14)
가맹점	22.9	67.1	10.0	100.0(70)
단독	22.2	66.7	11.1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즉, 사안별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에 비하여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의 필요성이나 협회 가입 필요성은 낮다. 이는 사안별 협력이 협회의 가입 및 베이비시터 관계자간의 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다소 모순되는 응답결과라 하겠다. 중산층 아파트 지역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베이비시터 회사 관계자들이 서로 동업에 종사하면서 경쟁자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표 IV-1-17>은 회사 성격별 응답의 차이는 나타내는데, 필요도가 높았던 교육 인력, 표준화된 교재 제작, 베이비시터 공동 교육의 항목 모두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을 본사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본사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큼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필요도의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 베이비시터 회사 협회 가입에 있어서는 단독업체의 다른 항목들에 대한 응답에 비하여 이 두 가지 항목에 있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2.2%, 44.4%로 많았다. 베이비시터 업체들 간 협력과 교류에 대한 단독업체들의 입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가입 보험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보면 아동, 시터,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 등인데,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이 전체의 78.5%로 가장 많았으나, 단독업체의 경우는 절반 가량인 55.6%만이 아동 대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표 IV-1-18> 베이비시터 회사가 가입한 보험과 그 대상

단위: %(개소)

구분	아동대상 보험	시터대상 보험	회사 보험	기타	계(수)
전체	78.5	6.5	12.9	4.3	100.0(93)
본사	78.6	14.3	14.3	7.1	100.0(14)
가맹점	81.4	5.7	14.3	4.3	100.0(70)
단독	55.6	-	-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한 본사 사례를 보면, LIG 손해보험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정회원 자녀들에 한해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해보험의 유효한 적용시

간 범위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시간 범위 내로 한정된다.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사망, 후유장해시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다(표 IV-1-19 참조).

〈표 IV-1-19〉 LIG 손해보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던 시간 중에 발생할 지도 모를 자녀의 상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사는 정회원 자녀들에 한해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유효한 적용시간 범위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시간 범위 내로 한정됨. - 부모 일반이용자는 베이비시터의 자녀 상해보험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보장내용

< 보상하는 손해 > 사망 후유장해시 최대 5,000만원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함.
2.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URL: <http://www.babysitter114.com/>

아. 회사 대표자의 인적 배경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대표자의 특성을 보면 <표 IV-1-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이 89.2%로 남성 10.8%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다. 그러나 가맹점에 비하여 비교적 본사와 단독 회사 대표는 남자가 많다.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대표자의 연령은 평균 47.5세로 비교적 높다. 최저 연령은 33세이다.

회사 대표의 학력은 2001년도 조사 결과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회사 대표자가 고졸인 경우도 13.2%이다. 전공은 27.6%가 유아교육학, 교육학, 아동학 등 아동관련학과를 전공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베이비시터 회사 개설 이전의 경력도 대표자 중 27.6%가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그 이외의 72.4%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1-21 참조).

〈표 IV-1-20〉 베이비시터 회사 대표자 성별 및 연령

단위: %, 세(개소)

구분	성별			연령					
	남자	여자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10.8	89.2	100.0(93)	47.5	6.3	33	61	(93)	2.0
본사	28.6	71.4	100.0(14)	47.4	6.3	40	59	(14)	
가맹점	5.7	94.3	100.0(70)	48.1	5.8	36	61	(70)	
단독	22.2	77.8	100.0(9)	43.7	9.2	33	55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1-21〉 베이비시터 회사 대표자 학력 및 전공

단위: %, 개소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76
학력		
고졸	13.2	10
전문대(중퇴)졸	28.9	22
4년제(중퇴)졸	52.6	40
대학원 이상	5.3	4
전공		
아동관련학	27.6	21
기타 및 비해당	72.4	55
아동관련 업무 경력		
유	27.6	21
무	72.4	55

자료: 서문희·이상현(2002).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회사, 시터, 부모의 의무와 책임

베이비시터 회사는 베이비시터와 시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을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회원과 이용부모 회원 양자를 관리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회사와 시터, 회사와 이용부모간의 관리와 이에 따르는 의무 관계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회사와 시터

1) 시터회원제 운영

대다수의 베이비시터 과견업체에서는 회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베이비시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회원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회원제로만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는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75.3%로 많았다(표 IV-2-1 참조).

〈표 IV-2-1〉 베이비시터 회원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회원제로만 운영	비회원제로 운영	회원제+비회원제	계(수)
전체	21.5	3.2	75.3	100.0(93)
본사	21.4	14.3	64.3	100.0(14)
가맹점	20.0		80.0	100.0(70)
단독	33.3	11.1	55.6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2-2〉는 회원제 운영시 베이비시터의 1년 회비 단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50,000원을 연회비로 받고 있다. 그러나 단독 업체의 경우 학생 할인제도를 두고 있어, 대학생은 성인 회비가 5만원인 경우 대체로 3만원 수준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회원 시터 및 비회원 시터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 시터가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IV-2-2〉 회원제 베이비시터 1년 회비

단위: 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49,759.0	2,195.3	30,000	50,000	(83)	
본사	50,000.0	-	50,000	50,000	(9)	5.2**
가맹점	50,000.0	-	50,000	50,000	(66)	
단독	47,500.0	7071.1	30,000	50,000	(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2-3〉 베이비시터 회원 가입비

단위: 원

업체	A 업체 ¹⁾		B 업체 ²⁾	C 업체 ³⁾
	일반	50,000		
가입비	학생	30,000	50,000	30,000

자료: 1) URL:http://www.thesittertime.com

2) URL:http://www.good-sitter.com

3) URL:http://www.joymom.com/

2) 서면계약 및 약관 구축

베이비시터 회원의 서면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94.6%가 서면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단독업체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2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 베이비시터 회사와 시터의 서면계약 및 약관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서면계약			약관		
	한다	안한다	계(수)	한다	안한다	계(수)
전체	94.6	5.4	100.0(93)	94.6	5.4	100.0(93)
본사	92.9	7.1	100.0(14)	92.9	7.1	100.0(14)
가맹점	97.1	2.9	100.0(70)	97.1	2.9	100.0(70)
단독	77.8	22.2	100.0(9)	77.8	22.2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회원의 약관 유무에 대한 응답은 서면계약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응답률을 보여, 94.6%가 회사와 베이비시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터 및 회사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시한 약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단독업체의 약관 미소지 비율은 본사와 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시터회원의 약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는 <표 IV-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원의 정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입비와 이용료, 회원 책임사항, 회원 자격 정지·철회 및 항변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2-5〉 베이비시터 약관 구성

A 시터 회원 약관 ¹⁾	B 시터 회원 약관 ²⁾	C 시터 회원 약관 ³⁾
제1조 약관의 목적과 효력 및 변경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회원가입 및 승인	제2조 회원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보수 지급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 시터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시터 위임사항	제4조 활동비	제4조 시터 활동 방법
제5조 시터의 의무와 복무규칙	제5조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	제5조 수입 및 지급방법
제6조 시터 자격 상실	제6조 시터회원 책임사항	제6조 시터 책임 한도
제7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7조 회원 자격정지 및 탈퇴	제7조 활동기간
제8조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	제8조 의무 서약	제8조 회사의 책임
제9조 저작권 보호	제9조 회사 책임사항	제9조 시터 계약의 해지
제10조 시터의 개인정보 보호	제10조 계약의 해지	제10조 퇴직
제11조 회사의 의무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제11조 회원 사항의 변경
제12조 분쟁해결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2조 중재권
제13조 아이디의 삭제요청	제13조 관할법원	제1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14조 약관의 변경 및 효력	제14조 기타

자료: 1) URL:<http://www.familycare21.com>

2) URL:<http://www.bumomaum.co.kr>

3) URL:<http://www.joymom.com/>

베이비시터 약관 중에서 언급할 사항은 시터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이용료 관련 등 두 가지이다. 먼저 시터의 의무 및 권리는 주로 활동 후에 보고를 하고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임 부분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무책임으로 인한 사고, 불성실한 행위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회사를 통하지 않은 시터와 이용자의 직접 연결을 금하고 있다. 가입비 및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시터 활동 후 생긴 비용은 시터와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는 부모회원이 월 단위로 정해진 일자를 기준하여 시터 요금을 회사로 입금하고 회사에서는 시터의 활동보고와 이를 대조, 확인하여 입금된 금액의 10% 정도¹⁹⁾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시터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베이비시터가 활동비를 직접 받아 일정 수수료를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기도 한다.

19) 수수료가 7%인 곳도 있으나 대체로 회원은 10% 수준임.

3) 행동 지침 등 관리

한편 회원 약관과는 별도로 시터의 행동지침이 제시되기도 하여 주로 교육을 통하여 전달된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시터는 방문 전에 부모 회원 집에 전화를 하여 파견시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고 너무 진한 화장, 길거나 짧은 치마, 진한 향수, 긴 손톱, 매니큐어 등을 피하도록 하며, 긴 머리는 단정히 묶고, 가능한 면 종류의 옷을 입도록 하며, 회원관리노트나 수첩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약속된 회원의 가정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최소한 하루 전에 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또한 베이비시터는 일단 가정을 방문하면 손부터 씻고 부모회원에게 아이의 생활리듬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아 미리 숙지하고, 아이가 사용하던 교재, 장난감, 책 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같이 하도록 하며, 문제점 발견 시 혼자 해결하지 말고 회사나 보호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전화통화는 가능하면 삼가하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아이 이름으로 응대하여 메모를 남기고, 간식 및 식사를 하고 난 후 그릇은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V-2-6〉 베이비시터 행동지침서 사례

구분	행동 지침
방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부모에게 전화로 파견시간, 위치를 확인함. - 너무 진한 화장, 길거나 짧은치마, 진한 향수, 긴 손톱, 매니큐어 등을 피하도록 하며, 긴 머리는 단정히 묶고, 가능한 면 종류의 옷을 입도록 함. - 회원관리노트나 수첩을 준비함. - 약속된 회원 집에 못 가게 되었을 경우 하루 전에 회사에 신속히 연락함.
방문 시 기본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방문하면 손을 씻고, 우유 먹는 양, 배변횟수, 낮잠 자는 시간 등 아이의 생활리듬을 미리 숙지하도록 함. - 교재, 장난감, 책 등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을 같이 함. - 문제점 발견 시 혼자 해결하지 말고 회사나 엄마에게 전화함. - 사적인 전화통화는 가능하면 삼가도록 하며,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아이 이름으로 응대해 주며, 메모를 남겨주도록 함. - 간식 및 식사를 하고 난 후 그릇정도는 깨끗하게 설거지 및 정리 정돈함. - 피곤하다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무성의하게 돌보는 일이 없도록 함. - 부모회원에게 웃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방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이 끝나면 사무실에 전화하여 활동시간을 보고함. - 육아보고서 양식에 아이에 관한 그 날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함. - 부모회원이 보육료를 시터에게 바로 지급할 시에는 본사로 바로 입금함.

자료: 썬더루 방문택아. 베이비시터 행동지침. 내부자료.

활동이 종료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를 돌봤는지 회사에 전화로 보고하여야 하고 육아활동 보고서 양식에 아이에 관한 그날그날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표 IV-2-6 참조). 그러나 실제로 회사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지침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7>은 베이비시터의 육아일지 작성 여부 및 성실도를 나타내는데, 약 20%만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지를 쓰도록 하나 잘 안 지킴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고, 일지작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6.1%이다. 특히 본사에서 이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IV-2-7〉 베이비시터 육아일지 작성 관리 실태

단위: %(개소)

구분	반드시 일지 작성 후 부모 확인받아 제출	반드시 일지 작성 후 제출	일지를 쓰도록 하나 잘 안 지킴	일지작성 요구 안함	계(수)
전체	2.2	17.2	64.5	16.1	100.0(93)
본사	-	21.4	35.7	42.9	100.0(14)
가맹점	2.9	18.6	68.6	10.0	100.0(70)
단독	-	-	77.8	22.2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2-8〉 베이비시터 육아 결과 보고 관리 실태

단위: %(개소)

구분	하루 단위로 일할 때 마다	주 단위로 보고 받음	월 단위로 보고 받음	수시로	안 받음	계(수)
전체	1.1	16.1	20.4	50.5	11.8	100.0(93)
본사	-	14.3	14.3	42.9	28.6	100.0(14)
가맹점	1.4	18.6	21.4	51.4	7.1	100.0(70)
단독	-	-	22.2	55.6	22.2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V-2-8>은 베이비시터로부터 육아활동 결과를 얼마나 자주 보고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 혹은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있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다.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는 비율이 5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육아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지 않는다는 11.8%와 더불어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 역시 정기적으로 자주 보고받고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드물게 보고받

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베이비시터로부터 육아 결과를 보고 받는 경우, 베이비시터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으며, 대부분 유선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메일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소수였다(표 IV-2-9 참조).

〈표 IV-2-9〉 베이비시터 육아업무 보고 방법

단위: %(개소)

구분	전화	서면	업체 방문	온라인	계(수)
전체	98.8	-	-	1.2	100.0(82)
본사	90.0	-	-	10.0	100.0(10)
가맹점	100.0	-	-	-	100.0(65)
단독	100.0	-	-	-	100.0(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나. 회사와 부모

1) 부모회원제 운영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 회원 역시 대다수의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터회원과 마찬가지로 회원제로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 75.3%로 많았다. 이는 시터회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증가된 비율이다.

〈표 IV-2-10〉 이용 부모 회원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회원제로만 운영	비회원제로 운영	회원제+비회원제	계(수)
전체	22.6	1.1	76.3	100.0(93)
본사	28.6	7.1	64.3	100.0(14)
가맹점	21.4	-	78.6	100.0(70)
단독	22.2	-	77.8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회원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를 결제한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하는데, 가입 기간은 대부분이 1년이고, 6개월을 적용하는 업체

도 있다.

연회비는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수 및 가입년도 등 부모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부모 회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가입 연수에 따라서 가입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회원제 운영시, 1년간 연회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6개월간의 회비를 적용하는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1〉 회원제 운영시 이용 부모 회비

단위: 원(개소)

구분	1년				6개월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전체	83,260.9	7,575.1	60,000	100,000	83,260.9	7,575.1	60,000	100,000	(93)
본사	84,615.4	9,880.6	70,000	100,000	84,615.4	9,880.6	70,000	100,000	(14)
가맹점	83,142.9	6,492.6	70,000	100,000	83,142.9	6,492.6	70,000	100,000	(70)
단독	82,222.2	13,017.1	60,000	100,000	82,222.2	13,017.1	60,000	100,000	(9)
F		0.3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2-12〉 부모회원 가입비 사례

단위: 원

업체	A 업체 ¹⁾	B 업체 ²⁾	C 업체 ³⁾
가입비			
정회원(1년)	80,000	100,000	80,000
준회원(6개월)	50,000	60,000	-

자료: 1) URL:<http://daegu.baby-care.co.kr>

2) URL:<http://www.good-sitter.com>

3) URL:<http://www.joymom.com/>

2) 서면계약 및 약관 구축

시터회원과의 서면계약 여부와 마찬가지로 부모회원과 서면계약을 한다는 곳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단독회사가 88.9%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표 IV-2-13 참조). 대부분의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는 서비스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 및 규약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약관이 없다는 업체는 단 한 곳이었다.

〈표 IV-2-13〉 베이비시터 회사와 부모와의 서면계약 및 약관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서면계약		약관유무		계(수)
	한다	안한다	있다	없다	
전체	94.6	5.4	97.8	2.2	100.0(93)
본사	92.9	7.1	100.0	-	100.0(14)
가맹점	95.7	4.3	97.1	2.9	100.0(70)
단독	88.9	11.1	100.0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부모 회원 약관은 회사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다. 약관의 내용은 주로 부모 회원의 가입비, 이용요금 및 결제 방법,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보험, 회사의 책임, 회원의 의무 및 이용규칙, 업체의 책임을 담고 있고 회사에 따라서 중재권, 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원 등의 조항으로 분쟁 발생시 처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표 IV-2-14 참조).

〈표 IV-2-14〉 부모 회원 약관 구성

A 부모 회원 약관 ¹⁾	B 부모 회원 약관 ²⁾	C 부모 회원 약관 ³⁾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회원의 정의	제3조 회원의 정의	제3조 이용 계약의 방법 및 성립
제4조 유효기간	제4조 연회비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서비스 내용 및 범위	제5조 회원의 의무와 이용 규칙	제5조 이용 및 결제 방법
제6조 서비스 이용 및 예약시간	제6조 이용요금 결제	제6조 회원의 책임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보험 안내	제7조 회사 의무와 배상책임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9조 가입 및 이용요금	제9조 계약의 해지	제9조 서비스 이용 거부 및 계약 해지
제10조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	제10조 자료의 수정 및 삭제	제10조 회원 사항의 변경
제11조 보험 서비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11조 중재권
제12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원	제12조 관할법원	제1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13조 약관의 변경 및 효력	제13조 기타

자료: 1) URL:<http://www.familycare21.com>
 2) URL:<http://www.bumomaum.co.kr>
 3) URL:<http://www.joymom.com/>

〈표 IV-2-15〉 부모 회원 이용규칙 사례

부모 회원 이용규칙
1. 예약은 하루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용 전 아동의 특성이나 생활리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아이가 해야 할 그날의 과제 및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4. 아이와 시터의 식사는 함께 준비합니다(준비해 놓지 못할 경우 조리가 가능하도록 재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베이비시터 역할을 존중합니다(방문 생활 지도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6. 베이비시터는 집안일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무리한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7. 2시간 전(예약시간 기준)의 예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 시 기본요금을 부담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이용 예약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터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9. 베이비시터의 예약 및 이용시간 조정은 당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당사를 통하지 않은 개별예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의의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보험혜택 및 보상을 전혀 받으실 수 없으니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 이용요금 결제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결제일 일주일 이상 경과 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3회 이상 이용규칙을 어길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료: URL:<http://www.helpkids.co.kr>

〈표 IV-2-15〉는 한 업체의 부모 회원 약관 및 규약의 사례로서 부모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예약은 하루 전에 회사를 통해서 하고 결제도 정해진 일자에 회사로 바로 하여야 하며,²⁰⁾ 시터 방문 시에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시터는 방문지도 교사로 역할을 하며 아이 돌보기 이외의 별도의 집안일을 하지 않으며, 탁아시간이 식사시간과 겹치게 되면 아동의 부모가 가정에 시터의 식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부모와 시터

대부분의 업무가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부모와 시터가 직접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약관 중에는 부모가 시터에게, 그리고 시터가 부모에

20) 일부 회사는 시터가 활동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음.

게 지켜야 할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부모는 시터에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업체에서는 방문 일지 형식의 소책자를 제공하고 여기에 아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표 IV-2-16>에 제시된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2-16> 부모 기록 사항 요약

기록 사항	
- 아이의 이름(별명)과 나이(생년월일), 성격	
- 부모의 자녀에 관한 가치관 또는 교육철학(의사존중, 자주적인 면 강조 등)	
- 아이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 및 어겼을 경우 제재방법	
• TV시청, 바깥놀이, 컴퓨터게임, 친구방문 등	
- 좋아하는 장난감 및 놀이(로봇, 인형, 병원놀이 자전거타기 등)	
- 집에 비치하고 있는 교재 이름과 위치 활용방법	
- 아이가 좋아하는 이웃 친구 및 사촌 이름	- 집 주변의 위험한 장소
- 아동의 건강상태	- 좋아하는 음식 및 삼가야 할 음식
- 잘 걸리는 질병 및 처치방법	- 의료보험증, 비상열쇠, 구급상자 위치
- 시터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내용	
- 가장 가까운 부모 비상연락처, 소아과 등 병원 전화번호	

자료: 각 베이비시터 파견업체 방문수첩 자료 재구성

즉, 부모는 시터에게 아이의 성격 및 건강 관련 사항, 선호하는 장난감, 놀이, 음식, 친구이름, 잘 걸리는 질병 및 처치방법 등을 알려주고, 자녀에 관한 부모의 가치관 또는 철학, 아이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 및 어겼을 경우 제재방법, 집에 비치하고 있는 교재 이름과 위치 활용방법, 집 주변의 위험한 장소, 건강보험증, 비상열쇠, 구급상자 위치, 시터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내용, 가장 가까운 부모 비상연락처, 소아과 등 병원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의 사업체, 시터 교육기관, 경찰 등 공공기관 등에서는 부모의 자녀 및 가정 안전에 대한 요구 조치를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전 수칙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부모는 시터를 위하여 준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와 시터의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준비해 놓지 못할 경우 조리가 가능하도록 재료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베이비시터 역할을 존중하여 방

문 생활 지도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요구되고, 베이비시터에게는 집안일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고 시 가정과 아동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시터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3.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 및 비용

가. 서비스 종류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베이비시터와 같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소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을 대상으로 홈 아웃소싱 성격의 포괄적인 인력 파견을 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회사 유형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 베이비시터 소개 전문업체라고 하겠는데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매우 다양하여 일반 탁아 이외에도 가사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실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현장학습시터 등 부모가 해야 하는 모든 관련 업무를 시터 업무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조사된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탁아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은 최소 10%, 최대 100% 등 업체별로 편차는 크지만 평균 72%정도로 추정된다(표 IV-3-1 참조).

〈표 IV-3-1〉 회사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72.6	24.6	10	100	(93)	1.5
본사	62.1	24.9	10	90	(14)	
가맹점	74.4	24.3	10	98	(70)	
단독	75.0	26.0	20	100	(9)	

주: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탁아 베이비시터 업무가 10%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3-2〉는 조사된 93개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서비스 내용별 실시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된 업체의 80.6%가 입주 시터를 소개하고, 75.3%가 학습시터를 소개하며, 산모도우미와 가사도우미도 각각 48.4%, 50.5%의 업체가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영어시터 파견이 21.5%이고 놀이시터, 현장학습 대행시터 파견이 11~12%이다. 최근에는 아동 조기 영어교육을 위하여 영어를 하는 시터를 이용한 탁아가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어권의 외국인을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서 아동을 돌보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오피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표 IV-3-2〉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본사	가맹점	단독
입주 베이비시터	80.6	78.6	84.3	55.6
현장학습 대행시터	10.8	21.4	10.0	-
영어 시터	21.5	21.4	21.4	22.2
학습 시터	75.3	64.3	81.4	44.4
아픈 아동 시터	3.2	7.1	1.4	11.1
이벤트 대행	1.1	7.1	-	-
실버 시터	5.4	14.3	2.9	11.1
놀이 시터	11.8	28.6	10.0	-
산모도우미	48.4	64.3	47.1	33.3
가사도우미	50.5	50.0	51.4	44.4
기타	4.3	14.3	2.9	-
(수)	(93)	(14)	(7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3-3〉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

A 업체 ¹⁾	B 업체 ²⁾	C 업체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 - 가사 겸 베이비시터 - 학습시터 - 가사/입주/산후도우미 - 실버시터 - 유아마사지 - 지문적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 - 에듀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가베/체험놀이시터 - 산후조리서비스 - 실버케어서비스 - 홈 이벤트 - 학습 베이비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 - 놀이시터 - 교육전문시터 (북, 학습, 가베, 영어) - 홈킨더 - 매니지먼트 - 외국인 오피어 - 현장학습시터 - 키즈매니저 - 리빙헬퍼

자료: 1) URL:<http://www.baby-care.co.kr/>
 2) URL:<http://www.familycare.co.kr>
 3) URL:<http://www.thesittertime.com>

또 몇몇 업체에서는 자녀관찰 시스템을 개발하여 집안에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는 탁아서비스 이외에도 이외에 아동이벤트 사업으로 생일파티, 장난감 파티 등의 사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IV-3-3>은 3개 업체가 단순탁아 이외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예인데 A업체의 경우는 지문적성검사도 실시한다.

나. 베이비시터 이용료

베이비시터 서비스 요금은 최소 기본시간 적용 여부, 회원, 비회원, 아동수, 아동의 연령 구성 시간대 등 각기 조건에 따라서 베이비시터 업체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상호의 경우 본사에서 일정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지점에 따라 지역 형편을 반영하여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제 베이비시터 업체의 서비스는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베이비시터 회사들은 시터 이용 최소 24시간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일 예약에 대해서는 이용 시 일정한 비율의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정 시터의 고정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²¹⁾ 한편으로 예약 취소는 시간 규정을 두어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회사에 따라 당일 또는 4시간 전 등 다양하다.

시터 비용은 대부분이 최소 3~5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으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 보육시간대 등 경우에 따라서 요금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은 다른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표 IV-3-4> 베이비시터 최소 이용시간의 시간당 요금 평균

단위: 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6,147.0	657.9	4,000	8,330	(93)	
본사	6,370.2	853.4	5,000	8,330	(14)	2.4
가맹점	6,111.9	564.6	5,000	7,330	(70)	
단독	5,916.7	889.8	4,000	6,670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21) 7~10일 전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음.

최소 이용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최소 4,000원에서 최대 8,300원 정도를 받고 있어 평균 6,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3-4, 표 IV-3-5 참조). 가맹점에 비하여 본사가 요금이 높는데, 이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단독업체에 비하여 본사가 요금이 높은 것은 브랜드 홍보비 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3-5〉 베이비시터 최소 이용시간의 시간당 요금 분포

단위: %(개소)

구분	4,000	5,000	5,250	5,670	6,000	6,250	6,670	7,000	7,330	8,330	계(수)
전체	1.1	6.5	6.5	14.0	28.0	2.2	36.6	1.1	3.2	1.1	100.0(93)
본사	-	7.1	7.1	7.1	14.3	-	42.9	7.1	7.1	7.1	100.0(14)
가맹점	-	5.7	7.1	17.1	30.0	1.4	35.7	-	2.9	-	100.0(70)
단독	11.1	11.1	-	-	33.3	11.1	33.3	-	-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3-6〉은 기본 최소시간 이용에 추가되는 서비스 요금을 나타낸다. 최소 이용시간에 이어 추가로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이용부모 회원이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한 시간당 5천원으로 최소 이용시간 기본요금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다.

〈표 IV-3-6〉 시간제 베이비시터 추가 요금

단위: 원(개소)

구분	시간당 추가 요금					아이 1명당 추가 요금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000	304.0	4,000	6,000	(93)	2,108	1,021	1,000	5,000	(93)
본사	5,143	363.1	5,000	6,000	(14)	2,464	1,248	1,000	5,000	(14)
가맹점	4,986	268.8	4,000	6,000	(70)	2,064	936	1,000	5,000	(70)
단독	4,889	416.7	4,000	5,500	(9)	1,889	1,269	1,000	5,000	(9)
F			2.3					1.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최소 이용시간 기본요금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추가요금에도 본사와 가맹점, 단독 업체에 차이를 보였는데, 본사가 최소 5,000원, 최대 6,000원으로 가장 비싸며, 가맹

점과 단독업체는 최소 4천원으로 동일하였으나 최대 요금은 단독업체는 최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한편 아동 한 명을 추가해서 서비스 제공받기를 원할 경우는 최소 불입 요금과 최대 불입 요금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사와 가맹점, 단독 업체 모두 아동 한 명 추가 시 1,000원~5,000원을 받고 있다.

하루 종일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할 경우²²⁾ 종일제 베이비시터 요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55,000원으로 시간제 요금을 적용할 때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본사와 가맹점이 단독 업체보다 이용 요금이 높다.

〈표 IV-3-7〉 종일제 베이비시터 하루 및 한 달 요금

단위: 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하루						
전체	43,720.4	4,166.0	30,000	55,000	(93)	
본사	42,571.4	4,750.9	40,000	55,000	(14)	7.4**
가맹점	44,500.0	3,721.3	40,000	55,000	(70)	
단독	39,444.4	3,908.7	30,000	45,000	(9)	
한 달						
전체	909,032.3	56,933.7	650,000	1,200,000	(93)	
본사	940,714.3	87,042.4	650,000	1,200,000	(14)	4.9**
가맹점	908,000.0	35,614.7	800,000	1,000,000	(70)	
단독	867,777.8	101,707.6	960,000	1,000,00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종일제 베이비시터를 한 달간 이용할 경우 월급제 요금이 적용되는데, 평균 약 90만원 정도이며, 최대는 본사가 120만원으로 가맹점이나 단독업체보다 비싸다.

〈표 IV-3-8〉은 한 프랜차이즈 베이비시터 업체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금기준표이다. 이 표를 보면 아동수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요금 적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이고 새벽이나 야간에는 기존 시간당 요금에 1,000원이 추가된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 일이 끝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고, 시터 사전 면접 시 시터에게 기본요금²³⁾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약을 당일 취소할 경우 기본요금²⁴⁾ 배상의 의무가 있고 당

22) 종일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10시간 등으로 업체마다 다름.

23) 10,000원임

24) 18,000원임.

일 예약 시에는 이용요금에 20%가 할증된다. 비회원 이용 시에는 회원보다 다소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표 IV-3-8〉 베이비시터 요금 사례 1

단위: 원

구분	1명	2명	3명	쌍둥이
기본 3시간	18,000	21,000	24,000	24,000
시간당 추가요금	5,500	6,500	7,500	7,500
24시간 요금	80,000	90,000	100,000	100,000

구분	내용
기본요금 적용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새벽 야간 할증	기본 시간당 요금에 1,000원 추가
월정 요금	9시간/일, 주 5회 이상 근무 시에 한하여 별도 할인 적용
교통비	오후 10시 이후 5,000원, 12시 이후 10,000원 지급
당일예약 시	기본요금의 20%할증(센터 지급)
당일예약 취소 시 요금	18,000원 배상의무
사전인터뷰	10,000원 시터에게 지급
공휴일 예약 시	시간당 1,000원 추가지급(시터 지급)
비회원 이용 시	1명: 기본 3시간 21,000원/시간당 6,500원

자료: URL:<http://www.familycare.co.kr>

〈표 IV-3-9〉 베이비시터 요금 사례 2

단위: 원

구분		회원	비회원
3시간제	기본3시간	1명	20,000
		2명	25,000
	시간추가	1명	5,000
		2명	7,000
월급제	월~금	900,000	1,000,000
	월~토	1,050,000	1,150,000
	아이 1명 추가	200,000	250,000
숙식	12시간	70,000	80,000
	24시간	100,000	110,000
구분		내용	
교통비		오후 10시 이후 6,000원, 11시 이후 10,000원 지급	
월급제 기본 시간		9시간(일요일, 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3시까지 근무	
다이아몬드 시터 이용요금		고정제, 월급제 이용금액의 20% 추가	

자료: URL:<http://www.baby-care.co.kr/>

<표 IV-3-9>는 또 다른 회사의 요금표이다. 이 회사의 특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월급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고 있다. 회원의 경우 한 자녀를 주 6일 동안 평일 하루 9시간씩 돌보게 할 경우 요금은 105만원이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시터의 등급을 나누어 자격이 있는 등 우수하다고 평가한 다이아몬드 시터의 경우는 고정제와 월급제로 소개하면서 20%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베이비시터 이용에 따라 월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육시설 이용과 비교해 보면,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다소 높지만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비용의 수배가 된다.

4. 베이비시터 관리 및 활동

가. 베이비시터 자격 및 특성

1) 베이비시터 선발 조건

대부분의 베이비시터회사에서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면접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신청서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란에 보증인이 확인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후 회비 및 교육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게 된다.

베이비시터는 통상 주부 베이비시터와 학생/일반 베이비시터로 구분하고 있다. 주부 시터는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0~3세 아이를 맡아서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이유식 챙기기, 병원(보건소) 함께 가기, 일광욕 시키기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으로 학생/일반 베이비시터는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들로 주로 3~10세 전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기, 방과후 숙제 봐주기, 식사 챙기기, 동화책 읽어주기, 준비물 챙기기, 학부모 회의 대신 가기, 병원, 문화센터 및 인형극 함께 가기 등 생활관리 대행자로서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특히,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을 통해 영어시터로도 활동한다.

본 조사에서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경력, 연령 및 결혼상태에 특정한 조건을 두고 모집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회사가 베이비시터 채용 시 연령과 경력을 고려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학력이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16.1%에 불과하여 베이비시터의 조건으로 결혼 상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31.2%에 달하였는데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고졸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각 회사들이 베이비시터 채용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연령기준으로 평균 23.5세에서 55.7세까지의 하한 및 상한 연령 기준이 있었다(표 IV-4-1, 표 IV-4-2, 표 IV-4-3 참조).

즉, 회사에서는 최소한 20대 초반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이상을 채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경력 여부를 채용 시 고려하고 있으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은 극히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터의 연령을 볼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젊은 의미에서의 베이비시터라기보다는 내니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표 IV-4-1〉 베이비시터 모집 시 연령 제한 여부

단위: %, 세(명)

구분	제한함 ¹⁾	제한 최소 연령			제한 최대 연령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6.8	23.5	5.4	(93)	55.7	3.3	(93)
본사	100.0	25.6	5.4	(14)	54.6	2.4	(14)
가맹점	97.1	22.6	4.9	(70)	55.8	3.4	(70)
단독	88.9	27.0	7.1	(9)	56.6	3.7	(9)
F			3.9			1.1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2〉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단위: %(명)

구분	학력				경력		
	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제한 없음	계(수)	고려함	고려하지 않음	계(수)
전체	68.8	-	31.2	100.0(93)	86.0	14.0	100.0(93)
본사	71.4	-	28.6	100.0(14)	78.6	21.4	100.0(14)
가맹점	70.0	-	30.0	100.0(70)	88.6	11.4	100.0(70)
단독	55.6	-	44.4	100.0(9)	77.8	22.2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3〉 베이비시터 모집 시 결혼 상태 제한 여부

단위: %(명)

구분	기혼 유자녀에 한함	기혼자에 한함	제한 없음	계(수)
전체	9.7	16.1	74.2	100.0(93)
본사	7.1	21.4	71.4	100.0(14)
가맹점	8.6	15.7	75.7	100.0(70)
단독	22.2	11.1	66.7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 채용시 전문자격소지자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차별되는 일은 거의 없다. <표 IV-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선호하는 자격조건이 없는 경우도 40.9%에 달하여 베이비시터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조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²⁵⁾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는 연령대가 취학 전의 영유아에 집중되고 있어 베이비시터 회사에서는 영유아를 돌보는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4-4〉 베이비시터 모집 시 선호 자격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3.7	6.5	55.9	8.6	1.1	40.9	100.0(93)
본사	21.4	7.1	57.1	14.3	-	35.7	100.0(14)
가맹점	27.1	7.1	55.7	8.6	-	41.4	100.0(70)
단독	-	-	55.6	-	11.1	44.4	100.0(9)
X ² (df)	na	na	0.0(2)	na	na	0.2(2)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그러나, 베이비시터회사는 베이비시터 모집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 61.3%가 ‘인성’을 꼽았고 그 다음이 시터 경력 25.8%, 육아경험 10.8%이었다.²⁶⁾ 그

25) <표 IV-4-38> 참조

26) 이는 베이비시터 이용 시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표

이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다(표 IV-4-5 참조). 즉, 베이비시터 회사에서는 베이비시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학력이나 각종 자격증 등으로 표현되는 지식·기술적 전문성에는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4-5〉 베이비시터 모집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학력	시터 경력	인성	육아관련 자격증	가정 환경	연령	육아 경험	기타	계(수)
전체	1.1	25.8	61.3	-	-	-	10.8	1.1	100.0(93)
본사	-	-	85.7	-	-	-	7.1	7.1	100.0(14)
가맹점	1.4	31.4	54.3	-	-	-	12.9	-	100.0(70)
단독	-	22.2	77.8	-	-	-	-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2) 베이비시터 특성 및 활동

그러면 실제 베이비시터의 특성은 어떠한가? 본 고에서는 베이비시터 회사를 통하여 베이비시터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별·연령, 결혼상태·자녀유무 등 인구학적 특성, 학력 및 자격 특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부분적으로 회사나 비영리단체에서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성 및 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구학적 특성

첫째,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연령은 40대 43.4%, 50대 이상 38.8%로 대부분 4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표 IV-4-6 참조).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연령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평균 44.7세이며 영리·비영리 기관 소속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소연령에 있어 비영리 기관의 베이비시터는 28세이며 영리 기관의 베이비시터는 21세로 비영리기관보다 매우 낮은 연령대가 있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아이 돌봄을 주로 하는 전형적 의미의 베이

V-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베이비시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있어서도 '인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비시터 외에 학습·놀이 등을 지도하는 학습시터, 놀이시터, 영어시터 등 좀 더 젊은 연령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형태를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표 IV-4-7 참조).

〈표 IV-4-6〉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연령대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수)
전체	5.3	12.5	43.4	38.8	100.0(93)
본사	4.1	15.9	47.5	32.5	100.0(14)
가맹점	5.6	11.7	41.7	41.1	100.0(70)
단독	4.9	14.2	50.1	30.8	100.0(9)
F	0.4	1.9	1.7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7〉 조사된 베이비시터 연령 평균

단위: 세(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T
전체	44.7	8.4	21	60	(364)	
비영리	43.1	6.2	28	58	(94)	-2.3*
영리	45.3	9.1	21	60	(27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IV-4-8〉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결혼상태 및 자녀유무

단위: %(명)

구분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미혼	(수)
	평균	평균	평균	
전체	90.9	3.5	5.6	100.0(93)
본사	87.9	7.4	4.6	100.0(14)
가맹점	91.2	2.7	6.1	100.0(70)
단독	92.8	3.9	3.3	100.0(9)
F	1.1	3.7*	1.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9〉 조사된 베이비시터 결혼 상태

단위: %(명)

구분	미혼	기혼	이혼 또는 사별	계(수)	X ² (df)
전체	8.9	85.3	5.8	100.0(380)	
비영리	4.6	84.3	11.1	100.0(108)	10.5(2)**
영리	10.7	85.7	3.7	100.0(2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셋째, 또한 베이비시터는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비시터의 연령이 대부분 4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채용 시 육아 경험 여부가 중시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4-8, 표 IV-4-9, 표 IV-4-10 참조).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도 참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중 78.2%가 자녀 양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0〉 조사된 베이비시터 자녀 유무와 수

단위: %, 명

구분	있음	자녀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91.2	1.9	0.6	1	4	(338)
비영리	96.3	2.0	0.6	1	4	(103)
영리	89.2	1.8	0.6	1	4	(235)
X ² (df)/T	4.8(1)*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나) 사회경제적 특성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시터의 학력은 80.5%가 고졸이하이며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 등 대졸 이상의 학력도 18.4%이다(표 IV-4-11 참조).

한편 시터 조사에서는 베이비시터는 고졸 이하가 66.4%이며, 전문대졸·4년제 대졸 이상이 약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IV-4-12 참조).

〈표 IV-4-11〉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전체	본사	가맹점	단독	F
대학생	2.9	3.0	3.0	1.8	0.3
고졸미만	8.9	8.6	8.5	12.6	0.5
고졸	69.7	71.6	68.7	74.6	0.7
전문대	9.9	8.7	10.6	6.8	1.4
4년제 대졸 이상	8.5	7.7	9.2	4.3	2.3
(수)	(93)	(14)	(70)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12〉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중퇴)졸	4년제 대학(중퇴)졸 이상	계(수)	X ² (df)
전체	12.6	53.8	18.6	15.0	100.0(381)	
비영리	9.3	54.6	22.2	13.9	100.0(108)	2.5(3)
영리	13.9	53.5	17.2	15.4	100.0(27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로 활동 중인 인력의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등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11.4%, 2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베이비시터 회사의 본사·지점·단독 등 유형에 따라서는 본사의 경우가 자격소지자나 교육 경험이 있는 시터의 비율이 지점이나 단독 회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13, 표 IV-4-14 참조).

〈표 IV-4-13〉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자격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별 자격 없음	계(수)
전체	8.8	2.6	7.6	81.1	100.0(93)
본사	9.1	2.9	9.5	78.5	100.0(14)
가맹점	9.1	2.5	7.1	81.3	100.0(70)
단독	5.9	2.3	8.3	83.4	100.0(9)
F	1.1	0.0	0.6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14〉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공공기관 베이비시터 교육 경험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0.6	25.9	0	100	(93)	4.1*
본사	37.5	34.4	0	100	(14)	
지점	18.4	23.6	0	90	(70)	
직업소개소	11.4	18.5	0	6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보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약 20%에 불과하였고 이 중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영리기관에 소속된 자격 소지 베이비시터의 경우 그 자격은 대부분 보육교사 자격증이였다(표 IV-4-15 참조).

〈표 IV-4-15〉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단위: %(명)

구분	없음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기타	계(수)
전체	79.9	13.8	2.6	1.3	1.3	0.5	0.5	100.0(378)
비영리	79.2	18.9	0.9	-	0.9	-	-	100.0(106)
영리	80.1	11.8	3.3	1.8	1.5	0.7	0.7	100.0(2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88만 3천원이며 최소 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표 IV-4-16 참조).

〈표 IV-4-16〉 베이비시터의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T
전체	288.3	115.8	50	700	(300)	-0.9
비영리	278.6	109.5	70	600	(81)	
영리	291.8	118.1	50	700	(2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IV-4-17〉 등록된 베이비시터가 회사 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거주하는 비율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53.5	27.2	2	100	(93)	
본사	42.1	28.7	5	100	(14)	7.7**
가맹점	59.1	25.7	2	100	(70)	
단독	27.8	15.4	5	5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또한 베이비시터들은 <표 IV-4-17>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수 이상은 본인이 거주하는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맹점의 경우는 시터 중 60% 가까이 회사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넓은 지역을 아우르며 구심의 역할을 하는 본사와 달리 지점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인력 채용 및 파견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이 위치한 지역 출신의 시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들이 중산층 밀집지역에 소재하는데 비하여 베이비시터는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 시터 활동

베이비시터 회사 및 비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베이비시터로서의 활동 경력은 최소 1개월에서 120개월까지 편차가 매우 컸으며, 평균 21.3개월의 경력이 있었다. 비영리 기관과 영리 회사 간 소속 베이비시터의 활동 경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영리기관(베이비시터 회사)의 베이비시터는 활동경력이 평균 24.6개월임에 반해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평균 11.7개월의 활동경력으로 1년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최대 활동경력에 있어서도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72개월에 불과해 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와 약 4년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베이비시터가 영리기관의 사업으로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IV-4-18 참조).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기 이전의 직업에 관한 물음에서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경우가 31.6%이며, 보육교사·학습지 교사, 이외 아동양육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우는 30.5%에 불과해 약 70%의 베이비시터가 현 베이비시터 업무에서의 경력이 아동양육 관련한 유일한 경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4-19 참조).

〈표 IV-4-18〉 베이비시터 활동 경력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T
전체	21.3	17.6	1	120	(364)	
비영리	11.7	10.4	1	72	(94)	-6.4**
영리	24.6	18.4	1	120	(27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IV-4-19〉 베이비시터 이전 직업

단위: %(명)

구분	가사도우미	학습지 교사	보육교사	이외 아동양육에 관련된 직업	아동양육과 무관한 직업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4.2	5.8	11.8	12.9	33.7	31.6	100.0(380)	
비영리	1.9	2.8	13.1	16.8	32.7	32.7	100.0(107)	6.3(5)
영리	5.1	7.0	11.4	11.4	34.1	31.1	100.0(27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나. 베이비시터 교육 및 관리

1) 교육 현황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은 현재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외는 대부분의 업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민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업체로는 사이버 교육업체인 베이비시터자격개발원이 있다. 이곳에서는 25시간 30분짜리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자격업체인 한국자격개발원과 연계하여 베이비시터 민간자격을 부여한다. 실습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희망하는 경우에 베이비시터 업체와 연계한다고 한다.

베이비시터 회사에서의 교육은 교육과정에 비교적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터로서의 의무 및 주의사항 및 일부 실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였으나²⁷⁾ 최근에는 관련 교과목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 시간은

27) 손 유희, 주의사항 및 질의, 판화, 스텐실, 동물풍선 만들기, 동화 구연, 종이접기, 산후조리 이론, 모빌 만들기 등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회사의 예를 보면 3시간 동안 교육에 10개 항목을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IV-4-20 참조). 이러한 교육은 아이 돌보기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표 IV-4-20〉 베이비시터 기본 과정 교육내용

A 업체	
A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과정(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의 사회적 필요 ▪ 영유아 발달 이론 ▪ 영유아 영역별 발달 특성 ▪ 유아 심리 ▪ 문제행동의 유형과 수정의 실제 ▪ 연령별 케어 포인트 1, 2 ▪ 영양관리에 기초한 이유식 ▪ 연령별 놀이지도 1, 2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시팅일지 작성법 - 전문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 및 방법 ▪ 언어의 의미와 언어 영역 발달 과정 ▪ 언어 발달의 환경 만들기 ▪ 논리 영역의 의미와 논리 발달 환경 만들기 ▪ 창의력의 의미와 창의력 발달 환경 만들기 ▪ 외국어 교육의 의미와 외국어 환경 만들기
B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과목 51강 25시간 309분 유아교육개론, 신생아 돌보기, 유아교육의 실제, 유아 놀이지도, 유아심리

자료: URL: <http://www.thesittertime.com>

베이비시터로 파견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교육시간은 평균 14시간인데, 업체별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본사의 경우가 가맹점이나 단독업체보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V-4-21 참조).

〈표 IV-4-21〉 베이비시터 초기 교육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14.0	9.4	3	40	(93)	
본사	16.5	10.8	4	40	(14)	1.0
가맹점	13.9	9.0	3	40	(70)	
단독	10.9	9.8	3	35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22〉 베이비시터 교육 담당자

단위: %(명)

구분	자체 직원	초빙 인사	외부 베이비시터 훈련기관에 위탁	계(수)
전체	91.4	5.4	3.2	100.0(93)
본사	78.6	7.1	14.3	100.0(14)
가맹점	92.9	5.7	1.4	100.0(70)
단독	100.0	-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 교육을 자체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를 초빙하거나 외부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각각 5.4%,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사의 경우에는 자체 직원 외 인사를 초빙하거나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하는 경우가 가맹점이나 단독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업체의 크기나 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IV-4-22 참조).

베이비시터 교육 교재 이용에 있어서도 업체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사나 가맹점의 경우 자체 제작한 교재 뿐 아니라 총연합회에서 공통으로 제작한 교재, 외부 교재 이용도 비교적 높은 비율이나 단독업체의 경우 약 78%의 업체가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교육비를 회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표 IV-4-23 참조).

〈표 IV-4-23〉 베이비시터 교육 시 사용하는 교재

단위: %(명)

구분	자체 제작	총연합회 공통 교재	외부 단행본	계(수)
전체	52.7	46.2	1.1	100.0(93)
본사	50.0	42.9	7.1	100.0(14)
가맹점	50.0	50.0	-	100.0(70)
단독	77.8	22.2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가 받는 교육의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 심리, 교육 등에 관한 이론이 60%로 주가 되며, 이밖에 영양·이유식, 동화 구연·손유희, 놀이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4-24 참조).

〈표 IV-4-24〉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이론	실무	영양·이유식	동화구연·손유희	건강·안전	놀이교육	기타	계(수)
전체	60.2	20.3	2.3	0.8	7.5	6.8	1.5	100.0(1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2) 교육관련 의견 및 욕구

베이비시터 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에 관해 회사 대표와 베이비시터에게 각각 의견을 물은 결과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베이비시터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약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베이비시터 측에서는 교육시간이나 교육내용이 현재 적절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교육시간 17.4%, 교육내용 23.2%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교육시간이 길다는 의견과 교육내용이 많다는 의견도 각각 13.4%, 13%에 달해 회사 측과 베이비시터 측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표 IV-4-25, 26 참조). 이러한 차이는 회사 측에서 교육시간을 늘리기도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표 IV-4-25〉 교육의 베이비시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충분성: 베이비시터 회사

단위: %(명)

구분	매우 충분	어느 정도 충분	약간 부족	매우 부족	계(수)
전체	1.1	40.9	57.0	1.1	100.0(93)
본사	7.1	28.6	57.1	7.1	100.0(14)
가맹점	-	45.7	54.3	-	100.0(70)
단독	-	22.2	77.8	-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26〉 초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충분성: 베이비시터

단위: %(명)

구분	너무 길다	긴 편이다	적절하다	부족한 편이다	계(수)	X ² (df)
초기 교육시간						
전체	4.6	8.8	69.2	17.4	100.0(373)	
비영리	0.9	5.6	73.8	19.6	100.0(107)	7.0(3)
영리	6.0	10.2	67.3	16.5	100.0(266)	
교육내용						
전체	4.2	8.8	63.7	23.2	100.0(353)	
비영리	3.1	9.4	61.5	26.0	100.0(96)	1.0(3)
영리	4.7	8.6	64.6	22.2	100.0(2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앞으로 더 받고 싶은 교육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베이비시터는 앞으로 놀이교육, 미술·조형, 현장실무 및 경험 등 실제 아동을 돌보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무관련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교육내용은 주로 이론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제 베이비시터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무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V-4-27 참조).

〈표 IV-4-27〉 앞으로 가장 받고 싶은 교육내용: 베이비시터

단위: %(명)

구분	전체	비영리	영리
유아교육이론	0.8	1.3	0.6
현장 실무 및 경험	9.6	6.3	11.2
놀이교육	28.8	21.5	32.3
미술·조형	11.3	21.5	6.2
안전관리·응급처치	4.6	6.3	3.7
동화구연·손유희	7.5	8.9	6.8
아동발달·심리	9.2	13.9	6.8
목욕·베이비마사지	5.8	5.1	6.2
영양교육·이유식	6.3	3.8	7.5
부모교육	1.7	5.1	-
적절한 보수교육	3.8	1.3	5.0
학습시터	6.7	2.5	8.7
건강·체육	2.5	1.3	3.1
기타	1.7	1.3	1.9
계(수)	100.0(240)	100.0(79)	100.0(16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3) 사후관리 및 재교육

베이비시터에 대한 사후관리로 활동 후 보고, 응급 및 불만사항 처리 및 업체에서의 시터 재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활동보고는 비용 처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한 보고를 지침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터 재교육은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이비시터 파견 전 실시하는 초기 교육 이외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업체의 62.4%에 불과하였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평균 4.4개월에 4.5시간의 교육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표 IV-4-28 참조).

〈표 IV-4-28〉 재교육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와 시간

단위: %, 개월, 시간(명)

구분	실시		실시 시 간격		실시 시 시간		(수)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4	(93)	4.4	3.4	4.5	2.8	(34)
본사	57.1	(14)	2.8	2.0	5.4	3.5	(5)
가맹점	64.3	(70)	3.6	2.4	4.4	2.8	(25)
단독	55.6	(9)	10.8	3.2	3.5	1.9	(4)
X ² (df)	0.5(2)		15.3**		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IV-4-29〉 베이비시터 정기 모임 유무 및 주기

단위: %(명)

구분	월 1회	분기별 1회	년 2회	년 1회	없음	계(수)
자체 정기모임						
전체	1.1	1.1	-	1.1	96.8	100.0(93)
본사	7.1	-	-	-	92.9	100.0(14)
가맹점	-	1.4	-	1.4	97.1	100.0(70)
단독	-	-	-	-	100.0	100.0(9)
회사주관 정기모임						
전체	3.2	1.1	1.1	3.2	91.4	100.0(93)
본사	14.3	-	7.1	-	78.6	100.0(14)
가맹점	1.4	1.4	-	2.9	94.3	100.0(70)
단독	-	-	-	11.1	88.9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 간 친목을 도모하거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정기 모임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베이비시터간의 자체모임은 96.8%, 회사가 주관하는 베이비시터 정기 모임은 91.4%가 없다고 답하였다.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베이비시터의 채용 및 파견 후에는 인력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표 IV-4-29 참조).

다. 베이비시터 활동 실태

1) 활동 특성

사설 업체에 등록된 베이비시터뿐 아니라 YMCA와 같은 비영리기관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베이비시터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실태에 관해 조사하였다.

먼저, 베이비시터 활동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평균 4.3회 일을 나가고 있으며, 일주일당 평균 24.1시간 베이비시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주일 평균 활동 횟수는 최소 1회에서 14회까지, 일주일 평균 활동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180시간까지 개인별 편차가 매우 컸다.

이러한 활동 시간과 회수의 편차는 베이비시터가 소속된 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크다.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일주일 평균 활동 회수의 최소·최대의 격차가 영리업체의 베이비시터보다 크며, 반면 영리업체의 베이비시터는 최대 활동시간이 비영리 기관의 베이비시터보다 길었다. 이는 영리기관에 소속된 베이비시터의 경우 주당 몇 일, 일당 몇 시간을 월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가 주가 되며 최소 이용 시간도 비영리기관보다 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비영리 기관과 영리 사업체 간의 파견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표 IV-4-30 참조).

〈표 IV-4-30〉 베이비시터의 일주일 평균 활동 횟수와 시간

단위: 회, 시간(명)

구분	횟수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3	1.6	1	14	(372)	24.1	18.8	2	180	(375)
비영리	4.0	2.3	1	14	(105)	21.5	17.3	2	100	(107)
영리	4.4	1.2	1	8	(267)	25.2	19.2	3	180	(268)
T			-2.5*					-1.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고 있는 아동의 연령대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이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가 나타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IV-4-31 참조).

〈표 IV-4-31〉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는 아동

단위: %(명)

구분	12개월 미만 아기	만 1~2세 아동	3세 이상 취학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일정하지 않음	계(수)	X ² (df)
전체	33.3	25.8	28.4	5.7	0.8	6.0	100.0(384)	
비영리	38.5	24.8	26.6	3.7	-	6.4	100.0(109)	3.8(5)
영리	31.3	26.2	29.1	6.5	1.1	5.8	100.0(2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전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되던 베이비시터에 대해 생각보다 두터운 수요층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초등학생도 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 활동 대상이라는 것은 영리업체에서 영유아뿐 아니라 취학후의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학습시터나 놀이시터 등까지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32〉는 베이비시터 활동을 선택한 이유를 나타내는데, 적성에 맞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응답과 주변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다는 응답 순이었는데, 반면 수입이 괜찮아서라는 응답은 매우 적어 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적성에 맞는 일로 시간 활용을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베이비시터의 업무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있고 자녀를 돌봐본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비교적 구직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업종인 것이다.

〈표 IV-4-32〉 베이비시터 활동 선택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시간활용 용이	적성에 맞춤	적절한 수입	쉬운 구직	주변 소개	기타	계(수)
전체	30.3	57.2	2.3	12.0	18.5	5.5	100.0(383)
비영리	30.3	53.2	1.8	10.1	17.4	4.6	100.0(109)
영리	30.3	58.8	2.6	12.8	19.0	5.8	100.0(274)
X ² (df)	267.0(2)**	173.6(2)**	375.4(2)**	341.9(2)**	314.7(2)**	364.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한편, 정부부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돌보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고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사업을 통해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일자리 또는 소득창출의 욕구가 큰 여성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IV-4-33>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이유는 일자리 필요가 50.6%이고,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43.7%이다.

<표 IV-4-33>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일자리 필요	양육경험 바탕으로 여가시간 활용	무응답	계(수)
비율	50.6	43.7	5.7	100.0(179)

자료: 여성가족부(2006), 내부자료.

현재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면서 다른 직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이다. 다른 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베이비시터 활동도 하는 경우가 3.9%, 베이비시터 활동을 주업으로 하면서 다른 부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5%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업체 외 다른 베이비시터 업체에서도 활동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즉, 현재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한 업체에 소속되어 베이비시터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표 IV-4-34, 표 IV-4-35 참조).

<표 IV-4-34> 베이비시터 외 다른 직업 종사 여부

단위: %(명)

구분	다른 주업+시터	시터 주업+부업	시터만	계(수)
전체	3.9	4.5	91.6	100.0(381)
비영리	3.7	7.5	88.8	100.0(107)
영리	4.0	3.3	92.7	100.0(2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IV-4-35> 등록 업체 이외 타 베이비시터 업체 근무 여부

단위: %(명)

구분	한 곳에서만 하고 있음	타 업체도 근무중	계(수)
전체	96.5	3.5	100.0(376)
비영리	99.0	1.0	100.0(104)
영리	95.6	4.4	100.0(2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IV-4-36>은 베이비시터 활동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들이 베이비시터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한 것은 이들에게 가사 일을 기대한다는 점으로 38.4%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양육방식 차이로 인한 어려움,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부모가 베이비시터 업무 외 가사 일을 기대하거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은 비영리 기관과 영리 업체에 소속된 베이비시터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이었다.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에 비해 영리사업체 소속의 베이비시터에 가사 일을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고, 반대로 근무시간의 불규칙함은 비영리기관에서 파견되는 베이비시터에 더 빈번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영리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의 경우 대체적으로 1회당 최소 파견시간이 비영리업체보다 긴 편이고, 파견 방식도 주당 몇 회, 월 단위로 계약되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출퇴근에 따라 베이비시터 업무에 집중되어야 할 시간외의 여유시간에 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근무시간의 불규칙성은 덜할 것이라 짐작된다.

<표 IV-4-36> 베이비시터 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부모와 양육방식 차이	가사일 기대	불규칙한 근무시간	아이 다루기 미숙	식사 문제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16.6	38.4	16.4	6.0	9.4	10.4	2.9	100.0(385)	
비영리	14.5	26.4	30.0	7.3	15.5	6.4	-	100.0(110)	37.1(6)**
영리	17.5	43.3	10.9	5.5	6.9	12.0	4.0	100.0(2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한편 부모와 양육방식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파견방식을 불문하고 비슷한 비율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라서 부모와 베이비시터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로나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급여

비영리기관과 영리 사업체의 베이비시터의 급여는 평균 61만 6천원 수준이었는데,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123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이는 월별로 계약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서부터 몇 시간 일한 경우까지 활동 형태가 다양함

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IV-4-37 참조).

〈표 IV-4-37〉 베이비시터의 한 달 평균 급여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T
전체	616.0	312.9	15	1,230	(358)	
비영리	597.1	296.4	15	1,200	(90)	-0.7
영리	622.4	318.5	80	1,230	(2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 이용 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53.5%,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6.5%였다. 이용 요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영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와 비영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 간에 차이가 있어 비영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가 요금을 좀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4-38 참조).

〈표 IV-4-38〉 베이비시터 요금 적절성에 대한 시터 의견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53.5	46.5	100.0(274)	
비영리	63.4	36.6	100.0(101)	5.4(1)*
영리	49.8	50.2	100.0(27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표 IV-4-39〉 베이비시터의 적절한 요금 수준 의견

단위: 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T
전체	6,971.3	1,499.2	3,000	10,000	(174)	
비영리	6,675.7	1,113.2	3,000	10,000	(37)	-1.4
영리	7,051.1	1,581.5	4,000	10,000	(1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요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이용 요금 수준은 최소 시간당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으로 편차가 큰 편이었고 평균적으로 약 7,000원을 시간당 적정 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인식하는 시간당 적정 수당과도 차이가 없는 수

준이었다. 아이돌보미도 수당으로는 시간당 7,000원을 지정한 비율이 39.7%로 가장 많았다(표 IV-4-39, 표 IV-4-40 참조).

〈표 IV-4-40〉 시간당 베이비시터의 적당한 수당액

단위: 원, %(명)

구분	3,000	4,00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8,000	10,000	모름	계(수)	평균
베이비시터													
전체	0.6	0.6	8.0	0.6	35.1	2.3	26.4	1.7	10.3	14.4	-	100.0(174)	6,971.3
영리	2.7	-	8.1	-	21.6	2.7	51.4	2.7	8.1	2.7	-	100.0(37)	6,675.7
비영리	-	0.7	8.0	0.7	38.7	2.2	19.7	1.5	10.9	17.5	-	100.0(137)	7,051.1
아이돌보미	-	4.5	24.6	-	24.6	-	39.7	-	-	-	6.6	100.0(17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2007). 아이돌보미 사업 실태.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3) 만족도

현재 활동 중인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활동의 만족도 및 그 이유,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불만족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1〉 베이비시터 활동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수)	$X^2(df)$
전체	10.2	41.3	43.6	4.7	0.3	100.0(383)	
비영리	6.5	36.1	50.0	6.5	0.9	100.0(108)	8.0(4)
영리	11.6	43.3	41.1	4.0	-	100.0(2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그러나 매우 만족 등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비영리 기관 소속과 영리 사업체 소속의 베이비시터에 차이가 있어 영리기관 소속의 베이비시터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표 IV-4-41 참조).

〈표 IV-4-42〉는 만족하는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흥미나 적성에 맞아서가 베이비시터 업무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밖에 시간활용을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서의 순위를 보였다.

〈표 IV-4-42〉 베이비시터 활동에 만족·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비영리	영리	구분	전체	비영리	영리
흥미적성	35.3	29.6	39.0	낮은 급여	38.2	21.4	43.9
시간활용	19.1	7.4	26.8	불규칙한 근무	16.4	21.4	14.6
보람	11.8	-	19.5	잡무 요구	9.1	14.3	7.3
보수교육	2.9	-	4.9	부모 불편	5.5	7.1	4.9
근무시간 유동적	7.4	11.1	4.9	식사문제	12.7	-	17.1
기관신뢰도	7.4	18.5	-	기타	18.2	35.7	12.2
자기계발	7.4	18.5	-	계(수)	100.0(55)	100.0(14)	100.0(41)
기타	8.8	14.8	4.9				
계(수)	100.0(68)	100.0(27)	100.0(4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반면 불만족하는 경우 낮은 급여가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이며, 불규칙한 근무, 잡무 요구, 부모로 인한 불편 등이 불만족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베이비시터의 소속 기관의 유형별로 만족과 불만의 이유가 뚜렷이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리 업체 소속 베이비시터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 흥미나 적성에 맞거나 시간 활용,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점에 만족의 이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비영리 기관 소속의 베이비시터는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 뿐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 및 자기계발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영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는 업무 성격 자체로부터 주로 만족을 얻고 있는데 반해 비영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는 업무 자체 이외에도 소속된 기관으로부터도 자부심과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이다(표 IV-4-42 참조).

불만족의 이유에서 영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는 대체로 낮은 급여에 불만이 집중되어 있고 근무의 불규칙성이나 잡무, 부모로 인한 불편 등 이외의 사유는 현저히 낮게 나타남에 반해서 비영리 기관 소속 베이비시터는 낮은 급여 뿐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도 같은 수준의 불만 사유가 되고 있고 이외 잡무나 부모로 인한 불편 등도 비교적 크게 느끼고 있는 등 소속 기관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시터 활동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서 베이비시터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경우는 5.2%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영리 기관 소속과 영리 사업체 소속의 베이비시터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다른 일

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영리 사업체 소속의 경우가, 그리고 현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직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경우는 비영리 기관 소속의 베이비시터가 2.5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V-4-43 참조).

〈표 IV-4-43〉 베이비시터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할 의사

단위: %(명)

구분	없음	생각해 보지 않았음	생각해 보고 있음	다른 일을 찾고 있음	계(수)	$\chi^2(df)$
전체	35.2	37.3	22.3	5.2	100.0(381)	
비영리	19.6	34.6	39.3	6.5	100.0(107)	30.1(3)**
영리	41.2	38.3	15.7	4.7	100.0(27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다른 일을 찾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비영리 업체 소속 베이비시터의 경우 낮은 수입의 베이비시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는 평생 직업으로 삼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영리 업체 소속 베이비시터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영리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보다는 비영리 기관 소속의 베이비시터가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베이비시터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를 낮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표 IV-4-44 참조).

〈표 IV-4-44〉 베이비시터 이외 다른 일을 찾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적성에 안 맞음	업체와의 갈등	아동 부모와의 갈등	적절하지 않은 수입	평생 직업으로 삼기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9.5	-	-	55.6	22.2	12.7	100.0(63)
비영리	14.3	-	-	42.9	42.9	-	100.0(7)
영리	8.9	-	-	57.1	19.6	14.3	100.0(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4) 비영리 기관 시터의 인식

다음은 비영리 기관 소속 시터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대상 YMCA 소속 베이비시터 중 사설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9.3%에 불과하였으나 사설 업체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비영리 기관에

소속된 이후의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영리 기관 소속의 베이비시터로서 활동할 때 부모의 인식과 처우, 교육 기회가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80%가 부모의 인식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곧 이들의 자부심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영리 기관은 베이비시터 본인의 소속 기관에 대한 신뢰감도 높을 뿐 아니라²⁸⁾ 잘 알려진 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베이비시터의 자부심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소속 기관의 인지도와 신뢰도는 소속된 베이비시터의 개인적 자부심과 책임 있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4-45〉 비영리업체와 영리업체와의 차이: YMCA소속

단위: %(명)

구분	그러함	아님	모르겠음	계(수)
부모의 인식이 더 좋음	80.0	10.0	10.0	100.0(10)
교육기회가 더 좋음	60.0	30.0	10.0	100.0(10)
처우가 더 좋음	57.1	42.9	-	100.0(7)
시민단체(YMCA) 재직에 더 자부심을 느낌	100.0	-	-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조사」 결과임.

5. 정책시사점

2007년 현재 조사대상 93개 업체 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본사의 설립은 2003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후 주요 베이비시터 업체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화하여 베이비시터의 브랜드 및 그에 따른 인지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베이비시터 소개 및 파견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신(新)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의 주요한 상품인 개별서비스 제공 인력, 즉 베이비시터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인지도나 대우,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표 IV-4-42> 베이비시터 활동에 만족하는 이유 참조.

첫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유일한 요소인 질 높은 인력양성을 위해서 ‘실무’에 바탕을 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베이비시터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인력의 질 관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턱없이 짧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으며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 등 교육인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베이비시터로 활동 중인 인력들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대부분 이론에 치중하고 있어 실습이나 실무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내용 구성시 실습과정이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시터 전문 기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자격기준 제정시 부여되어야 하는 조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업체에서 베이비시터 채용 시 인성과 육아경험이 학력이나 자격증 소지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비전문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부모들도 베이비시터 선택 시 인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경험과 회사의 신뢰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채용에 대한 업체와 부모의 요구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시터를 하나의 신직종으로 정착시키고 인력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에게는 적성과 인성, 육아경험이 학력이나 자격과 같은 객관적 요소에 비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므로, 수준 높게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는 실습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베이비시터의 양성 및 파견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며, 전반적으로 시터와 부모의 회원가입, 시터 파견시의 계약은 서면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터 파견후 시터 및 부모의 의견 수렴, 시터의 활동 보고, 보수 교육 등 사후관리는 부실하며, 파견후 활동내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여 육아활동 보고를 요구하지 않거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제출 단위 기간이 없이 수시로 받는 등 사실상 시터 파견 후의 서비스 질 관리에는 소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 직업인으로 경력을 쌓아나가게 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영리·영리 부문 공히 사후관리 체계의 개발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베이비시터 파견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회사와 아동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본인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베이비시터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업체들은 손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터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가입비율이 낮아서 아동이나 회사에 비해 시터에 대한 보장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개별적인 손해보험 가입 등 시터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베이비시터 양성을 사회적 일자리 마련의 한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의 장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활동 중인 베이비시터는 평균 2년 정도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베이비시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베이비시터의 평균 활동 경력이 짧은 점에 비추어, 베이비시터 활동을 시작한 사람 중 장기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적성에 맞는 일로서 여가활용과 일자리 및 소득획득의 욕구로 베이비시터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응답에 비추어, 이들이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만족스러운 소득 획득이나 직업적인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력 있는 베이비시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이들이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적절한 소득 및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그리고 베이비시터라는 업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베이비시터 업종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베이비시터 이용 및 만족도

본 장에서는 베이비시터 및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와 아동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베이비시터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베이비시터 업체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부모로부터 각각 수집되었다.

1. 이용자 특성

가. 이용 아동 어머니의 특성

1) 사회·경제적 특성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 학력 및 가구의 소득은 일반 영리 베이비시터 사업체를 이용하는 어머니 133명과 비영리기관인 YMCA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 134명을 통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어머니 또는 가정 내 주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33.6세로, 최소 26세부터 최대 54세까지 다양하였다(표 V-1-1 참조).

이러한 어머니의 연령은 이들이 이용하는 베이비시터 회사의 영리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비영리기관인 YMCA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V-1-1〉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연령 및 학력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연령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 (중퇴)졸	4년제 대학 (중퇴)졸 이상	대학원 이상	계(수)	X ² (df)
전체	33.6	0.4	10.4	17.5	59.5	12.3	100.0(269)	
비영리	34.6	-	15.6	24.4	47.4	12.6	100.0(135)	22.1(4)**
영리	32.8	0.7	5.2	10.4	71.6	11.9	100.0(1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한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어머니 또는 가정 내 주양육자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어머니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하였으며, 전문대졸과 대학원 이상 또한 17.5%와 12.3%로 나타나, 이용자의 학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고학력 이용자의 특성은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를 이용하는 어머니에게서 두드러져서, 영리 회사 이용자의 71.6%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였다(표 V-1-1 참조).

<표 V-1-2>는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시터 이용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나타내는데, 500만원 이상이 23.5%로 가장 다수였으며, 3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4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14.2%에서 16.6%까지 매우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반면 300만원 미만은 전체의 15.8%에 불과하여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았다.

<표 V-1-2> 베이비시터 이용 가구의 월 평균 수입

단위: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49만원	450~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	1.2	2.0	6.5	6.1	15.0	14.2	16.6	15.0	23.5	100.0(247)
비영리	-	2.4	2.4	8.1	6.5	14.5	16.1	17.7	14.5	17.7	100.0(124)
영리	-	-	1.6	4.9	5.7	15.4	12.2	15.4	15.4	29.3	100.0(12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2) 취업 여부

가정 내 대리양육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인 어머니 취업 여부를 이용자 특성 중 하나로서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93개의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이용 가구 중 취업모의 경우는 약 74.3%인 반면 전업주부는 25.6%로 나타났다(표 V-1-3 참조). 이 같은 결과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표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전체 응답자의 61.4%에 해당하여 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비록 그 수치에 차이는 있으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다수는 회사 보고와 어머니 보고 모두 일관되게 취업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이비시터를 취업모의 가정에서 대리양육의 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다르게 전체 이용자의 1/4에서 1/3에 해당하는 어머니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양육자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표 V-1-4>를 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베이비시터가 주로 담당하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세 이상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의 육아지원기관 및 기타 유사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가능해지며, 아동 자체의 성숙으로 인해 육아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됨에 따라 영아에 비해 대리양육의 요구가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 참여자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치만을 비교하여 보면 영아 보다는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1-3>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취업모와 전업주부 비율

단위: %(명)

구분	취업모			전업주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4.3	22.5	(93)	25.6	22.6	(93)
본사	70.2	26.2	(14)	29.8	26.2	(14)
가맹점	74.3	22.6	(70)	25.6	22.7	(70)
단독	80.6	15.3	(9)	19.4	15.3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표 V-1-4> 조사된 베이비시터 이용자의 취업모와 전업주부 비율

단위: %(명)

구분	취업모	전업주부	계(수)	$\chi^2(df)$
전체	61.4	38.6	100.0(267)	
회사성격				
비영리	60.2	39.8	100.0(133)	0.2(1)
영리	62.7	37.3	100.0(134)	
연령				
3세 미만	62.3	37.7	100.0(138)	0.2(1)
3세 이상	59.8	40.2	100.0(12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어머니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반수에 해당하는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 또한 1/3 정도인 것에 반해,

판매직, 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어머니는 직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1-5 참조).

〈표 V-1-5〉 취업한 어머니의 직업

단위: %(명)

구분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업	기능직	단순 노무직	기타	계(수)
전체	54.9	31.5	4.3	2.5	-	6.8	100.0(164)
회사성격							
비영리	53.8	28.8	5.0	5.0	-	7.5	100.0(133)
영리	57.1	33.3	3.6	-	-	6.0	100.0(134)
연령							
3세 미만	60.5	29.1	3.5	1.2	-	5.8	100.0(86)
3세 이상	48.7	34.2	5.3	3.9	-	7.9	100.0(7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한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취업한 어머니의 근무 시간을 살펴본 결과 68.4%로 다수의 어머니가 전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특성은 특히 영리업체를 이용하는 가정과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이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 두드러졌다(표 V-1-6 참조).

〈표 V-1-6〉 취업한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근무 시간

단위: %(명)

구분	전일제	반일제	부정기적	기타	계(수)
전체	68.4	17.4	12.9	1.3	100.0(155)
회사성격					
비영리	62.0	18.3	18.3	1.4	100.0(71)
영리	73.8	16.7	8.3	1.2	100.0(84)
연령					
3세 미만	61.7	21.0	14.8	2.5	100.0(81)
3세 이상	76.4	13.9	9.7	-	100.0(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월별 가구의 총수입과는 별도로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월평균 수입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V-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150만원이상 200만

원 미만인 23.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2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이상 350만원 미만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V-1-7〉 취업한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월평균 수입

단위: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 249만원	250~ 299만원	300~ 349만원	350~ 399만원	400~ 449만원	450~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7.5	18.7	23.1	20.9	10.4	9.0	4.5	3.7	0.7	1.5	100.0(134)
회사성격											
비영리	13.1	18.0	29.5	9.8	9.8	8.2	6.6	4.9	-	-	100.0(61)
영리	2.7	19.2	17.8	30.1	11.0	9.6	2.7	2.7	1.4	2.7	100.0(73)
연령											
3세미만	8.5	14.1	19.7	21.1	15.5	9.9	4.2	4.2	-	2.8	100.0(71)
3세이상	6.5	24.2	27.4	21.0	4.8	8.1	3.2	3.2	1.6	-	100.0(6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영리 단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어머니보다는 영리 사업체를 이용하는 어머니, 그리고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보다는 3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어머니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영아의 경우가 일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은 것과는 관계가 있다.

나. 이용 아동 특성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베이비시터가 방문하여 한 번에 돌보는 자녀의 수와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75.5%에 달하는 가구에서 베이비시터가 한 명의 자녀만을 돌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두 명의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경우는 22.4%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경우는, 이용하는 시터 업체가 비영리인 경우, 주로 돌보는 자녀가 3세이상인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두드러졌다(표 V-1-8 참조).

<표 V-1-8> 베이비시터 방문 시 돌보는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전체	75.5	22.4	2.2	100.0(277)
회사성격				
비영리	70.5	25.9	3.6	100.0(139)
영리	80.4	18.8	0.7	100.0(138)
연령				
3세 미만	81.4	18.6	-	100.0(140)
3세 이상	68.7	26.9	4.5	100.0(134)
모취업				
취업	76.2	22.0	1.8	100.0(164)
미취업	74.3	22.8	3.0	100.0(10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표 V-1-9>는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연령이다. 전체 이용 가정의 아동 중 만 3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이 약 75.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이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만 3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은 이용 아동의 18.3%에 해당하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약 6.4%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는 베이비시터 회사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1-9> 베이비시터 주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만 3세 미만		만 3세~만 5세		초등학생 이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5.5	15.0	18.3	11.2	6.4	6.6	(93)
본사	74.6	17.0	18.1	12.3	7.3	6.3	(14)
가맹점	75.8	14.8	18.1	11.1	6.3	6.8	(70)
단독	74.4	14.7	20.2	11.2	5.3	5.3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이상의 회사 보고 결과를 부모조사 결과와 함께 보면 돌보는 자녀의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V-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연령은 평균 2.8세로, 시터 회사의 유형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로써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여 돌보는 아동은 주로 영아가 많으나, 신생아보다는 걸음마기 이후의 영아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표 V-1-10〉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연령 평균

단위: 세(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계(수)	T
전체	2.8	2.0	0	10	(276)	
회사성격						
비영리	2.8	1.9	0	10	(137)	0.3
영리	2.7	2.0	0	8	(139)	
모취업						
취업	2.8	2.1	0	0	(162)	0.6
미취업	2.7	1.8	10	8	(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그러나 시간제 보육만을 하는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다소 차이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만 3세에서 6세 사이로 43.3%이었으며, 3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는 3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보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돌보는 아동의 연령대가 일반적인 베이비시터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V-1-11 참조).

〈표 V-1-11〉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자녀의 연령

단위: %(명)

구분	0세~ 만3세	만3세~ 만6세	만6세~ 만9세	만9세~ 만12세	0세~만12세 아동 모두	계(수)
비율	30.6	43.3	6.2	0.6	19.3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2007). 내부자료.

한편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성별은 다음의 <표 V-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가 과반수이다.

〈표 V-1-12〉 베이비시터가 주로 돌보는 자녀의 성별

단위: %(명)

구분	전체	회사성격		연령		모취업	
		비영리	영리	3세 미만	3세 이상	취업	미취업
남자	55.1	49.6	60.1	60.1	49.2	56.3	55.0
여자	44.9	50.4	39.9	39.9	50.8	43.7	45.0
계(수)	100.0(267)	100.0(129)	100.0(138)	100.0(138)	100.0(134)	100.0(158)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2. 이용 특성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통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부모와 여성가족부의 비영리 파견사업인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로부터 각각 수집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행태를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용 빈도 및 시간

먼저 회사 또는 기관을 통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 이용하는 가정과 가끔 이용하는 가정이 반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베이비시터 이용 형태는 조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리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자녀가 3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베이비시터를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였다.

<표 V-2-1> 베이비시터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자주	비교적 자주	가끔	어쩌다가 한번	계(수)	X ² (df)
전체	24.0	33.0	32.3	10.8	100.0(279)	
회사성격						
비영리	17.9	30.7	38.6	12.9	100.0(140)	9.5(3)*
영리	30.2	35.3	25.9	8.6	100.0(139)	
연령						
3세 미만	35.5	31.9	27.0	5.7	100.0(141)	24.1(3)**
3세 이상	12.6	34.8	36.3	16.3	100.0(135)	
모취업						
취업	35.4	32.9	24.4	7.3	100.0(164)	34.2(3)**
미취업	6.8	32.0	44.7	16.5	100.0(10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아래의 <표 V-2-2>는 베이비시터 이용이 일어나는 형태를 질문한 결과로서, 위의 이용 빈도와 마찬가지로 베이비시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동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2-2〉 베이비시터 이용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이용	비정기적 이용	계(수)	$\chi^2(df)$
전체	50.7	49.3	100.0(278)	
회사성격				
비영리	41.7	58.3	100.0(139)	9.0(1)**
영리	59.7	40.3	100.0(139)	
연령				
3세 미만	64.5	35.5	100.0(141)	22.7(1)**
3세 이상	35.8	64.2	100.0(134)	
모취업				
취업	62.6	37.4	100.0(163)	26.1(1)**
미취업	30.1	69.9	100.0(10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특히 영리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자녀가 3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 베이비시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표 V-2-2 참조).

베이비시터의 이용 시간의 산출을 위하여, 각 조사 참여자는 베이비시터 1회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과 한 달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횟수, 그리고 한 달 총 이용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번 베이비시터가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약 5.3시간이었으며, 한 달에 약 11회 정도 방문하여, 조사 가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66.6시간 정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V-2-3 참조).

〈표 V-2-3〉 한 달 평균 베이비시터 이용 시간 및 횟수

단위: 시간, 회

구분	1회 이용시간			한 달 평균 이용 횟수			한 달 총 이용시간		
	평균	(수)	T	평균	(수)	T	평균	(수)	T
전체	5.3	(260)		11.0	(258)		66.6	(252)	
회사성격									
비영리	4.1	(129)	-8.6**	9.1	(129)	-4.4**	39.2	(121)	-7.0**
영리	6.4	(131)		12.8	(129)		92.0	(131)	
연령									
3세미만	5.9	(136)	-0.9	12.2	(134)	-3.2**	84.5	(130)	-2.4*
3세이상	4.6	(121)		9.5	(121)		47.9	(135)	
모취업									
취업	5.7	(156)	3.0**	13.1	(155)	6.2**	82.7	(156)	5.4**
미취업	4.7	(93)		7.7	(94)		38.3	(8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이러한 이용시간의 특성 또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이용하는 업체가 영리인 경우,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자녀가 3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횟수 또한 빈번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파견인력인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가구의 이용 빈도 및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V-2-4>에 따르면, 도우미가 필요한 횟수는 주 당 1~2회가 63.1%로 가장 많고, 매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에 불과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구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이용 가구에 비해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V-2-4> 주당 아이돌보미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1~2회	3~4회	5~6회	매일	계(수)
비율	63.1	24.4	7.7	4.8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하루 중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시간은 3~4시간이 57.5%로 가장 많았고, 5-9시간으로 답한 가정도 29.7%였으며, 10시간 이상은 5.9%이었다(표 V-2-5 참조). 위의 <표 V-2-3>에서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이용 시간이 1회에 약 5.3시간으로 보고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아이돌보미의 이용 시간은 베이비시터의 이용 시간보다 다소 짧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V-2-5> 일일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시간

단위: %(명)					
구분	2시간	3~4시간	5~9시간	10시간 이상	계(수)
비율	6.9	57.5	29.7	5.9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V-2-6> 아이돌보미 이용 시간대

단위: %(명)										
구분	0시~3시	3시~6시	6시~9시	9시~12시	12시~15시	15시~18시	18시~21시	21시~24시	무응답	계(수)
주말	1.5	9.6	-	23.3	24.7	17.3	15.9	2.2	5.5	100.0(325)
평일	-	4.5	18.0	16.1	5.5	9.7	41.7	4.5	-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시간대는 평일은 저녁 6시부터 9시가 41.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로 18.0%이다. 이는 아이돌보미가 시간제 중심으로 이용시간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관을 대신하기 보다는 기관 이용시간 전후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정도가 가장 많다(표 V-2-6 참조).

나. 이용 이유

1) 베이비시터 이용 이유

<표 V-2-7>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장 주된 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과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9.4%, 38.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 같은 결과를 어머니 취업 여부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취업모의 대부분은 근무시간 중의 대리양육이 61.0%로 가장 큰 이용 이유인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 사회·여가활동이 71.8%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즉 집안 일로 바쁘거나 평소 자녀를 돌보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몸이 불편할 때는 각각 6.2%, 5.8%, 4.0% 정도로 낮게 응답되었다.

<표 V-2-7>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몸이 불편할 때	집안일로 바쁠 때	취미, 외출, 등 사회활동	평소 돌보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 필요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4.0	6.2	39.4	5.8	38.7	5.8	100.0(274)	
회사성격								
비영리	5.7	7.1	37.9	8.6	33.6	7.1	100.0(140)	9.1(5)
영리	2.2	5.2	41.0	3.0	44.0	4.5	100.0(134)	
연령								
3세 미만	2.9	4.3	36.7	5.8	43.2	7.2	100.0(139)	4.6(5)
3세 이상	5.3	7.6	41.7	6.1	34.8	4.5	100.0(132)	
모취업								
취업	2.4	4.3	18.3	9.1	61.0	4.9	100.0(164)	112.6(5)**
미취업	6.8	8.7	71.8	-	4.9	7.8	100.0(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한편,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이용 이유는 야근과 출장 시가 41.5%로 가장 많고 이외 아이가 아플 때, 양육자의 개인 활동, 보육시설 이용이 힘들 때, 집안 행사 때 등이다(표 V-2-8 참조). 이 같은 결과를 베이비시터 이용 이유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베이비시터보다는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자녀 돌봄의 요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8〉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야근, 출장 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개인 활동	보육시설 이용이 힘들 때	집안 행사 시	무응답	계(수)
비율	41.5	15.3	14.2	11.2	4.4	13.4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2007). 내부자료.

2) 업체 이용 이유 및 경험

〈표 V-2-9〉는 이용 부모에게 현재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V-2-9〉 현 베이비시터 소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적절한 요금	기관 이미지	우수한 베이비시터	입회 및 이용 수월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1.3	37.8	42.5	6.2	2.2	100.0(275)	
회사성격							
비영리	8.5	31.2	49.6	7.1	3.5	100.0(141)	11.6(4)*
영리	14.2	44.8	35.1	5.2	0.7	100.0(134)	
연령							
3세 미만	9.4	35.3	48.9	4.3	2.2	100.0(139)	5.6(4)
3세 이상	12.1	41.7	36.4	8.3	1.5	100.0(132)	
모취업							
취업	9.8	36.6	47.0	4.3	2.4	100.0(164)	4.5(4)
미취업	11.7	40.8	37.9	8.7	1.0	100.0(10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이용하는 업체를 통해 소개받는 베이비시터가 우수한 점과 업체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이용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용료의 적절성은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보고되었는데, 업체의 이미지와 적절한 요금은 특히 영리업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더 많이 지적하였다. 즉, 영리업체를 이용하는 부모일수록 업체의 이미지와 요금의 적절성이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로 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비영리단체를 이용하는 부모는 베이비시터의 우수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한편, 비영리단체인 YMCA를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타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69.3%에 해당하는 다수의 가정이 일반적인 영리 베이비시터 업체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V-2-10 참조). 이는 베이비시터 회사가 대도시 중산층 밀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비하여, YMCA 아가야는 전국 16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V-2-10〉 타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0.7	69.3	100.0(1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YMCA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다. 베이비시터 선택 기준

다음은 베이비시터 선택 기준을 알아보았다. <표 V-2-11>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고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질문한 결과로, 베이비시터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4.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외에 베이비시터를 소개한 업체의 신뢰도와 시터의 자녀 양육경험 또한 각각 25.2%와 24.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학력, 연령, 교양 등을 꼽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베이비시터의 선택 기준은 특히 이용하는 업체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이용하는 업체별 선택기준을 보면, 비영리 기관을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는 가구의 경우 시터의 인성 36.4%보다 회사의 신뢰도 37.1%로 유사하게 지적한 반면, 영리 업체를 통해 시터를 소개받는 경우는 반수 이상의 가구가 시터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회사의 신뢰도를 지적한 경우는

응답자의 12.7% 정도에 불과하였다. 영리업체 이용자가 인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시터 선택 기준과도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장시간 시터를 이용하는 취업모의 경우 시터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경우가 47.6%이었다. 한편 미취업모 가정의 경우 시터의 인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8%에 불과한 반면 회사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꼽은 경우가 이와 비슷한 수준인 32.0%로 응답되었다.

〈표 V-2-11〉 베이비시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경험	학력	연령	교양	인성	회사의 신뢰도	기타	계(수)
전체	24.1	2.2	1.5	1.5	44.2	25.2	1.5	100.0(274)
회사성격								
비영리	18.6	2.1	1.4	1.4	36.4	37.1	2.9	100.0(140)
영리	29.9	2.2	1.5	1.5	52.2	12.7	-	100.0(134)
연령								
3세 미만	23.0	0.7	0.7	0.7	48.9	23.7	2.2	100.0(139)
3세 이상	25.0	3.0	2.3	2.3	40.2	26.5	0.8	100.0(132)
모취업								
취업	23.2	2.4	1.2	2.4	47.6	21.3	1.8	100.0(164)
미취업	26.2	1.9	-	-	38.8	32.0	1.0	100.0(10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한편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는 돌보미의 자격조건으로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지적한 비율이 43.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양육경험 30.8%이며, 이외 아이에 대한 전문 지식 15.0%이고, 보육 관련 자격은 11.2%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표 V-2-12 참조).

〈표 V-2-12〉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단위: %(명)

구분	아이에 대한 사랑	아이 양육 경험	아이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육 관련 자격증	계(수)
비율	43.0	30.8	15.0	11.2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2007). 내부자료.

라. 비용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374,500원이었다. 아래의 <표 V-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평균 이용비용은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특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30만원을 상회하는 등 이용비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이 개별 가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베이비시터 이용비용 자체의 편차보다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시간의 편차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는 제 특성별 베이비시터의 이용 시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영리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베이비시터가 3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이용비용이 더 많았다.

<표 V-2-13> 월 평균 베이비시터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계(수)	T
전체	374.5	316.5	5	1,350	(183)	
회사성격						
비영리	230.7	210.6	5	1,000	(87)	-7.8**
영리	507.6	339.8	50	1,350	(96)	
연령						
3세 미만	461.7	353.7	16	1,350	(131)	-2.4 [†]
3세 이상	285.2	245.1	5	1,100	(126)	
모취업						
취업	468.9	339.9	5	1,350	(154)	6.4**
미취업	226.4	200.0	5	1,000	(9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한편 <표 V-2-14>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는 적정 요금으로는 4,000원과 5,000원이 각각 35.8%로 가장 많다. 아이돌보미가 적정 금액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7,000원은 10.6%에 불과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격차를 나타냈다.

<표 V-2-14> 아이돌보미 시간당 적당한 이용요금

단위: %(명)

구분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무응답	계(수)
비율	35.5	35.8	9.1	10.6	9.0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마. 아동의 기관 이용 특성 및 인식

다음의 <표 V-2-15>는 주이용 아동 중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 이용 여부에 관한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고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 중 37.5% 가량만이 기관을 이용하며 62.5% 정도는 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동이었다.

<표 V-2-15> 베이비시터 회사 이용 아동의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기관 미이용 아동		기관 이용 아동		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5	25.3	37.5	25.4	100.0(93)
본사	56.9	32.2	43.1	32.2	100.0(14)
가맹점	61.2	24.5	38.8	24.5	100.0(70)
단독	80.0	10.0	18.9	9.9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베이비시터 이용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부모 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V-2-16>과 같다.

<표 V-2-16> 베이비시터 이용 아동의 이용 기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학원	기타	없음	계(수)
전체	13.1	19.5	3.4	0.4	1.5	62.2	100.0(267)
회사성격							
비영리	13.1	15.4	3.1	0.8	2.3	65.4	100.0(130)
영리	13.1	23.4	3.6	-	0.7	59.1	100.0(137)
연령							
3세 미만	-	8.1	0.7	0.7	2.2	88.2	100.0(136)
3세 이상	26.9	31.5	6.2	-	.8	34.6	100.0(130)
모취업							
취업	13.1	18.8	3.8	0.6	1.3	62.5	100.0(160)
미취업	14.1	17.2	3.0	-	1.0	64.6	100.0(9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먼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대상 조사에서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전체의 62.2% 정도로 회사 대상 조사와 유사하게 나와, 많은 수의 베이비시터 이용 아동이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특성은 아동 연령에서 두드러져서, 88.2%에 달하는 3세 미만의 영아가 집에서 베이비시터의 돌봄을 받는 반면 3세 이상의 아동은 34.6%만 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용 기관을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이 전체의 19.5%로 가장 많아, 기관 이용 아동의 과반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치원이 뒤를 이어 전체 아동의 약 13.1% 정도로 보고되었다. 특히 보육시설은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은 경우에서 많이 보고되었으며, 비영리 기관을 통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보육시설 대신 집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의 이용 기관 유형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아동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취업모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자녀를 위한 대리양육 방법으로서 보육시설이 뿐 아니라 베이비시터가 그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영유아의 대리양육을 위한 육아지원기관인 보육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17>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 실시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chi^2(df)$
전체	67.9	32.1	100.0(274)	
회사성격				
비영리	68.6	31.4	100.0(140)	0.1(1)
영리	67.2	32.8	100.0(134)	
연령				
3세 미만	62.6	37.4	100.0(139)	4.2(1)*
3세 이상	74.2	25.8	100.0(132)	
모취업				
취업	66.5	33.5	100.0(164)	0.1(1)
미취업	68.0	32.0	100.0(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표 V-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부모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의 다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을 알고 있다고 답한 부모 186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45.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0%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이가 보육시설에 적응을 잘 못해서, 주변에 시간제 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보육시설을 믿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9.1%, 8.6%, 6.5% 정도로 보고되었다(표 V-2-18 참조).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는 응답과 집중적인 보육을 원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제 보육시설이 주변에 없다는 응답과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2-18>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제 보육시설 없음	아이의 부적응	보육시설 불신	집에서 돌보기 위하여	집중적 보육을 위하여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8.6	9.1	6.5	45.7	21.0	9.1	100.0(186)	
회사성격								
비영리	12.5	8.3	4.2	42.7	20.8	11.5	100.0(96)	6.8(5)
영리	4.4	10.0	8.9	48.9	21.1	6.7	100.0(90)	
연령								
3세 미만	2.3	6.9	4.6	52.9	25.3	8.0	100.0(87)	12.5(5)*
3세 이상	14.3	10.2	8.2	39.8	17.3	10.2	100.0(98)	
모취업								
취업	7.3	8.3	6.4	44.0	21.1	12.8	100.0(109)	4.3(5)
미취업	10.0	10.0	7.1	50.0	18.6	4.3	100.0(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3. 만족도

가. 업체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는 84%에 달하는 대다수의 부모가 만족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3.9%이며, 업체 관계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여, 파견사업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V-3-1 참조).

〈표 V-3-1〉 베이비시터 회사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수)
전체	42.1	42.9	13.9	1.1	100.0(273)
회사성격					
비영리	37.4	43.9	17.3	1.4	100.0(139)
영리	47.0	41.8	10.4	0.7	100.0(134)
연령					
3세 미만	43.5	42.0	13.0	1.4	100.0(138)
3세 이상	41.2	42.7	15.3	0.8	100.0(131)
모취업					
취업	45.7	39.5	13.0	1.9	100.0(163)
미취업	37.9	48.5	13.6	-	100.0(10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나.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외에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시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88.6%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 정도였다. 한편 불만족스럽다는 경우는 단 한가구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V-3-2 참조).

베이비시터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

도를 살펴본 결과, <표 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95.6%와 9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불만족 이하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표 V-3-2>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수)
전체	46.2	42.4	11.4	-	100.0(273)
회사성격					
비영리	45.3	43.2	11.5	-	100.0(139)
영리	47.0	41.8	11.2	-	100.0(134)
연령					
3세 미만	48.6	39.9	11.6	-	100.0(138)
3세 이상	44.3	44.3	11.5	-	100.0(131)
모취업					
취업	51.2	40.7	8.0	-	100.0(163)
미취업	39.8	44.7	15.5	-	100.0(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표 V-3-3>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문성				성실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계(수)
전체	36.4	59.2	4.4	100.0(272)	49.1	49.1	1.8	100.0(271)
회사성격								
비영리	34.8	61.6	3.6	100.0(138)	44.2	53.6	2.2	100.0(138)
영리	38.1	56.7	5.2	100.0(134)	54.1	44.4	1.5	100.0(133)
연령								
3세 미만	39.9	55.1	5.1	100.0(138)	50.4	47.4	2.2	100.0(137)
3세 이상	32.3	63.8	3.8	100.0(131)	48.5	50.0	1.5	100.0(130)
모취업								
취업	41.4	55.6	3.1	100.0(163)	54.3	45.1	0.6	100.0(163)
미취업	29.4	63.7	6.9	100.0(103)	42.2	53.9	3.9	100.0(1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한편 베이비시터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중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의 불만사항 접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V-3-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한 92개의 베이비시터 회사 중 2007년 1월 이후 불

만 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는 회사는 전체의 71.7% 정도로, 부모 보고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결과와는 상반되게 다수의 회사가 불만족한 이용자의 보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 가구의 불만 접수는 베이비시터 회사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불만사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경우는 가맹점으로서 응답한 회사의 82.6%에 달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접수된 불만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본사는 절반의 회사만이 불만사항을 접수한 바 있으며, 단독 베이비시터 회사의 경우는 22.2%만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²⁹⁾

〈표 V-3-4〉 베이비시터 이용자 불만 접수 여부: 2007

구분	단위: %(개소)		계(수)
	있었음	없었음	
전체	71.7	28.3	100.0(92)
본사	50.0	50.0	100.0(14)
가맹점	82.6	17.4	100.0(69)
단독	22.2	77.8	100.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임.

4. 정책시사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양육서비스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비교적 일관된 특징을 보인다.

우선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는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았다. 또한 이용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며, 이용 아동의 연령은 3세 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우 베이비시터 이용을 장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들 가구는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함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로서, 베이비시터 이용이 보육시설의 대안임이 틀림없다. 보육시설에 비해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양육서비스인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들 가구의 요구는 비교적 명쾌하다. 시설이

29) 단독회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회사 업무 중 시터 파견사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것이며, 집단에서의 양육이 아닌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보육을 원하는 것이다.

미취업모 또한 베이비시터를 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모의 경우 한 달에 평균 38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23만원 가량의 비교적 높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미취업모는 대부분 취미, 외출 등 사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영아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부모 중 반수 이상이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 실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베이비시터가 보육시설 일시 보육의 대안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베이비시터 비용, 자격 및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용 지원측면에서 베이비시터 이용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취업모, 영아와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부모가 지불하는 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이 동일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 비용을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베이비시터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대부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비교적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가구이다. 기존의 보육사업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모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공보육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음에는 분명하나, 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과 보육시설 이용 비용과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기존 보육사업에 많은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으나, 사실 이 같은 높은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 보다는 부모의 이용 편이성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부모의 베이비시터 선택 기준을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전문성이 아닌 일차적인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에 관한 정책은 베이비시터에 대한 훈련,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향후 베이비시터 관련 사업은 기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서비스로서의 역할보다는 보육시설에서의 소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과 일시 보육은 정부가 여러 지원과 지침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가

정에서의 일대일 대리양육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요구이기 때문일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일시보육은 보육교사와의 애착, 아동의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 일회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대한 소홀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일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시설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보육보다는 자신의 가정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를 선호할 수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과 휴일 보육 활성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야근, 출장 등 일시 보육조차 그 이용시간대를 벗어난 경우 아무리 시설에서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로의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VI. 외국의 베이비시터 제도 및 현황

1. 일본의 베이비시터 현황

가. 보육 현황

일본에서는 베이비호텔, 베이비시터 등이 대표적인 영리보육이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설치도 국가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설치하며 개인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인가보육시설은 2005년 12월 현재 22,243개소로 공립시설이 53.4%, 사립시설이 46.4%이다. 일본의 사립시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보육시설이다. 국가 기준의 인가보육시설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보육서비스와 미인가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존재한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법규로 별도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여 시설이나 가정보육 등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 밖의 보육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³⁰⁾ 이 목적은 대기아동 해소와 이들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이다. 이렇게 제도화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수준이 인가보육시설과는 차별화되고 있어서 보육료 수준은 높다(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 2006).

한편 인가외 시설로는 사업소 내 보육시설, 베이비호텔 등이 있다. 인가 외 보육시설은 7,176개소로 여기에서 약 17만 9천명의 아동이 보육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¹⁾ 인가 외 시설에는 사업소 내 보육시설 등 기타 시설 5,589개소와 베이비호텔 1,587개소가 있다.

또한 재택보육이 있다. 일본의 가정내 재택보육³²⁾은 보육모에 의한 가정보육, 베이비시터, 에스쿠(エスク) 및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인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보육³³⁾ 등이 있다.

30) 동경도가 0세 보육과 13시간 운영 의무화하고, 보육사 수와 면적 등은 보육원에 준하는 인정 보육소를 인정하고, 요코하마시 등에서는 보육실, 가정복지원 등을 시 요강에 의거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31) 1998년 1월 기준임.

32) 일본은 가정내 보육을 재택보육으로 표기하고 있음.

33) 일본에서는 공공성을 띤 저렴한 비용의 재택 및 방문보육사업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일반적으로 가정보육제도는 시설형의 집단보육 등과는 달리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형의 보육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서 요강, 규칙, 조례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보육제도는 1950년부터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주로 대도시 및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만들어져(上村康子·福川須美, 1998),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저연령 대기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1999년에는 소자녀화대책임시특별교부금의 대상사업으로써 국가차원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엔의 보조금을 받았다. 신엔젤플랜(2000~2004년)에 의하여 2000년도에는 대기아해소의 응급책으로서 국가에 따른 가정적 보육사업의 육성·조성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당초 보육소 입소 대기아의 해소책으로서 실시된 가정적 보육제도는 그 실시가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아동의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배려가 가능하고, 유연한 보육형태로서 저연령보육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단지 시설형 보육의 보완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연령보육의 하나의 형태로써 가정형보육의 존속을 표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福川須美, 2000). 2001년도에는 약 2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천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보육소의 보완적 역할로서 「보육마마」 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보육소와 연계하면서 사업을 행하는 시정촌(지방자치단체)을 지원하고 있다(日本 厚生省, 2000). 2007년 현재도 대기아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는 보육시설 등 기관에 등퇴원, 보호자 외출시, 자녀를 맡아 보호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자원봉사자적 성격이 강하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이용회원과 보육서비스 제공회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회원 등록이 필요하다. 평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원되며 비용은 시간당 800엔 정도로 저렴하다.

베이비시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시터회사를 통해서 공급된다.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155개 베이비시터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약 23,000명의 아동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와 에스쿠(エスク)임. 가정지원센터는 노동성에서 1994년에 인구 5만 이상인 시정촌에 설치하여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네트워크로 1997년 12월 현재 전국의 24개 시에 이러한 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에스쿠는 1973년 3월 보육시설 화재사고 이후 뜻있는 여성들이 시작한 비영리 보육자 네트워크로 1997년 현재 에스쿠는 37개 현에 조직되어 있음.

〈표 VI-1-1〉 일본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2006

단위: 개소, %

구분	시설수		아동	
	수	비율	수	비율
공영보육시설	12,352	54.8	1,067,121	50.2
민영보육시설	10,169	45.2	1,059,589	49.8
계	22,521	100.0	2,126,708	100.0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 編(2006). 보육연보.

나. 베이비시터 관련 법 규정

베이비시터 회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은 없다. 베이비시터 회사는 규모나 환경 및 설립자의 자격요건 등 설립요건을 규정한 법이 없고, 일반 회사나 기업체처럼 누구나 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규는 없다.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89조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베이비시터 기준 및 교육

1) 전국베이비시터협회의 베이비시터업 자주기준

베이비시터회사가 회원인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³⁴⁾에서는 회원의 기본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이 베이비시터업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회사는 청부에 의하여 재택 및 거택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을 명시하고 이들은 협회가 제시하는 자주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베이비시터에게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을 준수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업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서 제시하는 자주기준을 보면 정의, 자주기준의 성격, 베이비시터 역할 및 업무, 베이비시터의 자질, 보육의 기본적 사항, 유의사항, 베이비시터 업무기준, 안전사고 방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

34) 이 협회는 베이비시터회사들의 협회로 1989년에 설립되어 1993년에 자주기준을 제정하였음.

서는 내니 개념을 포괄하는 통칭으로 베이비시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주 기준의 성격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다.

〈표 VI-1-2〉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의 자주기준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사업은 보호자등의 위탁을 받아서 거택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임. - 베이비시터는 보호자등의 거택 등에서 직접 아동을 보육하는 자를 총칭함.
자주기준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기준은 최저한도만을 정하는 것임. -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함. - 사회적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내용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함.
베이비시터 역할 및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보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함. -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거택 외 장소에서도 보육을 실시함. 보육소 보내고 데려오기 및 베이비호텔에서의 보육 수탁 등임.
베이비시터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조건은 심신이 건강하고 아동보육에 열의가 있으며, 보육이론 및 실습에 대한 연수를 마친 자이며, 부모 및, 유치원교사 자격 또는 아동시설 등에서 아동 관련 업무 종사 유경험자가 바람직함. - 유의사항으로는 채용후 교육을 받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의사, 간호부, 조산부, 영양사 업무는 이들이 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 상태, 아동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베이비시터를 배치함.
보육의 기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건강 및 정서안정을 기하도록 환경을 조성함. - 아동의 성장발달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배려하여야 함. - 아동 생활 상황을 항상 배려하여 건강 안전을 도모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육시에는 부모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업무로 인하여 습득한 아동 및 가족 관련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형제자매 보육 시 아동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고, 거택 외 보육은 청결한 환경에서 보육하도록 함 - 위탁받은 시설형 보육시에는 집단보육의 취지를 잘 살리고, 아동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며, 시설기준은 무인가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기준을 참고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긴급조치를 체제를 갖춤.

(표 VI-1-2 계속)

구분	내용
베이비시터 업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의 범주는 유아보육, 영세아보육, 장애아보육 등임. - 업무형태는 보호자로부터 수탁을 받거나 베이비호텔 등으로부터 보육을 수탁 받음. - 이용자와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전에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실시주체명, 이용자명, 서비스 내용 및 요금, 서비스 실시주체의 면책사유, 계약사항 변경 등을 명확하게 함. • 요금을 적정하게 정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응하여 요금체계를 명시함. • 이용자 모집시 과대광고를 금지함.
안전사고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사고종류, 발생원인 등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아동 개개인의 발육, 생활 환경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아동의 심신상태 운동기능, 생활상태, 가정환경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며, 완구 및 도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환경정비가 필요함.

자료: 日本 社團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編(2005). 在宅保育の考え方と實際 ベビーシッター講座

2) 교육

베이비시터의 정해짐 교육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가) 베이비시터협회 교육 및 자격인정

베이비시터 협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베이비시터 「인정베이비시터」 제도사업을 실시하여 베이비시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베이비시터협회는 1994년부터 후생성 지원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신입연수회, 현임1 연수회, 경영자연수회 3종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신입연수 교육과 현임1 연수가 베이비시터 인정 자격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신입연수 과정은 13시간 동안 모두 10과목을 수강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임연수1인 연수Ⅱ 과정은 심층 학습으로, 7과목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연수과정은 1년에 각 6~7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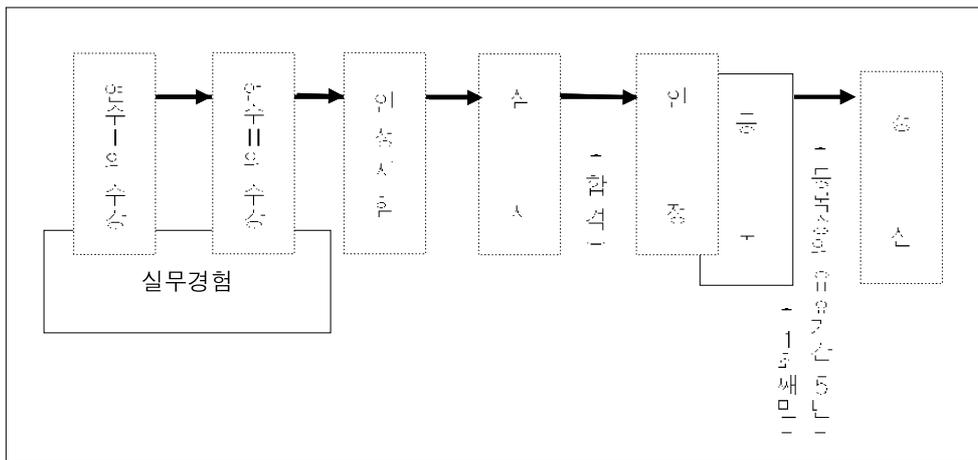
이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연수 교과내용을 보면, 아동가정복지, 베이비시터 사업, 베이비시터 마음가짐, 보육마인드, 아동발달, 아동의 건강관리, 사고·안전, 영

유아보육기술, 유아·아동보호기술,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과목을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표 VI-1-3〉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연수 I 교육과정: 3일 13시간

신임연수교육과정	현임I 연수
아동·가정 복지 베이비시터의 사명과 역할 I: 사업 베이비시터의 사명과 역할 II: 마음가짐 보육마인드 I 아동발달 I 아동의 건강관리 I 사고 안전 I 보육기술 I: 영아 보육기술 II: 유아 및 아동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토론 3일 13시간	베이비시터의 사명과 역할 III: 의식 보육마인드 II 아동발달 II 아동의 건강관리 II: 병후아 관리 사고 안전 II: 실습 보육기술 III I: 놀이 가족지원: 육아상담 토론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추이.



자료: URL: <http://netcircus.com/babysitter/guide3.htm>

[그림 VI-1-1] 일본 베이비시터 자격인정제도의 개요

나) 베이비시터 자격 인정

이 협회에서 2000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베이비시터 자격인정제도사업을 보면, 베이비시터로 자격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입연수과정을 수강한 연후에 3개월간 90시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고 현임연수과정을 거친 후 인정시험을 치고 인정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 인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5지선다형 40문항, 400자 이내 기술형으로 90분간 실시된다.

이렇게 등록된 인정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자격을 다시 갱신을 해야 한다.

교육실시 이래 2005년까지 연수 1 교육과정은 수강자가 6,566명, 연수 2는 2,97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5년만해도 468명이 신규교육을 받았으나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은 157명으로 2005년까지 시험을 통한 자격 합격자수는 1,000명이다.

〈표 VI-1-4〉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수험자수, 합격자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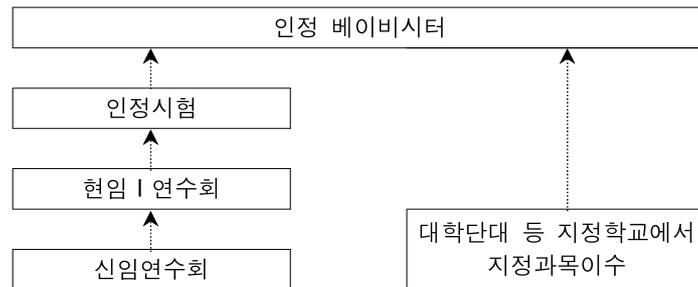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육 이수							
연수1	508	477	440	492	536	467	-
연수2	239	232	240	254	275	293	-
인정시험							
수험자수	258	177	178	156	173	186	170
합격자수	240	163	162	131	147	157	140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추이 및 내부자료.

또한 2005년부터 「인정베이비시터 지정교」 제도를 실시하여 2006년 현재 전국에 17개 대학을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취득 지정교로 지정하고 있다.³⁵⁾ 이는 협회가 지정한 대학에서 채택보육 등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 중 희망하면 희망자에게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2005년도까지 지정대학을 졸업하고 인정 베이비시터 자격을 받은 사람은 225명으로 집

35) 동경도 세다가야구에 위치한 昭和女子大學 등으로 이들 대학의 해당 정원은 1,375명이고, 적용시기가 2007년 이후 인 학교가 많아서 앞으로 자격 인정 희망자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계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지정대학 졸업자 중 자격 인증을 받기를 희망한 수가 51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VI-1-2]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취득 개요

한편 일본에서는 영리로 운영되는 베이비시터와는 별도로 보육 제도권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경보육실센터의 차일드시터(child sitter)이다.³⁶⁾ 동경보육실센터는 동경도에 소재한 보육 관련 단체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동경도 보육소를 회원으로 확보하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³⁷⁾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새벽과 저녁 늦게 베이비시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2회씩 교육을 실시하며, 2001년 9월 1일 현재 수료자는 총 237명이다.

차일드시터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을 포함하여 5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처음 3일은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2일은 2개소의 보육시설에서 4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교과목은 소자녀정책 및 보육행정, 자녀양육 지원시책, 목욕지도, 발달심리, 차일드시터 업무의 실제, 보험 및 계약, 사회보장론, 보육이론, 실습 등이다.

36) 차일드시터라는 명칭은 베이비시터 회사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무자격자인 베이비시터들이 영아 및 아동들을 돌보는 것을 우려하여 보육관련 유자격자들만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들 양성하면서 차별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

37) 일본에서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후생성이 인정하는 전문 학교를 졸업한 경우, 둘째는 후생성이 인정하는 학교인 단기대학에서 전공한 경우,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 시험을 통하여 보육교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국가시험은 1년에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음.

라. 베이비시터 및 회사 현황

1) 베이비시터 회사

베이비시터 회사의 수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VI-1-5>를 보면 2006년 현재 사업소의 규모는 155개소이다. 이 중 동경에 41개의 회사가 있으며 그 이외는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회사 중 81%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제 운영회사 중 83%가 연 회비를 받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1년에 10,000~150,000엔 정도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006년에 조사된 106개 회사의 회원수 분포를 보면 약 20%가 500명 이상이고 42.5%는 100명이상이어서 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는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회사는 규모는 작음을 알 수 있다. 동경에 위치한 회사의 회원규모가 그 이외 지역에 비하여 많다.

<표 VI-1-5>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회원 및 사업소의 연도별 추이

단위: 개소

년도	3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회원	58	69	97	112	128	134	133	131	125	119	116	113	109	110
총 사업소	58	70	98	113	142	146	150	145	143	139	150	151	150	155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추이.

<표 VI-1-6>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회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10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미만	500명 미만	500명 이상	무응답	계(수)
비율	42.5	17.0	7.5	11.3	19.8	1.9	100.0(106)
동경	28.1	12.5	9.4	15.6	31.3	3.1	100.0(32)
기타	48.6	18.9	6.8	9.5	14.9	1.4	100.0(74)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이들 베이비시터 업체의 규모는 회사마다 차이가 크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세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동경도가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규모가 크다. 이는 등록된 부모 회원수, 베이비시터 회원수, 1일 가동 시터수 및 연간 매상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VI-1-7>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수를 보아도 50명 이하가 49.5%, 51~100명이

22.5%, 101~200명이 10.8%이고 201명 이상은 17.1%이다. 동경보다 기타 지역이 등록 베이비시터의 수가 적다.

한편 1일 가동하는 베이비시터 수는 10명 미만이 54.1%이고, 20명 미만이 24.3%, 30명 미만 10.8%로 50명 이상은 8.1%에 불과하다. 이 역시 동경도에서 규모가 크다.

〈표 VI-1-7〉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 등록 베이비시터 수

단위: %(개소)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명	501명~	계
전국	49.5	22.5	10.8	5.4	4.5	7.2	100.0(111)
동경	303	182	212	152	30	121	100.0(33)
기타	577	244	64	13	51	51	100.0(78)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표 VI-1-8〉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 1일 평균 가동 베이비시터 수

단위: %(명)

구분	10명 미만	20명 미만	30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계(수)
전국	54.1	24.3	10.8	2.7	8.1	100.0(106)
동경	42.4	21.2	12.1	6.1	18.2	100.0(33)
기타	59.0	25.6	10.3	1.3	3.8	100.0(78)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베이비시터 회사의 연간 보육관련 매상고는 연 2500만 이하가 36.0%이고 2501만 이상 5000만이 18.0%, 5001만~1억엔이 17.1%의 순이다. 여기에는 베이비시터 사업 이외에 탁아서비스 매상이 포함된다.

〈표 VI-1-9〉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육관련 매상고(파견과 탁아서비스)

단위: 엔, %(개소)

구분	~2500만	~5000만	~1억	~3억	~5억	~10억	10억~	무응답	계(수)
전체	36.0	18.0	17.1	16.2	3.6	4.5	1.8	2.7	100.0(111)
동경	24.2	15.2	15.2	24.3	6.1	12.1	3.0	-	100.0(33)
기타	41.0	19.2	17.9	12.8	2.6	1.3	1.3	3.8	100.0(78)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2) 베이비시터 현황

가) 자격 유무

일본에서 베이비시터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을 두고 있지 않다. 베이비시터도 스스로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회사대표들은 가능한 한 간호사,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등 유자격자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회에서 실시하는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조사에 의하면 이들 회사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베이비시터들은 대개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으며, 40대가 32.1%로 가장 많고 50대가 27.9%이며, 40세 이상이 60% 이다. 또한 베이비시터의 67.9%가 기혼자이고,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 2006).

〈표 VI-1-10〉 일본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유무

단위: %(명)

구분	자격 있음							자격 없음	계(수)
	협회인정 자격	보육사	유치원 교사	조산사	보건사	간호사	소계		
전국									
비율	1.9	29.5	28.9	0.3	0.2	1.2	51.8	48.2	100.0
(수)	(442)	(6772)	(6635)	(58)	(41)	(275)	(11907)	(11058)	(22,965)
동경									
비율	1.6	23.3	27.1	0.2	0.2	1.1	34.6	65.4	100.0
(수)	(222)	(3186)	(3707)	(33)	(29)	(150)	(4726)	(8933)	(13659)
기타									
비율	2.4	38.5	31.5	0.3	0.1	1.3	77.2	22.8	100.0
(수)	(220)	(3586)	(2928)	(25)	(12)	(125)	(7181)	(2125)	(9306)

주: 유자격은 중복 응답임

자료: 社団法人 全国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이비시터-實態調査 報告書.

나) 근로조건

이들 회사들의 방문형 베이비시터들의 신분은 정사원이 있다는 회사는 25%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외는 시간제 등 비정규 직원을 쓴다.

이러하듯 대부분의 방문형 베이비시터가 정식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노동화재보험은 44.9%로 비교적 높고, 그 이외는 건강보험에

21%, 연금보험 17.3%, 고용보험 26.5%이다. 동경도에서 오히려 방문형 베이비시터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다.

베이비시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육아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표 VI-1-11〉 일본 방문형 베이비시터 고용형태

단위: %(개소)

	정사원	시간제	계약사원	등록사원	업무위탁	기타	무응답	계(수)
전국	24.5	50.0	13.3	35.7	5.1	4.1	163	100.0(98)
동경	25.9	48.1	14.8	40.7	11.1	3.7	74	100.0(27)
기타	23.9	50.7	12.7	33.8	2.8	4.2	197	100.0(71)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표 VI-1-12〉 일본 방문형 시터의 사회보험

단위: %(개소)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동화재보험	고용보험	기타	불명, 무응답	계(수)
전국	21.4	17.3	44.9	26.5	2.0	43.9	100.0(98)
동경	22.2	11.1	40.7	22.2	-	48.1	100.0(27)
기타	21.1	19.7	46.5	28.2	2.8	42.3	10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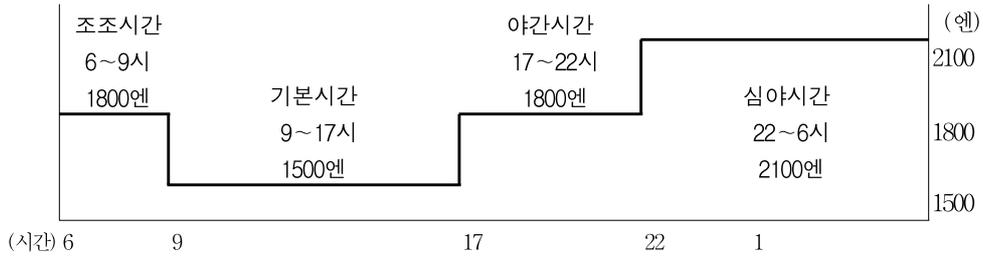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마. 베이비시터 비용 및 정부 지원

1)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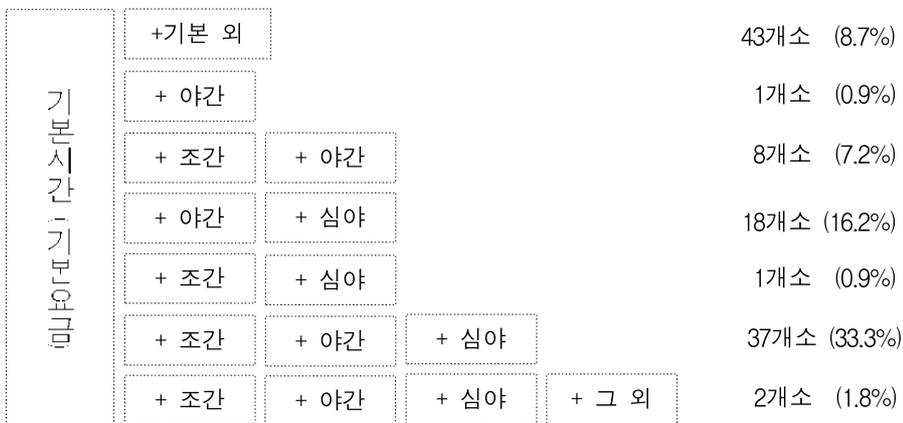
이들 베이비시터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의 회사가 산육기 서비스, 병후아(病後兒)보육을 제공하고 있고, 그 이외 서비스는 시설 운영이나 시설 위탁운영의 시설형 보육, 병아(病兒)보육, 장애아보육, 교육지도 등이다. 베이비시터 사업으로는 베이비시터회사 중 93.7%가 산육기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79.3%가 병후 아동 보육을 실시하고, 64.9%가 장애아 베이비시터 사업도 한다.

베이비시터 이용 서비스는 가정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서비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파견하는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아동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방문하는 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이비시터-實態調査 報告書.

[그림 VI-1-3] 일본 시간대별 베이비시터 요금 설정 1



주: 기본시간(기본요금)만 설정하고 있는 회사 1개소는 제외하였음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이비시터-實態調査 報告書.

[그림 VI-1-4] 일본 시간대별 베이비시터 요금 설정 2

보육시간은 보통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이고 최초 보육시간을 2~3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하여 여기에 시간당 추가된 시간 당 비용을 추가하여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베이비시터 서비스료는 보통시간은 1,500엔이고 조조와 야간은 1,800엔,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은 2,100엔이다. 이외에 실비의 교통비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료는 베이비시터 회사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VI-1-13〉 일본 베이비시터 회사의 이용요금 사례

단위: 엔

구분		요금(1인)		1인 추가당
입회비		21,000		
연회비		10,500		
기본요금 (시간당)	0세~6세	9:00~17:00	1785	+892
		17:00~20:00	2100	
		20:00~9:00	2310	
	소학년	9:00~17:00	1890	+446
목욕시킴 경우		1050		
베이비시터 인터뷰		1995~2520		
예약비	당일	2100		
	당일이전	1050		
취소	당일	요금의 80%		
	당일이전	요금의 50%		
교통비		실비		

자료: URL: <http://www.familysupport.co.jp/>

또한 95.5%인 대부분의 베이비시터 회사는 아동수가 2명 이상이면 가산금을 추가하고 있다. 가산금은 65.1%가 500~1,000엔을 설정하고, 32.1%는 500엔 미만, 극히 일부는 1,000엔 이상을 가산금으로 추가하여 받는다.

한편 베이비시터 회사와 베이비시터간에 서비스료에 대한 배분비율은 대체로 3:7의 비율로 하고 있다.

2) 정부의 관여 및 지원

베이비시터 비용은 시간당 1,500~2,000엔인데, 베이비시터 비용은 정부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그러나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협회에 소속된 회사들의 베이비시터 자격인정제도 사업, 연수사업,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³⁸⁾ 이 중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 쌍생아 가정 육아지원사업, 산전산후 육아지원사업이 있다.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은 협정을 채

38) 이외 연구사업, 광고출판사업, 계몽출판사업, 회원간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함.

결한 사업주나 대상보육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회 1,500원, 또는 2,000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하는 제도이다. 쌍생아 가정 육아지원사업은 쌍생아 이상 다태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일에 9,000엔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산전산후 육아지원사업은 산전산후 휴가 기간 동안 임신부건강검진, 산욕기 건강 문제 등으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500엔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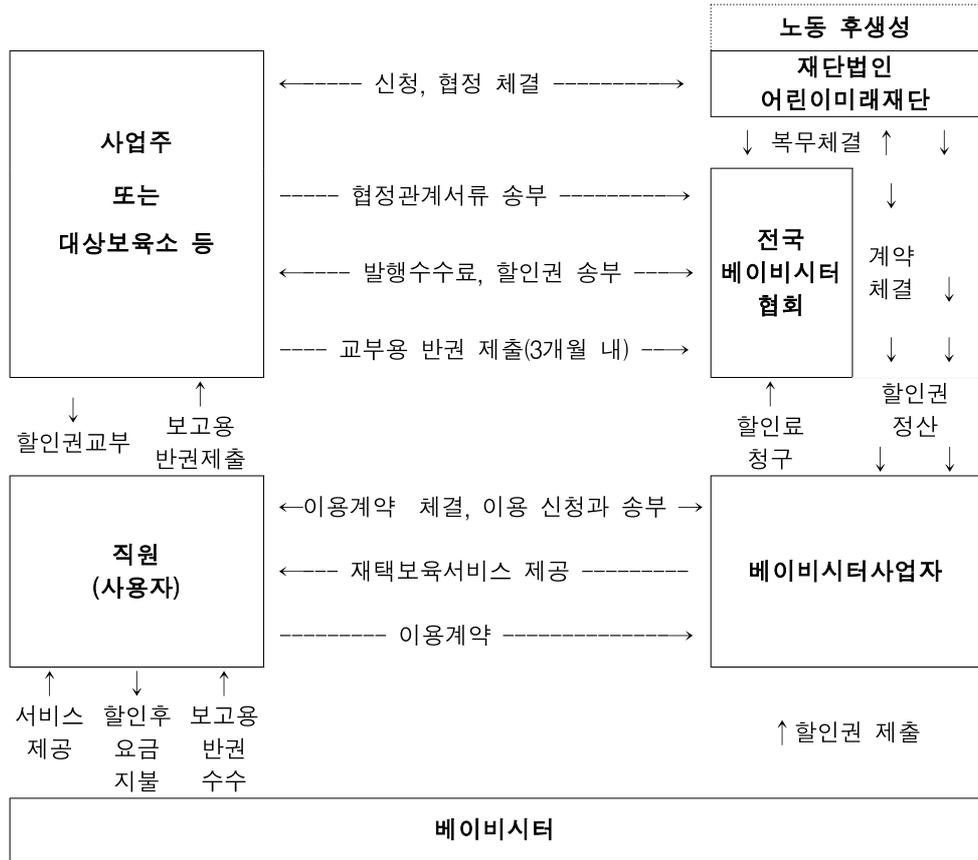
이러한 재택보육사업은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종업원의 취로와 관련된 재택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인권을 발급하여 이를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택보육 지원 대상에 베이비시터, 가정지원센터(FSC), 가정보육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가) 흐름도

베이비시터 비용에 대한 지원 흐름도는 <그림 VI-1-5>와 같다.

이를 보면 먼저 후생노동성에서 재단법인인 어린이미래재단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어린이미래재단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다음에 어린이미래재단은 사업주 또는 해당 보육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베이비시터협회는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기업에 1매당 1,500엔짜리 재택보육 할인권을 수수료 150엔을 받고 납입하는 한편, 베이비시터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베이비시터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할인권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보육소는 종업원에게 재택보육 할인권을 교부하고, 할인권을 받은 종업원은 베이비시터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재택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종업원은 재택보육서비스를 이용한 후 할인권을 제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할인권은 협회를 통하여 재단법인 어린이미래재단이 지원금으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1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 이외에 보육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연장보육 때문으로, 연장보육을 하는 보육사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자료: 日本 財團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베이비시터-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그림 VI-1-5] 일본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사업 흐름도

나) 협정 대상 및 규모

현재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 조성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1,200매부터 최대 4,800매를 지원한다. 보육소는 개소당 1,200매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주는 1일 1회 1,500엔이고, 연장보육종사자는 2,000엔으로 차등을 둔다.

〈표 VI-1-14〉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발행 한도

구분	발행 한도	할인액 한도
직원수 1,000명 이하 사업주	1,200매	사업주 1,500엔
직원수 1,001~2,000명 이하 사업주	2,400매	연장보육종사자 2,000엔
직원수 2,001~3,000명 이하 사업주	3,600매	
직원수 3,001명 이상 사업주	4,800매	
대상보육소 1개소 당	1,200매	

자료: 社団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년의 추이

이러한 사업은 1994년에 시작한 이래 계속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06년 통계로는 전국에서 1,016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성금액은 1억 448이다. 발행된 할인가가 모두 사용되지는 않는데, 발행 대비 정산 비율은 2006년 66.5% 정도이다.

그런데 대상보육소는 1, 2개소에 불과하여 그 실적도 미미한 수준으로, 2005년의 경우 230매의 할인가가 발행되어 168매가 사용되었다.

한편, 2000년부터 실시한 쌍생아가정육아지원사업은 2005년 기준으로 신청건수 2638건, 정산건수 1761건으로 조성금액은 1655만엔 정도이며, 2004년부터 실시한 산전산후육아지원사업은 신청건수 172건, 정산건수 103건으로 조성금액은 15만 4000엔 수준이다.

〈표 VI-1-15〉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이용한 육아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 건, 천엔

연도	협정기업수	발행매수	정산매수	조성금액
육아지원사업				
1994	131	8,085	4,268	6,402
1996	621	100,893	70,476	105,714
1998	954	156,760	111,355	167,032
2000	761	105,971	74,256	111,384
2001	769 (2)	111,200 (105)	77,826 (94)	116,739 (188)
2002	832 (2)	117,477 (170)	80,369 (148)	120,553 (296)
2003	829 (1)	120,076 (185)	82,284 (173)	123,426 (346)
2004	880 (2)	127,269 (235)	89,982 (208)	134,973 (416)
2005	974 (1)	139,652 (230)	96,538 (168)	144,807 (336)
2006	1,016	151,898	1,000,843	-

(표 계속)

연도	협정기업수	발행매수	정산매수	조성금액
쌍생아육아지원				
1999		452	315	2,765
2000		479	335	2,951
2001		623	447	3,919
2002		652	480	4,214
2004		2,418	1,593	14,818
2005		2,638	1,761	16,542
2006		2,742	1,804	-
산전산후육아지원				
2004		148	109	163
2005		172	103	155
2006		172	116	-

주: ()는 연장보육 대상분으로 별도임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추이 및 2006년 사업보고서.

바. 베이비시터 이용

1) 이용자 특성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보면 2005년도 조사 결과 75% 이상이 모가 취업한 상태이고, 직종은 회사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 VI-1-16〉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직업

구분	회사원	자영업	회사역	공무원	자유업	시간제	기타	무직	무응답	계(수)
부	45.3	17.5	13.7	10.2	3.2	-	9.8	-	0.4	100.0(285)
모	31.1	10	5.5	6.2	5.2	6.9	11.8	21.8	1.4	100.0(289)

자료: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ベビーシッター now.

2) 이용형태 및 이유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형태는 46.8%는 아이돌보기를 위하여 시터를 이용하고 33.6%는 보육시설과 병행하여 이용하며, 17.6%는 유치원과 병행하여 이용하며, 7.1%는 탁아소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1-17 참조).

〈표 VI-1-17〉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형태

단위: %(명)

구분	베이비시터 단독	보육시설 병행	유치원 병행	탁아소 병행	기타	계(수)
비율	46.9	33.6	17.6	7.1	8.8	100.0(289)

자료: 社団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ベビーシッター now.

한편으로 베이비시터 이용 용도는 일이 있을 때가 7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충전 32.2%, 관혼상제, 모임 등 참석 18.3%, 타 자녀 보살피기 13.9%, 보호자 감기 12.5%의 순서이다.

또한 베이비시터를 이용해서 좋은 점으로는 융통성 있는 시간 이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조조, 야간에 이용이 가능해서 21.0%이고, 자녀 감기 시 이용,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퇴원에 이용, 등 이용의 평의성이 주된 장점으로 들었다. 이외 베이비시터의 질이 좋아서 48.5%, 아이가 좋아해서 35.6%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VI-1-18〉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용도 및 좋은 점(복수응답)

단위: %

이용 용도		좋은 점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일이 있을 때	73.2	융통성 있는 시간 이용	69.8
재충전	32.2	베이비시터 질이 좋아서	48.5
관혼상제, 모임 등 참석	18.3	아이가 좋아해서	35.6
타 자녀 보살피기	13.9	자녀 감기 시 이용	22.4
보호자 출산, 감기	12.5	조조, 야간 이용이 편해서	21.0
대리양육자의 출산, 감기	2.4	가정 육아방침을 존중해서	19.3
가족 간호 개호	3.4	유치원, 보육시설 데리고 다니기	15.9
여행	2.0	일시	11.2
기타	6.1	보육내용	9.5

자료: 社団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베비시터 now.

〈표 VI-1-19〉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계(수)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의뢰할 수 있어서	68.8
아침과 야간 이용이 가능	40.3
토요일과 휴일 이용 가능	35.9
보육시설, 유치원 데리고 다니기	33.2
저학년 혼자 집에 두지 않아도 되므로	26.1
인가시설 입소가 어려워서	23.7
아이가 아플 때 이용 가능	20.0
장애아 이용 가능	12.9
일시적 아용 가능	9.8
출산 직후 이용 가능	3.4
집단보육 대신 개별보육을 희망할 때	1.4
기타	6.4
(수)	(295)

자료: 社団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ベビーシッター now.

3) 만족도 및 불만요인

베이비시터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서, 2005년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48.5%, 대체로 만족 39.0% 보통 11.9%로 대체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이용자의 80%가 다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20〉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 등	계(수)
비율	39.0	48.5	11.9	0.6	100.0(295)

자료: 社団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베비시터 now.

이용시 불만인 점에 대해서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이 비싸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고, 동일인이 오지 않고 계속 사람이 바뀌는 점 26.8%, 베이비시터의 질이 일정하지 않음 25.4%, 베이비시터 선택시 정보의 부족 19.0%, 급하게 베이비시터 이용을 의뢰하기 어려운 점 14.9%, 부재 중 집안을 맡기기가 불안 9.8%, 사고 시 보장 불안 7.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21〉 일본 부모의 베이비시터 이용 불만사항

단위: %(명)

구분	계(수)
비용이 비쌌	33.9
사람이 바뀌는 점	26.8
베이비시터의 질이 일정하지 않음	25.4
선택시 정보의 부족	19.0
급하게 베이비시터 이용을 의뢰하기 어려운 점	14.9
부재 중 집안을 맡기기가 불안	9.8
사고 시 보장 불안	7.8
긴급시 의료기관 연락 및 대응 불안	4.7
(수)	(295)

자료: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ベビーシッター now.

2. 미국의 베이비시터 현황

가. 미국의 보육 현황

미국은 보육에서 민간부분 및 영리보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공식부분에서 기관보육(Day Care Center)의 약 1/3, 그리고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이 대부분 영리로 운영되며, 비공식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내 보육은 친인척 등의 혈연 관계에 의한 영리/비영리 보육과 베이비시터(babysitter), 내니(nanny) 등에 의한 영리보육 서비스를 들 수 있다(서문희 외, 2001).

이 중 미국의 베이비시터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며, 주로 10대 청소년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그 외 인력의 경우 용돈 등의 가외수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내니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 베이비시터 보다는 형식적으로 취업이 된 상태로서, 보통 정기적으로 특정 가정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내니의 경우 베이비시터에 비해 좀 더 형식적인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입주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므로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길고, 급여 수준 또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베이비시터로 불리는 직군은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 보다는 내니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VI-2-1>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미국 센서스 자료 보고이다.

〈표 VI-2-1〉 미국 육아지원 유형별 이용 아동수(2003)

단위: 천명

구분	아동수	부모	형제	조부모	조부모의 친인척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유아원
전체	18,037	3,137	452	4,039	1,293	2,285	1,132	1,122
모의 혼인상태								
기혼-유배우자	13,373	2,610	255	2,579	855	1,573	802	848
사별/별거/이혼	1,613	154	99	407	121	290	158	123
미혼	3,051	373	98	1,052	317	423	172	151
모의 취업상태								
미취업	8,215	223	171	1,258	440	261	109	369
전일	5,963	1,525	116	1,696	531	1,552	720	455
시간제	3,042	1,385	136	920	287	446	269	228
자영업	818	-	30	164	36	26	35	70
연령								
만 1세 미만	1,861	49	38	324	99	37	19	-
만 1-2세	3,162	96	63	524	180	64	51	53
만 3-4세	3,191	78	70	410	161	159	40	316
구분	아동수	헤드 스타트	비혈연 (아동가정 보육)	비혈연 (보육자 가정 보육)	보호자 없음	비정기적 이용	기타 ¹⁾	2개 이상의 유형 이용
전체	18,037	147	676	749	33	6,771	4,905	2,751
모의 혼인상태								
기혼-유배우자	13,373	55	548	498	21	5,405	3,500	1,962
사별/별거/이혼	1,613	42	46	65	6	529	552	272
미혼	3,051	50	83	187	6	837	854	517
모의 취업상태								
미취업	8,215	36	192	121	15	5,708	1,382	552
전일	5,963	71	292	413	12	328	2,472	1,253
시간제	3,042	28	159	172	7	276	887	870
자영업	818	12	34	43	-	459	166	76
연령								
만 1세 미만	1,861	(X)	50	12	(X)	1,377	37	119
만 1-2세	3,162	2	90	46	(X)	2,225	119	207
만 3-4세	3,191	34	51	63	15	2,106	1,225	227

주: (X): 관련 자료 없음.

1) 학교, 각종 센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취학한 5세 이상 아동의 경우 여기에 해당됨.

자료: U.S. Census Bureau,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2001 Panel, Wave 4
(<http://www.census.gov/prod/2005pubs/p70-101.pdf>)

이 보고에는 육아지원의 유형별 이용 아동수를 각 아동과 가정의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혼인상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아동들은 부모 이외의 대리양육에 있어서는 조부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조부모 외의 친인척, 가정보육, 비혈연자인 베이비시터/내니, 유아원 등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취학전 연령인 만 4세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의 형태는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5배 이상 상회하는 규모로, 어머니의 취업이 절반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히 흥미로운 수치이다. 또한 부모 외 대리양육의 경우 조부모 다음으로는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으로 보고되고 있어, 4세 이하의 양육은 대체로 혈연 관계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기타 혈연 관계의 대리양육자 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지원의 유형은 유아원과 베이비시터 및 내니와 같은 비혈연 개별양육자이다. 특히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아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만 3~4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보육 중심의 육아지원이 주류를 이루며, 보육의 여러 유형 중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 보다는 베이비시터와 내니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유아의 대리양육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위의 <표 VI-2-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가장 많은 양육의 유형으로 보고된 것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조합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이는 Capizzano와 Adams(2000)의 보고와도 일관된다. 이들에 의하면 1997년 현재 한 가지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61%, 두 가지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30%, 세 가지 이상의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8%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보육을 이용할 경우 베이비시터/내니가 보조적인 보육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서 베이비시터/내니가 주된 보육제공자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보육기능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이나 유아원 같은 기관과 베이비시터/내니 9%, 가정보육과 베이비시터/내니 6%, 기관, 가정보육 및 베이비시터/내니 5%, 친척과 베이비시터/내니 2%로 총 22%가 베이비시터/내니를 공적 보육 비공식 보육과 함께 보조 또는 공동 보육 제공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을 이용을

하는 40% 중에서 22%이므로 전체로 환산하면 약 8%가 된다. 다시 말해서 취업모의 5세 미만 아동 중 6%는 주된 보육자로, 그리고 8% 정도는 보조적인 보육제공자로 베이비시터/내니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표 VI-2-2 참조).

〈표 VI-2-2〉 두 가지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 4세 이하 취업모 자녀의 서비스 종합(2000)
단위: %(명)

구분	0~2세아	3~4세아	0~4세아
공식부문			
기관+기관	0	8	4
기관+가정보육	15	12	13
기관+기관+가정보육	0	5	3
계	15	25	20
공식부문+비공식부문			
기관+친척	22	27	24
기관+베이비시터/내니	7	11	9
가정보육+친척	11	4	7
가정보육+베이비시터/내니	9	3	6
기관+친척	4	8	6
기관+가정보육+베이비시터/내니	4	6	5
기관+가정보육+친척	1	4	2
기타	3	7	5
계	61	70	65
비공식부문			
친척+베이비시터/내니	4	1	2
친척(집안)+친척(집밖)	20	6	13
계	24	7	15
총계	100(708)	100(912)	100(1,620)

주: 두 가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약 40%에 해당됨.

자료: Capizzano, J. & Adams, G., "The Number of Child Care Arrangement Used by Children Under Five: Variation Across States", Number B-12 in Series, New Federalism: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Urban Institute, 2000.
http://neofederalism.urban.org/html/series_b/b12/b12.html.

나. 베이비시터/내니 관련 법·규정

1) 가정내 보육종사자 관련 법·제도적 측면

베이비시터/내니와 관련된 법 및 제도는 가정에 고용되는 근로자, 관련 세제, 아동 학대 및 방임 금지, 근로자 최저 연령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가) 가정내 고용(Domestic services)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베이비시터/내니 관련 법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고용자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무의 수당, 연령 등과 관련하여 1938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초기에 공장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시작된 이법은 지난 1974년부터 가정내 고용에 대한 규정을 두기 시작하여 최저임금을 제시하였다.³⁹⁾ 그러나 비정규 베이비시터/내니나 동반자적인 고용자는 아이보기 서비스(Babysitting services)라는 이름으로 가정내 고용(Domestic services)과 별도로 정의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며 돌보는 아이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서비스로 정의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공정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조항과는 예외적으로 24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⁴⁰⁾ 특히 아이보기 서비스(Babysitting services) 중에서도 아이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이며 시간제인 경우를 일시 형태(Casual basis)로 구분·정의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조항으로 두어, 베이비시터업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를 일차적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Dept. of Labor, 2001). 단,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도록 되어있다.

나) 관련 세제

한편 가정내에서 베이비시터/내니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관련 세금을 직접 정부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베이비시터/내니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정은 자발적으로 가정내 고용주세(Domestic Employer Tax)라는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⁴¹⁾ 소위 가구 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은 가정내 대리양육자의 경우 베이비시터보다는 근로시간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내니에 해당하므로 소위 내니세

39) 1974년도 당시 최초 최저임금은 시간당 2.30불이었으며,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에 시간당 5.15불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최근(2007년 5월 27일)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2009년 여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5불로 바뀔 예정임.

40) URL: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12feb20041500/edocket.access.gpo.gov/cfr_2004/ulqtr/pdf/29cfr552.1.pdf

41) 베이비시터 이외에 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과출부, 정원사 요리사 등이 있음.

(Nanny Tax)로 불리기도 한다.⁴²⁾

가정내 고용주세(Domestic Employer Tax)에는 소위 FICA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와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연방정부의 실직세(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로 크게 구분되며, 주에 따라 주정부가 규정하는 고용보험(State Unemployment Insurance: SUI)⁴³⁾이 징수된다.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의 경우 연간 1,400불 이상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내니를 고용하는 가정에서 지불하여야 하며, 실직세는 한 분기 동안 월급이 1,000불 이상인 내니를 고용한 가정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한편 내니 또는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자도 각 주 정부에 의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연방 및 주정부 고용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욕주의 경우 분기별로 소득이 가정에서 고용된 후 500불 이상 수입이 생긴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750불,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뉴저지, 조지아, 메사추세츠 등에서는 1,000불 이상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가정 내 아동보호

미국 내에서 베이비시터/내니와 관련된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법적 근거로는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법규를 들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법(Federal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에 의거하여 아동에 대한 성인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주에서는 어린 아동의 경우⁴⁴⁾ 상시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혼자서 있을 수 있는 나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정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산하의 아동보호정보센터(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성인의 보호를 요하는 연령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일리노이주의 경우 주정부 아동·가족지원과에서 정한 혼자 있는 아동을 위한 준비(Preparing Children To Stay Alone, 2001)에 근거하여 아동과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이 성인의 보

42) URL:<http://www.nannytaxusa.com/>

43) 주에 따라서 State Disability Insurance(SDI) 또는 State Unemployment Tax Act(SUTA)로 불리기도 함.

44) 아동학대 및 사후관리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임.

호 없이 있는 경우를 낮은 수준의 아동 방임으로 간주한다. 메릴랜드의 경우 주정부의 청소년지원과에 의해 8세 미만의 아동은 13세 이상인 성인 또는 청소년 없이 혼자서 집이나 건물, 차량, 그 밖의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코네티컷과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및 미네소타의 몇몇 카운티에서는 지침 또는 권고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⁴⁵⁾

라) 근로자 최저 연령

먼저 아동의 근로와 관련해서는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농업 이외의 직종에서 14세를 최저 노동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베이비시터나 가정집에서의 허드렛일, 신문배달 등에는 고용될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이라면 학교시간, 오전 7시 이전 및 오후 7시 이후, 일주일에 3시간 주당 18시간 이상 베이비시터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방학 동안에는 밤 9시 이후 및 주당 4시간 이상의 근로가 금지된다.

다. 베이비시터 자격기준 및 교육

1) 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

비정규 베이비시터의 연령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아동을 혼자 집에 두면 안 되는 연령이 10세까지이므로 부모를 대신하는 베이비시터는 최소한 10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에서는 최소한 12세는 되어야 책임을 지고 아기를 돌볼 수 있다고 12세 이상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베이비시터는 자녀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베이비시터의 연령, 성숙도, 베이비시터로서의 경험, 자녀의 연령과 수, 경험, 자녀의 특별한 욕구에 부응 등을 고려하여 시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가 결정하게 되고, 베이비시터 자신도 스스로의 여러 가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가이드 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니에 대해서도 정해진 자격조건은 없고, 사업체마다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내니 관련 업체가 제시한 조건들을 종합해서 보면 연령은 18세 또는 19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 미국 시민이거

45) URL:<http://www.nccic.org/poptopics/homealone.html>

나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⁶⁾ 이외에 업체에 따라서 응급구조자격, 무사고운전면허를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은 신원보증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소한 친인척 이외의 3명의 참고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학대여부 등 범죄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를 요구한다. 신원조회는 대부분 이를 위한 별도의 전문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hild Care Referral and Resources Agencies: CCR&R)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공식 및 비공식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있다(Mogan *et al.* 2001).

2) 베이비시터의 교육

가정내 보육제공자에 대한 교육은 대학, 여름학교, 사회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된다. 비정규 및 청소년 대상의 단순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은 초단기적으로 실시되고, 전문적인 내니에 대한 교육과정은 보다 길고 전문적이다. 몇몇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에서는 11~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2~3일 동안 7~8시간 동안 실시되며 피교육자는 대개 5~10명을 기준으로 반을 구성한다. 교육비용은 책자를 포함하여 30불이다. 교육 내용은 면접,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및 게임 선택, 부상 예방 및 비상사태에 대비, 응급구조, 아동 기본 보호 및 수유, 잠재우기, 자신의 안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I-2-3〉 매사추세츠 대학 부설 4-H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구분	내용	초빙강사
개요	베이비시터의 책임 등	
안전	가정내 안전, 화재예방 등	소방 및 경찰 인력
응급구조	응급구조, 실습, 장난감 안전성 등	응급구조사, 의료인
아동 보호·발달	발달 특성별 행위, 수유, 기저귀 갈기, 옷 입히기, 아기 안기 등 실습	유치원교사, 보육제공자
영양 및 놀이	수유, 놀이, 영양스낵 등	교사, 사서, 영양관련자
기타	역할놀이, 졸업 등	부모, 교사 등

자료: URL:<http://www.nncc.org/Choose.Quality.Care/babysit0.html>

46) URL:<http://www.americannantjobsrarch.com>

이외 유사하게 매사추세츠 대학 부설 4-H 청소년 및 가족발달 베이비시터 프로그램은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베이비시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베이비시터의 책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좋은 베이비시터가 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베이비시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처리하도록 자신감을 개발하며 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구성된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계의 실무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내니를 위한 교육은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교육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한 예로 1984년에 설립된 내니 및 가정교사 훈련기관(Nanny and Governess Training & Placement)에서는 1주일의 실습을 포함한 3개월간의 내니 및 가정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육과정은 아동 성장 및 행동발달, 아동보호, 문화, 전문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동보호 영역에서는 영양, 건강, 위생, 안전이 강조되고, 문화 영역에서 언어 음악 예술 자연 창조적 놀이 및 과학을 배우며 전문성 영역에서 개인 인간관계 및 가족역학 등을 배운다. 1주일간의 영영아 및 영아를 위한 보육실습을 한다.

〈표 VI-2-4〉 미국 내니 및 가정교사 3개월 교육내용의 예

구분	내용
아동성장 행동발달	영아발달, 2세미만아 발달, 유아발달, 인간관계
아동보호	영양, 질병, 소아의과학, 아동학대, 언어발달, 청각, 시각, 임신전후의 변화, 화재예방 및 안전, 방법안전, 비상보호, 물놀이 안전, 보트 안전, 여행시 안전, 말타기 안전, 독극물 안전, 아동 및 성인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자격
문화	언어발달, 도서관 이용, 아동과 음악, 예술과 아동, 식물 기르기, 박물관, 동물원
전문성	인간관계, 계약협상, 책임, 역할과 임무, 세제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 URL: <http://www.nanny.org>.

3) 베이비시터의 안전 및 지침

베이비시터나 내니가 아동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며 비상

사태 및 안전사고에 책임있게 대처하여 사고발생 시에도 그 피해를 최대로 줄이며, 자신도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업체 및 경찰 등에서 업무 및 안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적십자 등 관련 단체에서는 베이비시터 핸드북도 발간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상 청소년이 베이비시터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대학부설 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VI-3-5>은 한 베이비시터 사업체가 제시한 베이비시터 지침이다. 이에 의하면 베이비시터는 아동 부모의 연락처 및 비상시 이웃 및 친인척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경찰, 소방서, 앰블런스 서비스, 해독 센터 등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연락처도 확인하여야 한다. 베이비시터는 아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신과 관련해서 금지되고 허용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VI-2-5> 미국 베이비시터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주요 이름 및 연락처 확인	부모 연락처, 2명의 친구·친척 및 이웃, 소방시설, 경찰서, 해독센터, 소아과 의사, 응급조치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
베이비시터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관련 사항 먹이고 마실 수 있는 음식, 잠자는 시간 및 잠 재우기,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 및 활동, 자녀의 TV 시청시간 및 프로그램, 행동 문제에 대한 희망하는 처리 방안, 아동 관련 기구 이용 방법, - 베이비시터 관련 사항 금지된 활동(친구와 함께 있기 등), TV 및 전화 사용,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규칙,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방법 - 안전 주의 관련 사항 낮선 사람에게 문 열어 주지 않기, 모든 출구 및 비상구 확인, 화재 및 방법 경보장치·응급 구조 장비·랜턴 및 퓨즈박스 확인, 주소 및 오는 방법 확인
응급의료 동의 및 관련 정보	베이비시터 중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모 동의서, 아동 이름 출생 연월일, 의료보험 및 번호, 의사 성명 및 전화번호, 주요 병력 및 알레르기, 만성질병 등

자료: URL: <http://www.needbabysitter.com>; <http://www.worldkids.net>

또한 청소년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시터 자신도 부모에게도 사전에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사항 및 예정된 귀가시간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의 부모에게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경우에 주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는 무엇보다

다도 베이비시터를 잘 선택하여야 하고 아동 돌보는 지침 및 전화나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알려두고 안전을 책임지고 집안에 위험한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정해진 시간에 귀가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으로 경찰에서도 보육시, 외출시, 비상시, 보육완료시로 나누어서 안전수칙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라. 베이비시터/내니 이용비용 및 정부의 지원

1) 베이비시터/내니 이용비용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 및 내니와 같은 가정내 보육의 이용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75년의 경우 가장 저렴한 보육의 형태였던 반면에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가장 다른 대리양육에 비해서 가장 비싼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표 V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세 미만아를 대상으로 파악한 보육비용은 1993년 당시 주당 보육비용이 친인척 42불, 가정보육 57불, 시설보육 64불인데 비하여 가정내 보육은 68불로 가장 비싸다.⁴⁷⁾

<표 VI-2-6> 미국 가구의 보육 유형별 주당 이용비용

구분	단위: 달러			
	1975년	1985년	1990년	1993년
가정보육	38	43	45	57
시설보육	46	44	53	64
친인척 보육	29	35	31	42
기타 가정내 보육	18	49	51	68

자료: Brown-Lyons, Robertson & Layzer(2001), Casper(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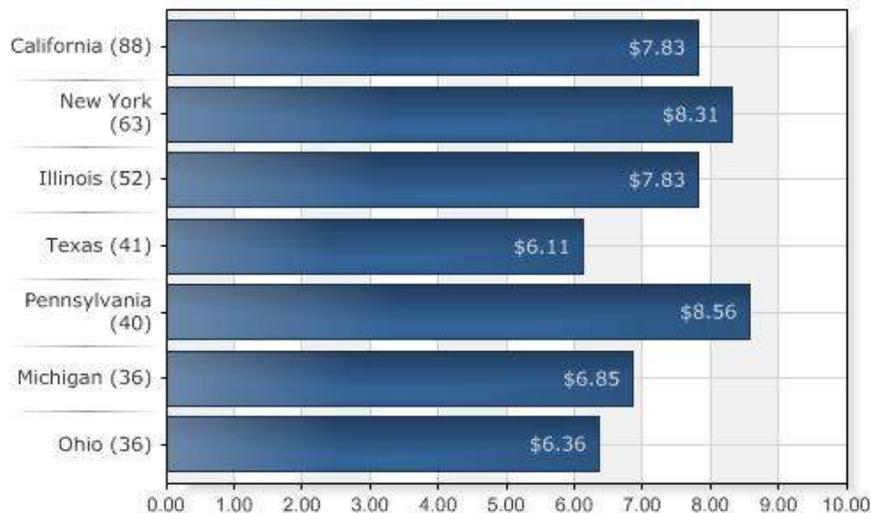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Casper(1995)는 조사 응답자의 53%에 해당하는 베이비시터 또는 내니가 2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는 반면 친인척은 37%, 가정보육 31%, 시설보육 19%이라는 점을 들어, 아동 각각의 보육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제도권 보육에 비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저렴한 대리양육의 유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 외에 가정내 보육비용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하여

47)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기초보고서에서 보육 유형별 비용에 대한 분석은 1993년까지만 이루어져 이후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보육시간의 증가함으로써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베이비시터/내니 이용의 경우 그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공식 보육인력이 임금을 제대로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 또는 내니의 이용비용에 관하여는 전국 단위의 보고서 또는 학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몇몇 베이비시터/내니 관련 업체의 자체적인 보고가 주류를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한 베이비시터/내니가 담당하는 아동수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임금의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주로 비정기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는 베이비시터의 특성상, 최저임금의 적용 없이 시간당으로 급여가 정해지게 된다. 주로 베이비시터의 연령, 경력,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직종별 평균 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CostHelper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시간당 임금이 5불에서 15불까지 큰 편차로 벌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⁴⁸⁾



출처: URL:http://www.payscale.com/embed/US/Job=Babysitter/Hourly_Rate/by_State

[그림 VI-2-1] 미국 주요 6개주의 베이비시터 시간당 평균 임금

48) URL:<http://www.costhelper.com/cost/child/babysitter.html>

또 다른 임금 정보 제공 업체인 PayScale의 2007년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그림 V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주요 6개주의 베이비시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적게는 6.11불에서 많게는 8.56불 수준으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한 것으로 이다.

한편 내니의 경우는 베이비시터보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더 장시간이며, 담당하는 아동 또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 수준 또한 내니의 자격 및 아동의 연령,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급여의 편차는 있으나, 비정규 베이비시터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 베이비시터와 내니의 온라인 파견업체⁴⁹⁾의 최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니의 경우 주당 최저 400불에서 시작하여 많은 주당 1,000불 이상 받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내니 비용의 편차는 지역의 생활수준, 지역 내 내니의 수급, 내니의 자격요건 등에 기인한 것이다.⁵⁰⁾

내니의 이용비용에 대하여 최근 조사된 또 다른 결과를 보면, 입주 내니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9시간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32불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출퇴근 내니는 입주 내니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5시간 정도 짧은 44시간이 반면 주급은 약 590불 정도로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어, 입주 내니에 비해 처우가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2-7〉 내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수입

단위: 시간, 달러

구분	입주 내니		출퇴근 내니	
	근로시간	주급	근로시간	주급
전체	49	532	44	590
Atlanta	46	475	45	575
Chicago	46	419	45	590
New York City	55	660	48	777
Philadelphia	55	725	46	648
Washington	51	600	41	740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한편, 내니를 대상으로 추가 보육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내니는 돌보는 아동이 추가되어 계약된 조건보다 보육대상 아동수가

49) URL: <http://www.BabyCenter.com>

50) URL: <http://www.babycenter.com/refcap/baby/babychildcare/6045.html>

늘어난 경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출퇴근을 하는 내니의 부모의 사정에 따라 24시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또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표 VI-2-8〉 내니 보육 비용 추가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수)
돌보는 아동 추가 시	85.0	15.0	100.0(617)
출퇴근 내니의 보육시간 연장 시	85.0	15.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2) 베이비시터/내니 이용비용의 정부 지원

미국은 가정내 비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 공급자와의 계약방식에 의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육이용권(Voucher) 등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방식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서 친인척 보육 및 시터에 의한 비공식보육도 부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Pieck et al. 1999). 예를 들어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로드아일랜드⁵¹⁾와 미시건⁵²⁾ 등의 주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친인척과 비혈연, 즉 베이비시터/내니로 정하고 있다. 단,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보육의 공급자인 친인척과 베이비시터 및 내니 등은 각 주정부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의 보육자로서 등록(Registration)을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보육료 지원을 위한 베이비시터/내니 등록 시 주요 내용은 해당 주(또는 지원 주체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지 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신고한 베이비시터/내니가 주별로 명시된 최저 아동수보다 적은 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마. 내니의 활동 및 고용 특성

미국 베이비시터 및 내니가 각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의 계약 및 실제 서비스와 관련한 제 특성을 미국 내니의 비영리 연합회(International Nanny

51) URL:<http://www.dhs.ri.gov/dhs/famchild/dcspgm.htm>

52) URL: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Association; INA)의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니의 활동 특성

먼저 내니의 경력을 살펴보면 1년 정도의 짧은 경력을 소유한 경우부터 5년 이상의 비교적 긴 경력을 소유한 경우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VI-2-9 참조).

〈표 VI-2-9〉 내니의 활동 기간

단위: %(명)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계(수)
비율	16.0	21.0	22.0	14.0	27.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한편 내니의 근무 형태를 직업의 특성상 출퇴근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72%에 해당하는 내니가 출퇴근을 하는 반면 보육 대상인 아동의 집에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VI-2-10 참조).

〈표 VI-2-10〉 내니의 활동 유형

단위: %(명)

구분	입주형	출퇴근형	계(수)
비율	28.0	72.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2) 취업 및 계약방법

미국 내니의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각 가정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흔한 경로는 각종 영리·비영리 고용기관을 통해서 취업해본 경험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인 추천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가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또는 지역 신문 등 개별적인 취업 채널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VI-2-11 참조).

〈표 VI-2-11〉 내니의 취업 경로(복수응답)

단위: %

구분	고용기관	개인적 추천	인터넷	신문	기타
비율	65.0	47.0	42.0	35.0	5.0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베이비시터보다는 일반적으로 상근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내니의 경우 고용 계약 시 서면계약은 내니의 취업 및 계약 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내니의 계약 조건을 가정과 내니 쌍방이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내니에게 초기 계약당시에 논의 없이 부과되는 가외 업무(가사노동, 취침, 여행 등)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니의 직업만족도와 직업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⁵³⁾ 그러나 내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자인 각 가정의 부모에게 서면계약을 요구한 경우는 반수를 상회하는 62%에 정도였으며,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38%에 달하였다(표 VI-2-12 참조).

〈표 VI-2-12〉 내니 고용 계약 시 서명계약 요구 비율

단위: %(명)

구분	요구	요구하지 않음	계(수)
비율	62.0	38.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3) 계약기간

내니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한 가정에 고용되는 기간이 장기적인 것을 대부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의 <표 VI-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고용을 선호하는 내니는 87% 정도였다. 또한 매년 임시계약을 하는 것과 근무하는 가정이 바뀌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 또한 매우 낮아서, 대부분의 내니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근무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URL:<http://www.enannysource.com/nanny/contract.aspx>

〈표 VI-2-13〉 내니의 선호하는 계약 형태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장기 고용 선호 비율	87.0	13.0	100.0(617)
매해 임시계약 선호 여부	12.0	88.0	100.0(617)
매해 근무 가정 변경 선호 여부	9.0	91.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이상과 같이 가정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니는 고정적인 근무지로서의 가정을 원하는 것과는 달리 각 가정에서 한 내니를 고용하는 최대 기간의 경우 3년 이하가 반수를 차지하였으며, 5년 이상 근무한 내니는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14〉 가정에서 특정 내니를 고용한 최대 기간

단위: %(명)

구분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무응답	계(수)
비율	27.0	23.0	25.0	12.0	3.0	10.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4) 담당 아동 수

내니가 담당하는 보육 아동의 수는 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2명으로 밝혀졌으며, 1명 또는 3명으로 보고된 경우 또한 각각 22%와 20%이었다. 즉, 내니 한명이 여러 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그 수는 3명 이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I-2-15 참조). 이 같은 결과는 내니를 대상으로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담당할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5% 가량의 내니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표 VI-2-16>의 결과와도 비교적 일관된다.

〈표 VI-2-15〉 내니 1인당 보육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계(수)
비율	22.0	47.0	20.0	5.0	1.0	5.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표 VI-2-16〉 두 명 이상 아동 대상의 보육 제공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비율	65.0	35.0	100.0(617)

자료: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3. 캐나다의 베이비시터 현황

가. 교육 및 보육 현황

캐나다의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하여 OECD에 제출한 2003년 국가보고서(Background Report)에 의하면 캐나다 ECEC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VI-3-1>와 같이 분류된다. 크게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나뉘어 지며, 보육은 주정부(province)와 준주정부(territory)의 법률 하에서 규제되는 공식적 보육과 부모에 의해 이용되고 지도·감독 받는 비공식적인 보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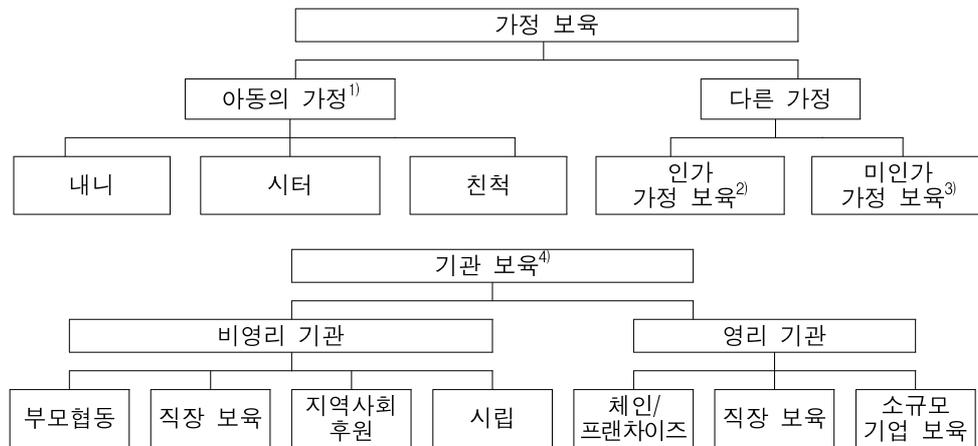
보육을 중심으로 재분류해 보자면 가정보육과 기관보육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보육에는 아동의 가정에서 내니, 시터, 친척 등이 아동을 돌보는 보육과 인가받은 가정 또는 미인가 가정 등 아동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정부에 의해 인가받지 않은 보육으로 지도감독 역시 해당 부서가 아닌 부모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공식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는 아니다. 후자인 다른 가정에서의 보육은 인가 가정 보육인 경우 인가기관에 의하여 지도 감독을 받고 미인가 가정 보육의 경우 부모에 의하여 지도 감독을 받게 되나 이 역시 기관 보육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공식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기관보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리기관인 체인/프랜차이즈를 이용한 보육, 직장 보육, 소규모 보육 센터가 있고, 영리가 목적이 아닌 부모협동, 직장 보육, 지역사회 후원, 시립 보육 등의 비영리 기관인 보육 센터가 있다. 기관에서 하는 보육은 모두 정부 인가를 받은 센터로서 공식 교육을 받은 보육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가정 보육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I-3-1〉 캐나다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구분		유형
교육	주정부/준주정부 교육체계내	- 5세를 위한 유치원, 5세 이하를 위한 유치원 - 퀘벡에서의 학령기 아동 보육
	주정부/준주정부 법률 하에서 규제되는 공식적 보육	- 보육센터 - 보육 학교(nursery school), 유치원(preschool) - 규제된 가정 보육 - 앨버타와 퀘벡 제외한 지방에서의 학령기 아동 보육 - 몇몇 지방에서 원주민 보육, 원주민 Head Start 프로그램
보 육	부모에 의해 규제되는 비공식적 보육	- 친척에 의한 가정 보육 - 보호 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보육 - 아동의 집에서 아동의 보육을 위해 성인을 고용 - nursery school, preschool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여름 캠프 프로그램 - child minding(예: 영어 프랑스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가 영 어교육 프로그램 등 이용시 아이를 돌보아주는 것 등)

자료: Gillian Doherty, Martha Friendly & Jane Beach (2003).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anadian Background Report.



- 주: 1) 미인가 보육으로 부모가 지도·감독, 공식 교육과정 이수 또는 미이수, 입주 또는 출퇴근
- 2) 정부 인가 또는 계약기관이 지도·감독, 공식 교육과정 이수 또는 미이수
- 3) 부모가 지도·감독, 보육제공자는 친척 가능, 공식교육과정 이수 또는 미이수
- 4) 정부 인가로 공식 교육과정 이수자 배치, 직장보육센터는 비영리 또는 영리로 운영

자료: URL: <http://www.cfc-efc.ca/images/nats.jpg>

〔그림 VI-3-1〕 캐나다 보육 서비스 유형

2003년 캐나다 보육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부모 보호 외 다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3.5%로, 이는 1995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11.8%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부모에 의한 보호를 제외한 보육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니와 시터 등 비친척에 의한 다른 가정에서의 보육으로 30.3%이며, 비친척에 의한 아동 가정에서의 보육 비율까지 합치면 내니와 시터에 의한 보육은 40%에 다다른다. 이에 대해 공식 보육 기관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은 27.9%이다.

〈표 VI-3-2〉 캐나다 6개월~5세까지 아동 보육 현황

단위: %

구분	부모보호 포함		부모보호 불포함	
	1994-1995	2002-2003	1994-1995	2002-2003
부모 보호	58.3	46.5	-	-
비친척에 의한 다른 가정에서의 보육	17.9	16.2	42.9	30.3
친척에 의한 다른 가정에서의 보육	5.8	8.4	14.0	15.7
비친척에 의한 아동 가정에서의 보육	5.8	4.1	14.0	7.7
친척에 의한 아동 가정에서의 보육	3.3	7.4	8.0	13.7
데이케어 센터	8.1	14.9	19.5	27.9
기타	0.7	2.6	1.6	4.8

자료: Tracey Bushnik(2006). Child Care in Canada.

나. 관련 법률 및 규제

1) 베이비시터 개념

일반적으로 가정내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 보육을 하는 것을 베이비시팅이라고 하나, 종사하는 자인 베이비시터, 내니, 오페어 등 명칭에 대해서는 국제내니협회(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통용된다. 이는 앞에서 제사한 바 있다.

베이비시터는 부모가 집에 없는 동안 어린 아동을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보호를 제공한다. 어떠한 특별한 훈련이나 배경, 전공 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의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적인 응급치료 기술 등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베이비시터의 가장 주된 기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고, 아동에게 간식이나 미리 준비된 식사를 주고, 아동을 깨끗하게 하여 잠들게

하는 역할을 가진다. 한편 내니는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인력으로 고용된 자로, 근무는 일반적으로 보육 및 보육과 관련된 가사 일로 제한된다. 어떠한 공식적이고 정해져 있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풍부한 실제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개 감독받지는 않는다. 즉 베이비시터와 내니는 업무의 정규성 혹은 시간제의 성격으로 구분된다기 보다는 경력과 자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내니에게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2) 근로 조건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베이비시팅 종사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각 주마다 노동법 및 하위 가정내 근로자에 대한 법률 하에서 종사자 및 고용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최소 임금, 휴일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노동법은 임시적이고 단기로 이행되는 베이비시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베이비시터와 이용하는 부모가 상호 임금 등을 합의하여 계약하게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들이 생성되는 구속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어 일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된다.

온타리오주 고용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경우를 보면, 사업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정내 근로자에 대해서 그들이 반일제 근무이건 전일제 근무이건 그리고 입주하거나 출퇴근하거나 모두 법 아래 같은 권리를 가짐을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따금씩의 단기적으로 아동을 보육하는 시터에 대해서는 가정내 근로자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개인 가정에서 일하기 위하여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타리오주 고용법(ESA)에서 가정내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일신상의 긴급 휴가, 비상사태 선언 휴가, 동일한 근로에 대한 동일한 급여, 가족 의료 휴가, 근로 시간 보장(예: 근로의 최대 시간, 일 또는 주/격주의 휴일, 최소 임금, 초과 근무 급여, 임신과 산후 휴가, 공휴일, 급여의 정기 지급, 퇴직금, 해고 통지, 휴가이다(Ontario, 2000).

온타리오주의 최소 임금은 시간당 8.00불⁵⁴⁾(2007. 2. 1. 기준)이며, 18세 이하로서 주 28시간을 넘지 않거나 학교 휴일동안 일하는 학생은 최소 7.50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계산시 고용주가 제공한 숙식비를 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나 부과할 수 있는 숙식비에는 제한이 있다. 고용된 가정내 근로자가 숙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4) 캐나다의 베이비시터 현황에서의 불은 캐나다 불을 의미함.

숙식비가 임금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캐나다 연금 플랜(Canada Pension Plan: CPP),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수입세(Income Tax) 등의 공제를 적용하기 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방 값은 1주에 31.70불이며, 각 끼니의 식사비는 2.55불로서 1주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53.55불을 넘을 수 없어 1주간 숙식에 드는 최대의 비용은 \$85.25이다.

〈표 VI-3-3〉 캐나다 주정부별 최저임금

단위: 불/시간당

지역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WT
최소임금	\$7.00	\$8.00	\$8.00	\$7.25	\$7.00	\$8.25
지역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Yukon
최소임금	\$7.60	\$8.00	\$7.50	\$8.00	\$7.95	\$8.37

자료: URL: <http://canadaonline.about.com>

초과 근무는 1주 44시간 시간 이후부터 적용되며, 급여는 최소한 정규 급여의 1.5배가 되어야 한다. 휴가는 고용된 지 12개월 이후부터 연간 최소 2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3) 가정내 보육의 허용 및 규제

각 주는 또한 그룹 크기가 보육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한계선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보호 제공자의 집에서 그룹의 아동을 돌보는 규제되지 않은 형태의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인가받지 않은 가정 내 보육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인원수는 다음의 <표 VI-3-4>와 같다.

주정부에 따라 2명에서 8명까지 허용 인원 아동수가 다르며, 보육제공자의 아동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Nova Scotia주의 경우 보육제공자의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하여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6명까지 가능하며, 모든 아동이 취학 연령이면 8명까지도 가능하다(표 VI-3-4 참조).

최대한으로 보육할 수 있는 아동 수 외에 베이비시팅과 관련하여 다른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거나 지도 감독하고 있는 주정부나 법률은 없다. 연방정부의 입

주 보호제공자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하에서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 캐나다에 온 개인들은 특정한 교육이나 경험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보육에 대한 외부적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정도의 비친척에 의한 가정 보육 이용 아동을 포함하여 60%에 이르는 상당한 수의 아동들이 비공식적 보육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OECD 검토단은 비공식 보육의 질과 관련한 문제를 캐나다 보육과 교육의 주요 이슈로 지적한 바 있다(OECD, 2003).

〈표 VI-3-4〉 캐나다 주요 주의 가정내 보육(비공식 보육) 최대 허용 인원수

주	아동수
Alberta	6명: 2살 이하의 최대 3명까지 허용됨. 보육제공자의 12세이하 아동 포함
British Columbia	2명: 보육제공자 관련 아동 미포함
New Brunswick	5명: 0~12세까지 혼합 연령일 경우 4명: 모든 아동이 2~4세일 경우 8명: 모든 아동이 취학 연령일 경우 - 영아 2명 초과하는 허용되지 않음. 보육제공자의 12세 이하 아동을 포함
manitoba	4명: 2살 하 아동 2명 초과 불허
Newfoundland	4명: 7세 이하 보육제공자의 아동 포함
North West Territories	4명: 보육제공자의 12세까지 아동 포함
Nova Scotia	6명: 보육제공자의 취학전 아동을 포함하여 혼합연령 구성시임. 만일 모든 아동이 취학 연령이면 보육제공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8명도 가능
Ontario	5명: 보육제공자의 아동 미포함
Prince Edward Island	5명: 모든 아동이 2살 미만이면 3명까지, 2명 이상이 2살보다 어리지 않을 경우 5명, 보육제공자의 취학전 아동 포함
Quebec	6명: 보육제공자의 아동 포함
Saskatchewan	8명: 보육제공자의 13세 이하 아동을 포함. 8명 중에 5명은 6세 이하이고, 이 5명 중에 30개월 이하는 2명으로 제한
Yukon	3명: 보육제공자의 아동 불포함

자료: URL:<http://www.nanniesandsitters.com>

다. 자격기준 및 교육

1) 자격기준

베이비시터를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은 없다. 다만 New Brunswick

주의 가족 서비스 법(Family Service Act) 등에 의하면 12세 이하 아동은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보호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12세를 넘어서 베이비시터를 할 수 있다. 또한 12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16세 이하이면 학교장의 허가 없이 수업 시간동안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표 VI-3-5〉 내니의 자격 조건

-
- 3년 이상의 보육 경험
 -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중등 과정 후의 교육/훈련 코스 이수
 - 구급처치와 CPR(심폐기능소생), 요리 기술
 - 스키와 수영 능력은 배치에 도움 됨
-

자료: URL:<http://www.canada-nanny.com>

〈표 VI-3-5〉는 한 내니 소개 업체에서 자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내니와 베이비시터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인터뷰 등을 통하여 경험과 위험시 대처 능력 및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채용하게 되는데, 내니와 베이비시터가 소개 업체에 등록시 하게 되는 공통적인 인터뷰 내용은 교육 수준, 경력 사항, 운전면허증 유무, 구급처치 및 CRP(심폐기능소생) 능력, 흡연 유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VI-3-6〉과 같다.

〈표 VI-3-6〉 내니 및 베이비시터 등록시 인터뷰 질문

구분	내용
내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준 - 몇 세의 아동을 돌보아 보았는가? -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아동을 돌보아 보았는가? - 쌍둥이를 돌보아 본 적이 있는가?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장애아)을 돌보는 것에 흥미가 있는가?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장애아)을 돌보아 본 적이 있는가? - 운전면허증이 있는가? - 애완견과 같이 있을 수 있는가? - 구사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있는가? -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 입주 보호제공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가? - 구급처치 훈련을 받았는가? - CPR(심폐기능소생) 훈련을 받았는가?

(표 계속)

베이비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보육제공자로 일한지 얼마나 되었는가? - 보육제공자로서 특별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가장 최근에는 어디에서 일하였고, 왜 그만 두었는가? - 예전에 일했었던 가정과 연락하고 있는가? -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모두를 돌보아 보았는가? - 흡연을 하는가? - CPR 자격이 있는가? - (비상시에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이 있는가? - 훈육을 어떻게 하는가? - 아동들과 어떤 종류의 놀이를 하는가? - 응급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아라. 예를 들어, 만일 나의 자녀가 클라 이언트의 자녀를 때려서 피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는 나의 자 녀가 울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자료: URL: <http://www.canadiannanny.ca>
 URL: <http://www.mybabysitter.com>

2) 교육 과정

캐나다 내 내니와 고용주, 내니와 기관을 위한 교량역할을 하는 비영리조직인 캐 나다 내니 연합(Canadian Nanny Association)은 내니에게 교육과 정보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니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내니 교육 과정(Nanny Training Courses), 응급처치와 CPR 과정 및 다른 전문적인 내니 훈련 코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VI-3-7〉 캐나다 내니 훈련 학교 과정

과 정	시 간
사전 내니 기술 워크숍	6시간(반일 x 2회)
사후 내니 기술 강화 워크숍	6시간
응급조치와 CPR 코스	12시간(전일 x 2회)
전문적 내니 자격 코스(CPN)	60시간(반일 x 2달 또는 전일 x 2주)
입주 보호제공자 훈련 코스(LCTC)	6개월 교육 및 1개월 실습
도우미 근로자 과정	전일 x 2개월 또는 반일 x 4개월
캐나다 풍습과 생활양식 워크숍	3시간
전문적인 내니가 되는 방법 워크숍	3시간

자료: 캐나다 내니 연합(www.nanny1.org)

캐나다 내니 훈련 학교(Canadian Nanny Training School: CNTS)는 캐나다 내니 연합과 제휴한 비영리의 내니 훈련 시설로서, 능숙함(Proficiency), 직업정신(Professionalism), 우수성(Excellence)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내니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과정과 시간은 다음의 <표 VI-3-7>과 같다.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캐나다 안전위원회(Canada Safety Council)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베이비시터 양성 코스(Babysitters’ Training Course)⁵⁵⁾를 통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베이비시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베이비시터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2세~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안되었고, 10시간 교육 과정으로 과정 이수 후 종합 시험을 치러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시터의 권리와 책임감, 아동 발달과 행동상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표 VI-3-8>과 같다.

<표 VI-3-8> 캐나다 안전위원회의 베이비시터 양성 코스

- 권리와 책임감	- 위급 상황 대처하기
- 아동 발달과 행동상 문제	- 아픈 아동
- 아동을 위한 보호	- 게임과 놀이 활동
- 영양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장애아)
- 안전과 기초적인 응급 처치	

자료: 캐나다 안전위원회(Canada Safety Council). URL://www.safety-council.org

또한 캐나다에서 오페어로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제공자들을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주 보호제공자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 LCP)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 제정된 외국 고용인 이주 프로그램(Foreign Domestic Movement: FDM)이 1992년에 대체된 것이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격 조건⁵⁶⁾으로는 19세 이상으로서 고등 교육을 받고 6개월간 직업 훈련에

55) School Boards, Child Care Center, City Recreation Departments, Native Bands, Community Safety Councils, Canadian Forces Bases, Student Employment Center and Community Lighthouse Programs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56) 이 외에 에이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가족이 아닌 세 명 이상의 신원 보증인
-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 시험에서의 합격
- 입주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고 다루는 규칙을 따를 의지
- 일년 계약 이행. 정착예치금을 지불해야 함.
- 금연자이거나 금연 선서를 해야 함.

참여하거나 관련 직종에서 12개월 이상 유급경험이 있는 영어/프랑스어 구사 가능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수료 후에는 캐나다 시민권이 제공된다.⁵⁷⁾ 입주 제공 보호자에게는 대부분의 주에서 공정한 근로 조건과 처우와 관련된 합법적인 권리들이 주어진다.⁵⁸⁾ 보호제공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이 오피어 소개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⁵⁹⁾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1,295불+GST(1년 기준)이며,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관에게 지불하는 비용, 정부에게 지불하는 비용, 잡비로 나누어진다.

<표 VI-3-9> 입주 보호제공자 프로그램시 내니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구분	비용
기관에게 지불	- 정착예치금과 배치 수수료 (경력과 머무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정부에게 지불	- 신청 수수료(현재 150불이나 변동 가능)
	- 건강진단비(약 125불)
	- 캐나다 사증료 (단수 입국 비자: 75.00불, 복수 입국 비자: 150불)
잡비	- 첫 3개월 의료보험(약 328불 정도)
	- 교통비
	- 수화물 보험

자료: URL: <http://www.needananny.ca>

3) 지침 및 체크 리스트

베이비시터와 내니에게 제공되는 교육 과정의 구비 외에도 가정 내 보육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토론토 시는 시와 경찰 웹사이트를 통하여 베이비시팅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응급 구조의 상황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 특히 베이비시터에 의한 보육시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토 응급의료서비스 센터에서는 ‘베이비시터 체크리스트와 지시서’를 만들어 베이비시터가 아동을 보육하고 있던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911에 신고하고 <표 VI-3-10>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들을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토론토 경찰은 베이비시터들을 대상으로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 일주일 기준으로 35시간의 아동 보육과, 이와 관련된 경한 정도의 가사 일을 이행해야 함.

57) 퀘벡 주는 입주 보호제공자에 대하여 다른 주보다 덜 엄격한 자격기준이 적용됨.

58) 매주에 따르는 휴일, 유급 휴가, 유급 법정 휴일, 초과근무 수당, 최소 임금, 동등한 임금과 각종 혜택, 고용이 취소 될 때의 사전통보 등과 같은 법적 보호, 숙식에 대해 고용주가 부과 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

59) 보호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 절차와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데, ‘베이비시터란’, ‘베이비시터 준비하기’, ‘알아야 할 정보’, 안전을 위하여 ‘보육 중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VI-3-10〉 베이비시터 체크리스트

주소 _____	
가장 근접해 있는 교차로의 이름 _____	
성(The family name) _____	아동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나이 _____
휴대폰 번호 _____	취침 시각 _____
부모의 위치 _____	약 먹는 시간, 약, 처방 _____
부모가 집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 _____	과거 건강 상태 _____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_____	혈액형 _____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연락처 _____	약물 알레르기 _____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주소 _____	음식 알레르기 _____
	기타 _____

자료: URL:<http://www.toronto.ca/ems>

라. 비용 및 정부의 지원

내니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주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최소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 주에 따라 최소 시간당 최소 7불에서 8.37불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고용법에 의하여 최저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업체 및 연령, 경력에 따라 다양한데, 시간당 5불 내외이다. 반면 소개 업체를 통하여 내니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멤버쉽 형태로 3개월, 6개월, 1년, 평생 등 기간을 정해두고 멤버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의 등록 비용은 1년 기준으로 40~60불 정도로 다양하다.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사회 부조 예산은 내니 및 베이비시터에 의한 가정내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제공되며, 아동 수당 역시 비공식 보육 서비스 이용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경우 보육 보조금 법(Child Care Subsidy Act)에 의하여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이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육, 친척이나 조부모 및 아동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 다른 사람에 의한 아동 가정에서의 보육 등 미인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도 보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보육 보조금은 연령과 아동 보호 유형, 추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다른데, 내니 및 베이비시터를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시 연령에 따라 하루에 7.35~19.70불, 한 달에 147.00~394.00불을 지원받을 수 있다(표 VI-3-11 참조).

〈표 VI-3-11〉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동 보육 보조금 비율

단위: 캐나다 불

아동 보호 유형	하루 4시간 미만		하루 4시간 이상	
	일	월	일	월
인가받은 보육 셋팅 이용시 보조금				
- 인가받은 집단 보육				
0~18개월	18.75	375.00	37.50	750.00
19~36개월	15.90	317.50	31.75	635.00
37개월 이상	13.75	275.00	27.50	550.00
6세 이상	10.38	207.50	20.75	415.00
- 인가받은 가족 보육				
0~18개월	15.00	300.00	30.00	600.00
19~36개월	15.00	300.00	30.00	600.00
37개월 이상	13.75	275.00	27.50	550.00
6세 이상	10.38	207.50	20.75	415.00
- 인가받은 방과 후 보육				
유치원(Kindergarten)	13.60	272.00	17.00	340.00
1학년 이상	7.38	147.56	8.65	173.00
- 인가받은 유치원(Preschool)				
30개월~취학전	11.25	225.00	-	-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육 셋팅 이용시 보조금				
0~18개월	10.95	219.00	21.9	438.00
19~36개월	10.10	202.00	20.20	404.00
37개월 이상	8.85	177.00	17.70	354.00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등록되어 있는 아동 보육 셋팅 이용시 보조금				
0~18개월	15.00	300.00	30.00	600.00
19~36개월	15.00	300.00	30.00	600.00
37개월~72개월	13.75	275.00	27.50	550.00
6세 이상	10.38	207.50	20.75	415.00
아동 가정내 보육시 보조금				
첫째 아동 0~8개월	9.85	197.00	19.70	394.00
첫째 아동 19개월 이상	7.95	159.00	15.90	318.00
둘째 아동 0~8개월	4.95	99.00	9.90	198.00
추가자녀 1인당	3.68	73.50	7.35	147.00

자료: British Columbia, Canada(2005 개정). Child Care Subsidy Act.

4. 영국의 베이비시터 현황

가. 보육 현황

영국은 교육과 보육이 구분되는 이원병행체계의 보육정책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이를 모두 담당하고 보육시설(nursery), 가정보육(childminder), 내니(nanny) 등은 대체로 지역수준의 사회서비스 담당부처의 책임 하에 있다.⁶⁰⁾

영국의 보육서비스는 공립·민간 보육시설, 가정보육모(childminder), 내니, 친구·이웃, 친척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50년대까지는 자발적·사적, 교육·보육 부문에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1970년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주간 보육에 대한 사적 부문의 팽창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특히 1985~1991년 사이 203%가 증가하였다(Bertram & Pascal, 1999).

영국의 보육·교육 제도는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8년 이후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영국의 보육·교육 제도는 아동의 연령 0~3세사이의 보육, 0~4세 사이의 예비초등학교(pre-primary school), 5~11세 사이의 초등교육 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0~3세 아동의 부모는 가정보육모나 놀이집단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0~3세 아동의 보육서비스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사적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1세미만의 영아는 대부분 부모나 친척 등이 돌보며, 1세미만 아동의 약 20%와 1세에서 3세미만 아동의 약 30%가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모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3~4세 아동은 거의 보육시설과 놀이집단을 이용하며, 4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예비학교(reception school)나 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현재 연간 33주 동안 일주일에 5일, 하루당 2.5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조기교육 장소가 3~4세 아동에게 보장되는데 3세아동 96% 및 4세 아동 98%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5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며, 5세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6.5시간의 교육을 받는다(OECD, 2006).

60) 그러나 정부에서는 “The 2004 Five Year Strategy for Children and Learners”를 통해 분리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2007년 6월부터는 이러한 시도를 수행할 새로운 정부부처로서 DCSF(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출범하였음.

〈표 VI-4-1〉 영국의 서비스 제공 주체별 교육·보육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형태
지역 교육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 초등학교내 early years unit¹⁾ • 특별학교(special school)²⁾ • 기회집단(Opportunity groups)³⁾ • 초등학교내 유아학급⁴⁾ • 예비학급(reception class)⁵⁾ • 방과 전·후 학급 • 휴일학교
지역 사회서비스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육 시설
자발적(voluntary)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 놀이집단 • 지역사회 보육시설 • 부모-자녀 집단 • 친구, 친척, 이웃
사적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 민간 주간보육시설 • 보육시설 • 유치원 • 놀이집단 • 직장보육시설 • 방과전후 학급 가정: • 가정보육모 • 오페어/내니
지역 교육·사회서비스 협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 센터 • 가족 센터 • early excellence centre⁶⁾

주: 1) 3~5세 아동이 이용하며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
 2) 3세이상 아동중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이 이용.
 3) 3세이상 아동중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형태.
 4) 3~5세 아동이 이용하며 기본적으로 시간제로 운영.
 5) 4~5세 아동이 이용하며 초등학교의 첫 단계로 간주됨. 전일제로 운영.
 6) 가족지원과 성인 교육을 포함한 형식적이지 않은 outreach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자료: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2000.

〈표 VI-4-2〉 영국의 공적 보육 서비스 및 공적 지출

단위: %

총 공적지출(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적(제공 또는 보조되는)보육 비율	
	1-2세	3-5세
0.4	2.0	77.0

자료: Economic survey of the United kingdom 2005. Ch5(OECD)에서 재구성.

영국은 특히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질적 차이도 큰 상황이며, 장애아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이 아닌 경우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 서비스에 거의 접근할 수 없다. 만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은 대부분 사적 부문에 맡겨져 있으며, 보육료도 대부분 정부의 지원이 없이 부모가 지불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및 친척 등의 아동 양육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동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영리부문의 가정보육모(childminder)는 주

요한 아동 보육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3~5세 아동을 위한 공적 부문의 조기 교육 시스템은 시간제가 일반적이며 정규 학교 운영 기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여서, 일을 하거나 학업중인 부모를 위한 “wrap-around”식 아동 보육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하는 형태의 보육은 사적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다.

공적 부문의 지원이 부족한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사적 영리 보육 서비스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가정 보육모(childminder)에 의한 보육이지만, 베이비시터, 내니와 같이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아 주는 1:1 개인보육도 이용되고 있다. 1999년 기준 만 3세 이하의 아동 보육 서비스 이용을 보면 부모-자녀 집단이 가장 많고, 친척에 의한 보육, 가정보육모, 내니/오페어 등 개인 보육 서비스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표 VI-4-3〉 영국 취업모 자녀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2002)

단위: %

구분	조부모	친구, 이웃	가정 보육모	형제 자매	비동거배우자, 전배우자	내니 / 오페어	기타 친척	기타 비혈연	기타 또는 이용안함	계
비율	34.0	7.0	7.0	6.0	5.0	1.0	8.0	2.0	46.0	100.0

주: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취업모 대상임

자료: Labour Force Surve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또, 2002년 15세 미만 아동이 있는 취업모의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고 기타 친인척, 가정보육모·친구나 이웃, 아동의 형제자매, 비동거 배우자, 친척외 타인, 내니/오페어 순이었다. 이에 따르면 내니 등 개별 탁아는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친인척 등 혈연에 비하여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VI-4-3 참조).

나. 관련 법·제도

1) 아동보호

영국의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자율등록 대상으로 그 주관기관이 아동보육 인증 체계(Childcare Approval Scheme: CAS)로부터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61) 가정보육모(childminder)는 자신의 집에서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며, 반면 내니나 오페어는 아동의 집에서 주로 1:1 보육을 제공함.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006년 이전 영국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 보호(childcare)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체계를 발달시켜왔다. 1999년부터는 슈어 스타트(Surestar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발달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아동보육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기능을 하는 체계로서 2005년 4월부터는 아동보육 인증 체계(Childcare Approval Scheme: CAS)가 운영하였다.

CAS는 교육부와의 계약하에 Nestor Primecare Services Ltd에서 운영하며 2005년 4월부터 시작된 자발적 신청에 의한 인증체계로 영국 내에서 제공되는 아동 보호(childcare)에만 적용된다. 아동에게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CAS에 신청절차를 밟아 인증을 받게 되는데 최초의 신청 및 인증을 갱신하는 시점에 연령은 18세 이상에, 인정된 아동보육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아기나 어린 아동을 돌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신청전 3년 이내 취득한 응급처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기록 등에서 아동을 돌보기에 부적합하지 않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1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하는데, 인증체계에서는 이러한 인증을 통해 보장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VI-4-4〉 영국 가정내 아동보육 제공자 인증 기준

보장	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 ▶ 신청자가 신청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음 ▶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carer가 영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childcarer가 돌보기에 적합한 아동의 연령대 ▶ 인증 childcarer를 이용하는 부모가 근로소득 공제나 고용주의 아동양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childcarer가 아동을 돌보는데 개별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할 부모의 의무 면제

이밖에도 자발적인 인증체계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의 장점을 인증 내니를 이용하는 부모와 인증받은 내니의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즉,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인증받은 내니를 이용하면 기본적 자질을 믿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WTC)의 아동보호(Childcare) 요소를 통해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증받은 내니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질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음으로써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제시한다.⁶²⁾

그러나, 이러한 아동보호 인증체계(childcare approval scheme: CAS)는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 등록으로 점차 대체되었다⁶³⁾.

2004년의 ‘육아를 위한 10년 전략(The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의 수립에 따라 정부는 보육 제공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간단한 체계로 재편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2006년 아동보호법(Childcare Act)에 반영되어 교육기준청(Ofsted)⁶⁴⁾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2006년 ‘아동보호법(Childcare Act)’⁶⁵⁾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에 두고 있다. 새로운 아동보육 체계의 계획과 전달체계에 부모의 관점을 포함한 가족의 욕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해서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등록 및 인증체계는 아동의 집에서 제공되는 보호를 제외한 8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을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분 및 7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내니와 가정보육모가 CAS에 자발적으로 인증을 얻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교육기준청(Ofsted)에 모든 형태의 아동보호를 등록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교육기준청 자율등록부문은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어 CAS는 2007년 10월 1일자로 중단되었고, 그전까지는 두 체계가 병행되었다.

2006년 아동보호법에 의하여 교육기준청(Ofsted)에서는 두 가지 등록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대상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① 영유아 등록(Early years register) 부분과 ② 교육기준청 아동보호 등록(Ofsted childcare register) 부분이 그것이다. 영유아 등록(Early years register)은 취학연령전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제공자에게 적용되고,⁶⁶⁾ 아동보호 등록은 5세이상 아동을 돌보는 보호제공자에 대해 적

62) URL:<http://www.childcareapprovalscheme.co.uk>

63) URL:<http://www.surestart.gov.uk>

64)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법(The Education Act 1992)에 규정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와는 독립적으로 존속함. 교육기준청의 역할은 해를 거듭하면서 강화되어, 2001년 9월 1일부터 모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대해 조정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보육모와 사립유아원을 지도·감독하게 되었음.

65) URL:http://www.direct.gov.uk/en/NI1/Newsroom/DG_10038080

용되는 부분이다.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제공자 등록체계는 의무등록과 자율등록으로 구분된다. 5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호 제공자는 의무 부문으로, 이는 2008년 9월부터 시행예정이다. 8세이상 아동에 대한 보호제공자와 의무등록부문에서 예외로 제외되었던 경우는 자율적 등록에 해당된다.

즉, 2006년 아동보호법(Childcare Act)을 통해 아동보호 제공자에 대한 감독·관리 절차에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져,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 시간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하여야 하며,⁶⁷⁾ 반대로 8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거나 또는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자발적인 등록대상으로, 내니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니는 기본적으로 강제적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할지라도 관련 서류들과 자격조건을 확인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다.

등록 과정에서 세 영역에 대한 검토가 따르게 된다.⁶⁸⁾ 첫째, 보육서비스 제공에의 적합성 여부이고, 둘째는 가정보육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관리자처럼 등록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적합성이며, 셋째는 시설이나 장소가 안전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밖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3세이상 아동에 대한 보호는 교육기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교 감독 체계(Schools inspection system)’를 통해 감독될 것이다.

이외 지역 ‘아동정보서비스(Children’s Information Service: ICS)’에서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아동보육 서비스, 조기교육 및 여러 가지 아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⁶⁹⁾

2) 가정내 고용 조건

이밖에 베이비시터의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정하는 정부의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으며,⁷⁰⁾ 출퇴근 내니는 최소 임금⁷¹⁾의 적용을 받는다. 이중 주당 일정금액 이

66) 이들은 특별히 제외되는 경우 외에는 0-5세 아동의 교육과 발달,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을 수행하여야 함.

67)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childminder’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정집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daycare provider’로 등록하여야 한다(www.suffolk.gov.uk).

68) URL: <http://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f08cb1ee8076>

69) 가정보육모나 취학전 놀이집단(pre-school playgroup), 방과후 학교 동호회 등 등록된 보육서비스 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보육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70) 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50~60시간이 보편적임.

71) 2007년 현재 시간당 5.35 파운드임.

상을 지불받을 경우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내니 및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부모는 고용주로 등록하여 고용인에 대신하여 세금과 국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가능한한 내니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급여명세표를 함께 주어야 하며, 내니는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내니가 사회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에는 질병수당(SSP: Statutory Sick Pay), 모성수당(SMP: Statutory Maternity Pay), 입양수당(SAP: Statutory Adoption pay), 부성수당(SPP: Statutory Paternity Pay), 실업수당(redundancy pay), 유급휴가(Holiday pay), 연금이 있다.⁷²⁾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SSP는 내니가 고용된 기간에 상관없이 3일 이상 아플 경우 주당 72.55파운드 또는 상시 지불액의 일정 비율로 지불될 수 있다. 둘째, 모성수당은 임신한 내니가 출산예정일 전에 동일한 고용인에게 적어도 9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최초 6주간은 임금총액의 90%를 받으며, 이어 33주간은 주당 112.75파운드를 지불받는다. 또한 2003년 4월부터 발효된 것으로서 26주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으며 새로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인 경우 2주간의 부성수당이 적용되며 이후 13주간의 무급 휴가가 가능하다. 셋째, 입양수당은 입양허가일 전 최소 26주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중단 없이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 26주간의 입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입양수당은 주당 108.85파운드 또는 평상시 주당 임금의 90%선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 넷째, 실업수당은 최소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었던 경우 적용받게 된다. 실업수당은 피고용인의 나이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다섯째, '유럽고용입법(European Employment Legislation)'에 따라 유급휴가를 매년 4주(20일)까지 얻을 수 있다. 여섯째, 국가연금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영국의 영유아 보육 담당인력은 공식화되도록 유도되어 이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없으며, 세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3) 근로 연령

베이비시터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동법(children act)에 의하면 아동 학대 및 방임과 관련하여 16세 미만 아동은 아동에 대한 학대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16세 미만은 베이비시터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아동잔혹행위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72) URL:<http://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evenefits.html>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서는 베이비시터는 16세 이상일 것을 권고하며, 가능하면 베이비시터로 내니 자격자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16세 미만, 혹은 부적합한 베이비시터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다. 자격 및 교육수준 조건

1)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단체 및 대학 등에서 베이비시터 교육⁷³⁾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영국 적십자사에서는 아이돌보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으며 베이비시터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배부하고 있고, 왕립사고예방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ROSPA)에서도 아이돌보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내니

내니는 베이비시터에 비해 정규적으로 아이 돌보기를 주된 직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류도 입주 내니, 출퇴근 내니, 일시적 내니, 부모 도우미, nanny share⁷⁴⁾ 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국 고용법에 의하여 피고용자로서 근로 및 고용과 관련된 최소근로시간, 최소임금, 세제 및 보험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및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내니의 경우 자격 기준이 일정치는 않으나 1~2년의 교육을 받거나 내니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업체에서 일정한 연령조건, 흡연여부, 신원보증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⁷⁵⁾

베이비시터의 교육이 주로 단기적인 교육 과정임에 반하여 내니는 전문 보육인으

73) 단기교육으로서 부상 예방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응급처치, 아동 기본 보호 및 수유, 잠재우기, 안전 등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74) 내니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형태로 두 가정이 한 명의 내니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셋 이상의 가정이 내니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childminder로서 등록하여야 함.

75) 2002년까지는 자료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의하여 본인이 경찰서에서 기소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와야 했지만, 2002년부터는 아동보호법(Children protection Bill)에 의하여 범죄기록국(Criminal Record Bureau) 가족과(Home Office)에서 국가경찰 컴퓨터(Police National Computer), 보건부 교육 및 고용부 자료, 지방경찰 등의 자료를 일시에 조회할 수 있음(서문회 외, 2002).

로서 일반 보육시설 등의 보육인력과 같은 교육 수준이 요구되는데, 내니에 대해 선호되는 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CACHE Diploma(Diploma in Childcare and Education: DCE 또는 Diploma in Nursery Nursing: DNN 또는 NNEB)는 아동보육 및 교육위원회(Council for Award in Childcare and Education)의 2년 과정 교육 수료증이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과정이며 전통적인 내니의 자격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교육 과정이다. 2년의 교육과정은 건강, 안전 영양, 일곱 살까지 아동 연령에 따른 교육적 놀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2년 교육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료증은 NVQ의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CACHE에서는 이외에도 NVQ의 2급과 유사한 1년과정의 수료증인 'CACHE 재단 수료(CACHE Foundation of Certificate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두번째로 '기업 및 기술인 교육위원회(Business and Technician Education Council, BTEC)'에서 수여하는 증명서를 수여 받은 자가 선호된다. DCE와 내용이 비슷하나 좀 더 학술적이며, 16세 이상만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NVQ의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NVQs는 '국립직업자격기준(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에서 인정하는 단계별 보육교사 직업자격기준이다. 이는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증명할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얻을 기회를 주고자 정부에 의해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NVQ는 개인의 실제적 경험에 기초해 있을 뿐 학문적 자격조건은 아니며, 보육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급수로 수여된다. 한편 '전문보육모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Nursery Nurses)'에서는 국립직업자격기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 NVQ) 3급을 취득한 자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⁷⁶⁾

또한 국립직업자격기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에서 인정하는 3단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직업자격기준(NVQs)의 교과과정은 <표 VI-4-2>와 같다. 아동 신체적 욕구에 대응, 아동 신체발달, 사회성 및 감정 발달, 행동 원리 및 조직, 감각 및 지적 발달,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학대로부터 보호, 아동행동 및 발달 관찰 및 평가, 아동환경 계획 및 장치, 교육활동 및 경험이 계획 시행 및 평가, 부모와의 관계 등 11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그 이외에 15개 과목

76) URL:<http://www.nannydirect.co.uk/childcarequa.php>

중 3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표 VI-4-5〉 영국 보육 국립직업자격(NVQ) 교육과정

필수 과목	선택 과목(3과목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신체적 욕구에 대응 - 아동 신체 발달 - 사회성 및 감정 발달 - 행동 원리 및 조직 - 감각 및 지적 발달 -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 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행동 및 발달 관찰 및 평가 - 아동환경 계획 및 장치 - 교육활동 및 경험 계획 시행 및 평가 -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의 보호 및 촉진 - 특수아동 보육 및 교육 - 특수아동 구조적 프로그램 개발 - 다른 전문가와의 협업 - 아동 일상생활 계획·시행·평가 - 운영 관리 및 재정정책 및 과정 - 부모 지원 - 부모집단 활동 - 가정방문 및 지원 - 보호 및 보육서비스 확립 및 유지 - 자기 관리 - 문자해독 개발 지원 - 수학능력 개발 지원 등

자료: URL:<http://cache.org.uk>

라. 베이비시터 및 내니 고용에 있어서의 지침

영국에서는 베이비시터나 내니의 고용에 따르는 책임을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고용주로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며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베이비시터나 내니를 고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업체마다 베이비시터나 내니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슈어스타트(Surestart)에서도 내니를 고용하는데 있어 부모가 살펴봐야 할 조건들과 면접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VI-4-6>과 같다.⁷⁷⁾

이를 보면 우선기술 및 지식으로 아동양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자격, 건강한 음식 및 간식을 계획하고 준비할 능력, 응급처치훈련 여부, 운전을 고려하고, 이외 태도와 아동 양육경험을 살펴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내니 면접시에 내니와 협의가 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임금, 임금지불방식(주급·월급, 수표·현금 등), 근무시간 및 의무, 시작일, 휴일, 특별히 이용하고

77) URL:<http://www.surestart.gov.uk>

자 하는 시간, 수습기간, 긍정적인 체벌 전략,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애완동물 다루기, 대중교통·운전을 통한 아동 이동시의 안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VI-4-6〉 영국 내니 면접 지침

구분	질문
살펴볼 점	기술 및 지식: 아동양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자격(안전하고 재미있는 학습제공을 계획하는 능력), 영양(건강한 음식 및 간식을 계획하고 준비), 응급처치훈련, 운전 태도: 아동에 대한 관심, 자신감 경험: 아동 양육
면접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nny일을 얼마나 오래하였는가? ▶ 어느 연령의 아이를 돌보았는가? ▶ 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좋은가? ▶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 특별히 잘 맞는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아동보육이나 발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가? ▶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 내 아이와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가? ▶ 당신의 어린 시절이 좋은 내니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 전에 했던 일이 당신에게 맞았다면 왜 그만두었나? 왜 현재의 일을 그만 두려하나? ▶ 내니로서 부모 또는 아동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결이 되었는가? ▶ 내니를 함께 쓰는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nanny-share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지난 1년간 아파서 쉰 날은 며칠이나 되는가?

자료: URL:<http://www.surestart.gvt.uk>

마. 이용비용 및 지원

1) 업체 회비 및 소개료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업체에서는 소개받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업체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베이비시터를 소개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소개료도 부과한다. 한 업체의 경우 분기별로 12.75 파운드의 회비를 부과하며, 베이비시터를 소개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따른 소개료를 부과하고 경험 많은 베이비시터만을 소개할 경우 회비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고 있다.⁷⁸⁾

2)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은 지역별로 시간당 3파운드에서 8파운드까지 다양(에이전시에서 제시하는 비용)⁷⁹⁾하다. 이외,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의 귀가시간이 늦다면 택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베이비시터가 하루 종일 필요할 경우 미리 비용에 대해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한다.⁸⁰⁾

3) 내니

입주내니는 주당 최소 세후 225파운드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체로 230파운드에서 290파운드 선에서 요금을 지불한다. 출퇴근 내니는 이용 시간과 경험에 따라 270~400파운드 수준 지급받는다.

이외, 이용자는 내니의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며, 순지급액 외에 내니에 대한 세금과 국가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면 실제 내니에게 순지불되는 금액 외에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높아진다.

〈표 VI-4-7〉 영국 내니 고용시 순임금별 주당 비용

단위: 파운드

순임금	240	260	280	300	320
총비용(순임금+세금+국가보험+국가보험부담금)	327	361	393	427	461

주: www.nannytax.co.uk의 calculating system을 통해 계산

78) URL:<http://www.sitters.co.uk>

79) 한 베이비시터 소개업소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액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별, 시간대별, 특정상황별로 세부적인 시간당 임금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업체는 특히 저녁시간대에 이용하는 'evening babysitter'를 전문으로 하면서 내니의 소개도 함께 하고 있는데, evening babysitter의 경우 저녁 6시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 및 설날그믐날이나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특정한 날에는 평소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URL:<http://www.sitters.co.uk/cost.aspx>

80) URL:<http://www.bestbear.co.uk>

5.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 현황

프랑스는 앞에서 논의한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국가이다. 가정내 보육이 제도화되어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베이비시터 관리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보육현황

친가족 및 친출산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Gauthier, 1996) 프랑스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은 임신 초기부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보육과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핵심이다.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하에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평등, 자유존중 이념을 근거로 아동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영유아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되어 있다. 보육시설(Cre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3세 아동은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성학교도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되며 보호와 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정책은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째 교육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교육기구를 통하여 제도화된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만 3세 이상 유아의 모성학교 취원율은 2002년 기준으로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둘째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에서는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공공재원의 공립보육시설을 제공하기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를 대폭 끌어들이어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양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⁸¹⁾ 수당제공과 세금감면제도 등 양육의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개별보육 방안(individualised childcare)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3개월 이상 2세 이하 아동은 약 36% 정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영아의 8%는 보육시설(Crèches)을 이용하고 4% 정도는 가정에서

81) 1983년 이후 긴축재정과 실업률 증가로 집단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불규칙한 시간대의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카드제(acueil a la carte) 도입 및 보육계약(contrat creche), 아동계약(contrat enfance), 응급보육(acueil d'urgence) 등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대안들이었음 (장혜경 외, 2002).

조부모가 돌보며, 6%는 기타 인력, 나머지 64%는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즉, 유아는 공교육이 담당하고, 영아는 다수는 부모가 돌보지만 그 이외 대리양육이 필요한 아동 중 약 1/2은 가정보육이 담당하고 있다(표 VI-5-1 참조).

〈표 VI-5-1〉 프랑스 영아보육 유형 분포

단위: %

유형	가정보육	보육시설	조부모	기타	부모
비율	18	8	4	6	64

자료: OECD(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OECD Country Note, 재구성.

프랑스에서 개별보육 방안이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는 프랑스의 보편적인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3세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의 경우 3세미만 아동은 215만명이지만, 이들 중 25만명이 유아원, 20만명이 공동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전체 영아의 보육이용률은 약 25%에 불과하였다(International Reform Monitor).

행정적으로도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육은 노동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관할이며, 시설의 설립 및 운영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반 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지역의 사회보건국(DDASS: Direction Departemental des Affaires Sanitaires Sociales)에서 관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보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나 운영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법적 근거

프랑스는 가정보육을 제도화하고 있다.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에서는 보수를 목적으로(moyennant rémunération) 특정 사인(des particuliers) 또는 사법상의 법인(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으로부터 위탁된 아동(des mineurs)을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으로 맡아 돌보는 사람인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7권 제 7편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가사사용인, 가

정보육모(Concierges et employés d'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mployés de maison, assistantes maternelles) 에서 가정내 보육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보면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 123-1조가 규정하는 승인(l'agrément)을 받은 자가 보수를 목적으로(moyennant rémunération) 특정 사인(des particuliers) 또는 사법상의 법인(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으로부터 위탁된 아동(des mineurs)을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으로 맡아 돌보는 경우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된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로서 보호 받는다. 구체적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참조).

한편으로 다른 가정에 파견되어서 하는 가정보육 제공자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전은 특정 私인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travaux domestiques)에 종사하는 자는 가사사용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을 두고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데크레로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사사용인

노동법전(2003) 중 가사사용인에 관하여 적용하는 조항은 노동절 휴무,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가족과 관련된 결근할 권리 및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가 1973년부터 적용하여 온 5월 1일 노동절 휴무와 관련된 조항이다. 매년 5월 1일은 휴일로서 근무하지 않고, 5월 1일의 휴무는 급여 삭감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시급, 일당, 생산율에 따라 지불되는 급여는 이 휴무로 인해 손실된 액수에 합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일의 특성상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5월 1일 근무하는 임금노동자는 당일의 일에 합당한 급여와 더불어 그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다음은 2002년부터 발효한 성희롱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된다. 개인이나 제 3자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희롱행위(les agissements de harcèlement)를 당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수 등 직, 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고,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증언하거나 상세히 기재했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제재, 해고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근엄성을 경시하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 환경의 점진적 악화를 목표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성희

롱 행위를 받아서는 안 되며,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당하거나, 거부, 증언, 기재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육, 복직, 직무할당, 명칭, 분류, 승진, 인사이동, 계약갱신에 관한 직, 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2004년부터 발효한 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고 결근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이다. 임금노동자가 결혼할 경우 4일, 그 가정의 뜻밖의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도착하는 경우 3일,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할 경우 2일,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 부모님, 시부모님(장인, 장모),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1일 결근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가사사용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외 노동법전 제2권 제2편 제3장을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국사원(Consil d'Etat)의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⁸²⁾

〈표 VI-5-2〉 프랑스 노동법전 중 가사사용인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1절	총칙(Dispositions générales)
L.772-1조	- 특정 私인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travaux domestiques)에 종사하는 자는 가사사용인으로 간주된다.
L.772-2조	-L.122-46조, L.122-49조, L.122-53조, L.222-5조~L.222-8조, L.226-1조, L.771-8조, L.771-9조는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된다.
	L.122-46조 - 2002년 1월 18일 발효 - 어떤 임금노동자나 입사지원자, 연수생, 사내교육생도 개인이나 제 3자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희롱행위(les agissements de harcèlement)를 당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육, 복직, 직무할당, 명칭, 분류, 승진, 인사이동, 계약갱신에 관한 직, 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 어떤 임금노동자도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증언하거나, 상세히 기재했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제재, 해고될 수 없다. - 이에 반하는 규정이나 행위는 자동적으로 무효이다.

82) 국사원(Conseil d'Etat)은 정부의 고문역할을 함. 국사원은 법령이나 법안이 각의(Conseil des ministres)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또한 국사원은 자체의 시행령의 초안을 검토함. 국사원은 문서내의 법률상의 규칙성이나, 그 형태, 그것의 행정적 시의적절성에 관한 견해를 제시함. 또한 정부의 법률상, 행정상의 규율에 관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조언을 한다. 국사원은 여러 초안들 중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 되었거나 국회에 전달되어야하는 초안을 결정함. 국사원은 법률적, 행정적, 규정에 따른 규율의 개선을 규정하며,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공 보고서를 매 해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함.

	<p>L.122-4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월 18일 발효 - 어떤 임금노동자도 개인의 권리와 근엄성을 경시하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 환경의 점진적 악화를 목표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어떤 임금노동자도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당하거나, 거부, 증언, 기재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육, 복직, 직무할당, 명칭, 분류, 승진, 인사이동, 계약갱신에 관한 직, 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무계약파기, 이에 반하는 규정이나 행위는 자동적으로 무효이다.
	<p>L.122-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월 18일 발효 - 사내 대표자에 의한 노동조합은 L. 122-52 조에 명시된 상황과 사내 임금노동자를 위한 법률 L. 122-46조와 L. 122-49조에 근거한 모든 소송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제시하는 경우 법적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소송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고, 이를 종결지을 수 있다.
	<p>L. 22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11월 23일 발효 - 매년 5월 1일은 휴일로서 근무하지 않는다.
	<p>L. 22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11월 23일 발효 - 5월 1일의 휴근은 (공무원의)봉급과 월급, 2주 동안의 급여(bimensuels), 주급 삭감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시급, 일당, 생산물에 따라 지불되는 급여는 이 휴근으로 인해 손실된 액수에 합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p>L. 22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11월 23일 발효 - 일의 특성상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5월 1일 근무하는 임금노동자는 당일의 일에 합당한 급여와 더불어 그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 주(1) : 1144조는 폐지되었고, 지방법(le code rural) 에 따라 L 722-20, L 722-1~L 722-3, L 751-1조 밑으로 2000년 6월 15일 법령 2000-550번의 6조로 편입되었다.
	<p>L. 226-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6월 26일 발효 - 모든 임금노동자는 특정한 가족행사나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결근할 수 있다. - 임금노동자가 결혼 할 경우 4일 결근할 수 있다. - 그 가정의 뜻밖의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도착하는 경우 3일 결근 할 수 있다; 이 결근은 L. 122-26조의 첫 단락에 명시된 출산휴가에 대한 범위에

	<p>의해 동일한 자녀를 위한 휴가와 겹쳐질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할 경우 2일 결근할 수 있다. -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 결근 할 수 있다. - 부모님, 시부모님(장인, 장모),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1일 결근 할 수 있다. - 이 결근일수는 보수의 삭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결근일수는 연간휴가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유효근무일수와 동일시된다. - 현 조(article)의 규정은 지방법1144(1)에 근거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가능하다. (1~7, 9~10번)
	<p>L.77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수위 및 고용원에 대한 의료검진은 채용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 의료방문시, 의학적 이유에 의한 근로중단 후에 이루어지는 의료방문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p>L.77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검진의 계획 및 사용자부담의 그 재원조달의 방법, 사용자의 책임하에 다양한 의료검진을 행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장관, 노동장관, 공중보건·사회보장장관의 직인이 찍힌 보고서에 기초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
L.7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전 제2권 제2편 제3장을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국사원(Consil d'Etat)의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2) 가정보육모

가) 보수수준

가정보육모는 일정한 보수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금액은 사회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비항시적 보육모는 월 1회 보수를 지급 받으며, 항시적 보육모는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비항시적 보육모가 8~10시간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2001년 기준으로 1일 기준 아동 1명당 6.67유로이다.⁸³⁾ 이는 1일 최저임금의 2.25배에 해당된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8등분한 액수를 시간당으로 받게 되며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당 같은 금액을 초과근무의 명목으로 받게 된다.

가정보육모는 기본임금 이외에 몇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결석수당과 한시적 실업수당이다. 예를 들어 가정보육모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동이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이 결석하는 날 가정보육모는 아동결석수당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의 1.125배에 해당된다. 한시적으로 보

83) 2001년 7월 1일부터임. 보육시간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지만, 보통 오전 6시 혹은 7시에서 오후 7시 또는 8시까지 보육함.

육할 아동이 없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수당이 마련되어 있다.⁸⁴⁾

나) 사회보장

가정보육모는 프랑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 중의 한 명으로 기본적으로 의료, 퇴직, 직업병, 실업 등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보육모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의료비 및 약값을 지원 받게 되며, 건강보험, 퇴직보험, 직장 내 사고 및 직업병 대비보험 등과 같은 각종 복지보험을 보조받는다. 실직하였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을 보육으로 발생하게 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정보육모의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아동을 집이나 학교 등에 데려다주면서 생긴 사고에 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 휴가 및 휴일

가정보육모는 법정공휴일에는 휴무할 수 있으며, 직장형편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는 여타 직종과 마찬가지로 이에 관한 보상을 받게 된다.⁸⁵⁾ 또한 가정보육모는 연 5주간의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행사가 있을 경우 휴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달라진다. 이는 가사사용인에 적용된 바와 같다(노동법 제L.226-1조).

다.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가) 등록보육모

프랑스의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서 양육수당(APE)을 차등지급하고, 등록된 자격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혹은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

84) 1992년 7월 12일 법 제13조.

85) 대표적인 예가 5월 1일 노동절인데 노동법 제 I.222-7조에는 “일의 성격상 5월 1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특별 수당(indemnité)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여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의 현금지원⁸⁶⁾과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수당(AGED)이 있다.⁸⁷⁾

〈표 VI-5-3〉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구분	대상 아동연령	사업내용
양육수당(APE)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아동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 • 급여조건: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지급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 (AFEAMA)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보육모 자신의 집이나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 급여조건: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총당해 줌
가정보육수당 (AGED)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 급여조건: 보육비용의 50%를 지급.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 지급

이 중 두 번째와 세번째의 경우가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서비스가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것이다(표 VI-5-3 참조).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핵심은 등록된 보육모(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육교사는 6세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로서, 가족사회지원법(Family and Social Assistance Code)에서 정의된 바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Fagnani, 2004).

등록보육모 고용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6세 미만이어야 하며, 둘째, 등록보육모는 해당 시·도의 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등록보육모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일단위로 환산할 때 영유아 1인당 33.35유로(약 39,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타 부대비용(기저귀, 이유식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액수는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된다. 위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등록보육모를 고용하는 가정은 가족수당

86)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지원함.

87) 양육수당(APE)은 1985년, 가정내 보육수당(AGED)은 1987년,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는 1990년에 각각 도입되었음(Martin, et al. 1998).

기금(CAF)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분담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사회복지분담금의 경우는 각 가정을 거치지 않고 가족수당기금에서 징수처(URSSAP)로 직접 지불된다. 반면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수당의 경우는 각 가정으로 입금되는데, 그 액수는 영유아의 연령(만3세미만/ 만3세-6세)과 가계수입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고, 3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족수당기금(CAF)에 제출하여야 한다(한지혜, 2002).⁸⁸⁾

등록보육모에 대한 고용지원수당이 지급되면서 등록보육모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표 VI-5-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등록보육모 수는 1991년 130,000명에서 2002년 384,000명으로,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수당(AFEAMA) 수급자수는 1991년 110,000명에서 2002년 612,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VI-5-4> 보육모와 AFEAMA 수급자수의 변화(1991-2002)

단위: 명

구분	1991년	2002년
등록보육모 수	130,000	384,000
AFEAMA 수급자 수	110,000	612,000

자료: Fagnani(2005). *Child Care and Caring Rime Policies in France: Old Challenges, New Tensions*. Child Care in a Changing World. Workshop 자료.

지원수당의 지급조건이 되었던 등록보육모 고용은 자연스럽게 가정보육사들로 하여금 자격을 인증 받도록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보육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는 등록보육모에 대한 고용지원제도를 통하여 보육모라는 사회적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였다는 고용정책 측면이 있고, 둘째는 등록보육모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개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이다.

나) 가정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AGED)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87년 도입된 것으로 개별가정에서 보육모(personal

88) 2001년 현재 급여액은 최고 FRF 1,290(€196.66)(빈곤가족 혹은 3세미만 아동대상)에서 FRF 645(€98.33)(중산층가족 혹은 3-6세 아동대상)임.

caregiver)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개별가정에 6세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정에 적용된다. 수당은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보육모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급여지급은 소득수준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⁸⁹⁾

또한 1992년부터는 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가족고용' 세금감면제가 새로 생겨서, 개별가족이 지출하는 보육비용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최고 FRF 25,000이다(ILO, 2004).

가정내 보육수당 제도는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제공되었던 보육서비스를 지하경제(black economy)로부터 제도를 통하여 공식화하였다는 점과, 잠재적인 고용을 창출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가사노동이나 식사준비 등 보육외 가외 일들로 보육서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Martin et al. 1998).

그러나 이 수당제도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보육모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계층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임금가족들이 주요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없는 현실에서 제도효과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재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Letablier, 2003).⁹⁰⁾

2) 예산 규모 및 의미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나 가정내 보육수당 제도는 제도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4년 이후 전국가족수당기금(CNAF)의 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집단보육시설(crèches)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개별보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Morgan, 2002; Letablier, 2003). 2003년 현재 APE 예산이 약 FRF 180억인데 반해, 공공보육 지출예산은 FRF 28억에 불과하다(Silvera, 2004).

보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아동 월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01년 기준으로 집단보육 시설은 1,166유로, 가정보육은 707~900유로이고, 가정내 보육은 1,671유로이다. 영

89) 3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FRF 6,561(€ 1,000), 3-6세 아동의 경우 FRF 3,279(€ 500)이 분기별로 지급됨. 이 경우 가족수입이 연 FRF 220,784(€ 33,658)를 넘지 않아야 함.

90) 개별보육사를 고용하는 것이 공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듦.

아는 연간 세금공제 이전 기준으로 연 평균 2,100유로를 사용하는데, 분포상으로 보면 40%가 1,000유로 미만, 25%가 1,000유로 이상 2500유로 미만, 25%가 2,500유로 이상 5,000유로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epince, 2003; OECD, 2004 재인용).

〈표 VI-5-5〉 프랑스 보육 유형별 이용률 및 비용: 2002

단위: 유로

유형		유치원	보육시설	가정보육	가정내 보육
이용률	3세 미만	만2세아의 34.7%	10%	20%	1.5%
	3세 이상	거의 100%	극히 소수	10%	2.0%
비용	1인당 연간 비용	4,040	12,700	6,600	17,200
	연간 총 비용	106억	20억	17억	12억
비용 분담		가족수당기금, 지방정부, 가정	인건비: 중앙정부 설비/운영: 지방정부	가족수당기금, 가정	가족수당기 금, 가정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 70%, 비영리단체 28%	부모	부모
보육교육비		NA	월소득의 12%	최고 월 22유로	월 750유로

자료: OECD(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OECD Country Note, 재구성.

6. 정책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5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 기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시간제 베이비시터가 반드시 보육 관련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일제 내니 등은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시터, 내니와 같은 가정내 보육제공자에게 현실적으로 일률적 자격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개인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 인증 신청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처치 훈련,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등이 적용되므로 우리도 이 정도는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내 보육제공자에 대한 관리 측면이다. 영국에서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자율등록 대상으로 2007년 10월부터는 아동보육 인증 체계(Childcare Approval Scheme: CAS)에서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으로 완전 이관된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우리는 비영리부분, 영리 부문 모두 각각 주체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다. 민간 자격을 주는 곳도 있으나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위상에 대한 시사점이다. 단기 시간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경우는 몰라도 종일제 등 장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각종 노동법과 사회보장 관련 법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이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이며 시간제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도록 되어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고용법은 가정내 근로자에 대해서 그들이 반일제 근무이건 전일제 근무이건 그리고 입주하거나 출퇴근하거나 모두 법 아래 같은 권리를 가짐을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동을 보육하는 시터에 대해서는 가정내 근로자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온타리오주 고용법에서 가정내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일신상의 긴급 휴가, 비상사태 선언 휴가, 동일한 근로에 대한 동일한 급여, 가족 의료 휴가, 근로 시간 보장(예: 근로의 최대 시간, 일 또는 주/격주의 휴일, 최소 임금, 초과근무 급여, 임신과 산후 휴가, 공휴일, 급여의 정기 지급, 퇴직금, 해고 통지, 휴가 등이다

영국은 베이비시터의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정하는 정부의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출퇴근 내니는 최소 임금⁹¹⁾의 적용을 받는데, 주당 일정금액 이상을 지불받을 경우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내니 및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부모는 고용주로 등록하여 고용인에 대신하여 세금과 국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가능한 내니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급여명세표를 함께 주어야 하며, 내니는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내니가 사회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라 모든 수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⁹²⁾

91) 2007년 현재 시간당 5.35 파운드임.

92) 받게 되는 혜택에는 질병수당(SSP: Statutory Sick Pay), 모성수당(SMP: Statutory Maternity Pay), 입양수당(SAP: Statutory Adoption pay), 부성수당(SPP: Statutory Paternity Pay), 실업수당(redundancy pay), 유급휴가(Holiday pay), 연금이 있음.

넷째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특징이다. 정부의 협회 교육에 대한 지원, 이용 할인권 제도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은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과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이용비용의 지원이다. 미국은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로드아일랜드⁹³⁾와 미시건⁹⁴⁾ 등의 주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친인척과 비혈연, 즉 베이비시터/내니로 정하고 있다. 단,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보육의 공급자인 친인척과 베이비시터 및 내니 등은 각 주정부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의 보육자로서 등록(Registration)을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을 영아보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현금을 지원한다. 일본의 베이비시터 이용권 할인도 이용자 지원 방법의 하나이다.

여섯째, 관련 단체의 자조적 활동이다. 내니 등 가정내 보육제공자나 회사 등이 협회를 구성하여 민간인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베이비시터협회는 자조적 기준, 시터 자격 인증,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자격 인증, 베이비시터 및 경영자 교육 등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베이비시터회사 규모는 150여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형태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화를 통한 활동 및 정부와 이용 할인권 제도를 통한 기업의 지원은 베이비시터회사가 등장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아직 협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의 하나로 앞으로의 정책 전개에 대한 시사이다.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정책은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가 당면한 실업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보육모 등록, 인증 제도로 수십만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수당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저변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양육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책이 제3섹터로, 또는 민간 영리부분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문제와 함께, 영아보육서비스가 시설 중심인가 가정 중심인가도 주요한 사안이 된다.

URL:<http://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evenefits.html>

93) URL:<http://www.dhs.ri.gov/dhs/famchild/dcspgm.htm>

94) URL: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VII. 정책방안

앞에서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가정내 보육이 정부, 비영리기관, 민간업체 등에 의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 제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단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본 고에서는 영리 및 비영리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그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베이비시터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자격 기준이 없고 공식적인 자격부여 기관도 없다. 또한 베이비시터 회사는 인력의 질 관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턱없이 짧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다. 또한 베이비시터의 양성 및 파견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베이비시터 파견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회사와 아동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본인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어야 한다. 베이비시터 양성을 사회적 일자리 마련의 한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의 장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YMCA아가야 시간제보

육 등이 전국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는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혼재되어 있고, 이용 유형도 보육시설과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다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에서 기준 보육시간 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야근, 출장 등이 이용시간대를 벗어난 경우 아무리 시설에서 시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로의 접근성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베이비시터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대부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비교적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가구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게 높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가 모두 지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선택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보육사업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모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베이비시터 이용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베이비시터의 주된 수요층인 취업모, 영아 가정과 베이비시터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하되, 부모가 지불하는 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이 동일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비용을 상회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재 베이비시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을 하고, 파견, 소개 기능을 하는 기구는 정부의 위탁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영리 회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활동하고 서로간의 교류나 협력은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의 균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2. 보육도우미 제도화 방안

가. 보육도우미의 제 기준 마련

1) 보육도우미(가칭) 개념 및 자격 기준 마련

보육도우미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

보육도우미의 자격은 단기교육을 통하여 부여한다. 보육도우미의 연령도 2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준고령 여성도 심신이 건강하면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에 가정보육도우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보육도우미는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금치산자,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자 등에는 결격사유를 두어 제한한다.

보육도우미 자격자는 관련 단체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데, 자격 인증기간은 5년으로 매 5년마다 교육을 받고 갱신하도록 한다.

2) 보육도우미의 교육 기준 마련

보육도우미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사업자 협회에서 초기교육,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협회에 보육도우미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육아 인력 교육과 연계한다.

자격교육 시간은 최소40시간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⁹⁵⁾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식생활 관리, 위생과 질병관리, 아이 돌봄, 프로그램 등이다.

보육도우미 보수교육은 월 1회 집단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3) 서비스 제공과 관리 기준 마련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한다. 종일제는 입주도 가능하도록 한다.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보육도우미는 자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한다.

보육도우미는 가정 이외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고, 기타 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별도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보육도우미 파견 후 부모와 도우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육모가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95) 교육시간은 보육도우미의 근로자로서의 위상 변화에 따라 증가되어야 할 것임.

나. 사업 주체 관리 체계 구축

1) 사업주체의 등록제 강화

국가가 설치한 기구 이외에 영리, 비영리 민간사업체는 규정이나 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갖추어 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사업체 대표는 금치산자 등 하자가 있는 자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정도 경영자 연수회 등의 형태로 교육한다. 이 역시 관련 단체에서 담당한다.

사업체에는 대표 이외에 상근자 1인 이상이 필요하고, 보육현장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에 적절하다. 사업체에 일정 공간 기준을 둔다. 직무 관련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상담이나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필요에 따라서 교재교구와 장난감 수납공간 등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사업체는 가정보육모와 가정을 연계하여 보육 기능을 실시하고, 교재교구나 보육내용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 등 사후 관리를 한다.

- ① 보육도우미제도를 홍보하고 보육 가능한 유자격자를 등록시킨다.
- ② 보육도우미 교육 및 보수교육을 의뢰하고, 보육도우미 근무 지침을 제정하여 교육한다.
- ③ 인터넷을 통해 영아보육 필요 가정과 보육도우미 명부를 관리하고, 도우미 경력을 관리한다.
- ④ 가정과 보육도우미를 연결해 주고, 보육도우미의 업무 보고 활동일지 관리, 가정보육모의 질병, 응급사태, 휴가 시 대체인력지원 등을 담당한다.
- ⑤ 보육료 수납 및 도우미 급여를 지급한다.
- ⑥ 안전사고 관련 및 기타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 ⑦ 보육도우미 간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협력 소모임 지원, 가정보육모와 지역 지원 연계 등을 한다.
- ⑧ 자녀양육 지원 기능으로 on-line, off-line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양육과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off-line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사업자 단체 구성

지원체계로 사업기구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 보육도우미 소개업 관련 단체를 둔다. 영리 회사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소개업자의 유형별로 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이 협회가 거점으로서 사업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보육도우미 인력 교육과 자격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지침이나 기준 등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체 경영자 교육도 담당한다.

즉, 영리 회사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영리회사 대표는 사업자 협회에 하나의 분과로 들어오도록 한다. 사업자 협회에서 마련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협회에서 시터 관리규약, 부모 약관, 시터 지침 등 제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내 보육도우미 업무를 자문하기 위해 협의체 안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 보육지원기관(어린이집, 소방서, 병원 등) 종사자와 가정보육 전문가, 영아보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체 운영과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다.

이외에 중앙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담당한다.

다. 공공 보육도우미 사업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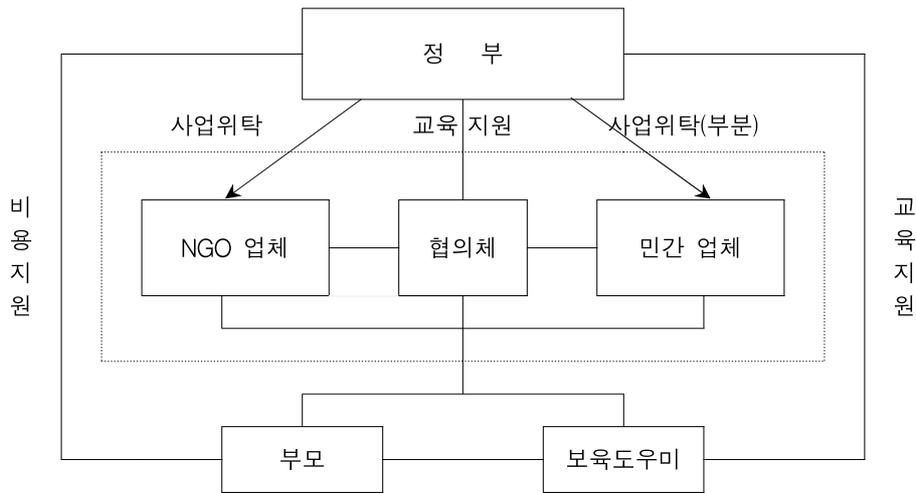
정부는 지자체 이외에 등록된 영리, 비영리 사업체 중에서 일정 수의 사업체에 보육도우미 사업을 위탁한다. 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국공립보육시설, YMCA, 단체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보육도우미 사업체로 지정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전 계층의 초등학교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실시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그 위탁 기관, 사업 규모,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 개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탁사업체에는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 사업체에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육도우미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해보험과 이용 아동의 배상보험 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근로자로서의 처우와 성저중장기적으로는 최소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라도 고용하여 일정한 고정급을 보장한다. 현재는 보육도우미의 급여는 정해진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하는 일시 고용의 형태로 하고, 시간제, 종일제 등 여러 유형별로 처우 수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보육도우미의 근로자로서의 위상은 낮고 보호의 범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체가 지원금으로 인증 보육도우미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업체가 보육도우미를 고용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위상이라도 확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가능하고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대상에도 포함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 업체에 고용되는 경우는 민간업체가 판단하여야 할 일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그림 VII-2-1] 보육도우미 사업 및 관리 체계도

〈표 VII-2-1〉 보육서비스 제 특성 비교

구분	보육시설	기존 개인서비스				보육도우미(안)
		아이돌보미	YMCA 아가야	내니 (복지부안)	영리 베이비시터	
대상	0~12세 (0~6세 중심)	0~12세	0~12세	6~8세	0~12세	0~12세
프로그램	보육과정에 의한 운영	보호와 놀이 중심	보호와 놀이 중심	보호와 놀이 중심	보호와 놀이 중심	보호와 놀이 중심
시간	종일제, 연장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종일제 (출퇴근 및 입주)	종일제, (입주 및 출퇴근) 시간제
공급	정부, 민간	정부(단체)	단체	단체 민간	민간	정부, 단체 민간
서비스 장소	보육시설	아이의 집 돌보미의 집	별도 시설 아이의 집	아이의 집	아이의 집	아이의 집 도우미의 집
이용자	일반	저소득층	일반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일반
비용지원	부모차등지원 기본보조금	부모차등지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부모차등지원	없음	부모차등지원 운영비 지원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	-	직업안정법	별도의 법 또는 규정
사회보장	4대보험 상해보험	상해보험	상해보험	-	(상해보험)	상해보험
자격 기준	국가자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협의체 인증
교육	최소 1년 보수교육	40시간	80시간	-	초단기 기관별 차이	최소 40시간 보수교육
기타						취업모 자녀 조부모 보육 인정

주: 아이돌보미와 보건복지부의 내니(안)은 대상이 차이가 날뿐, 실제로는 차이 없음.

셋째, 보육도우미 이용 가정에 대해서는 이용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한다. 자격인증을 받은 보육도우미가 사업체를 통하여 자기 집 손자를 돌보는 경우, 모의 취업이 증명되면 이를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가 보육도우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소득수준을 2~3 단계로 구별하여 차등하여 적용하고, 지원액은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비용 지원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취업모를 우선 한다.

라.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영리 베이비시터회사는 보육도우미 소개업체로 등록하고 현재와 같이 베이비시터 등 인력 소개업을 하며, 또한 정부의 보육도우미 사업 대상으로도 문을 열어두고자 한다. 정부의 위탁사업체가 되면 인증도우미 사용, 비용 상한선 유지 등 조건이 수반되므로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관리 기능을 기대하자는 것이다. 영리업체 대상의 사업은 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전체적인 비영리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 영리 사업체도 반드시 정부 사업 위탁체가 아니더라도 자격 인증도우미를 사용하는 경우 세제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질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영리 회사도 사업자 협회에 하나의 분과로 들어오도록 하여 교육에도 공동 참여하도록 하고, 시터 관리규약, 부모 약관, 시터 지침 등 제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마. 제도화 방안

현재 직업안정법으로 가정내 근로를 하는 사람 소개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법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영리 업체와 비영리 기구를 모두 포함한다. 필요한 조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도우미 소개업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도우미 소개업 조항을 두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도우미 소개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둘째,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신고 조항을 두어서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보육도우미 소개 비용은 정부가 결정·고시한 요율로 정하고,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은 등록 제한을 두어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결격사유 조항을 두어서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⁹⁶⁾은 사업 진입을 제한한다. 동시에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보육도우미 소개업자의 준수사항을 두어서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명문화 한다.

넷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항을 두어서 등록을 하여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도우미 또는 가정보육모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소자의 소개를 제한하는 조항을 둔다.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보육도우미 희망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곱째, 명칭사용의 제한 조항을 두어서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명칭을 사용할 때는 "보육도우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개설된 보육도우미 소개업자가 아니면 보육도우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덟째,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위탁을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96) 이외 직업안정법을 준용하고 이외에 아동학대 관련 법규를 추가함.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보육도우미

첫째, 보육도우미 자격 조항에 보육도우미 자격은 보육도우미사업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자격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둘째, 보육도우미 건강진단 조항으로 보육도우미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보육도우미로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보육도우미의 준수사항 조항을 두어서 보육도우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특히 활동시 반드시 육아일지 및 도우미 출퇴근 확인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도록 명문화 한다.

3) 비용 지원

국고보조 조항을 두어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4) 비밀 보장

비밀보장 의무를 두어서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보육도우미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표 VII-2-2〉 보육도우미 소개업 조항(안)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도우미 소개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도우미 소개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보육도우미 소개 업무를 할 수 있다.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신고	①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등록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보육도우미 소개업자의 준수사항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등록을 하여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도우미 또는 가정보육모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표 계속)

명의대여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소자 소개의 제한	①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보육도우미 희망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교육	①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육도우미 소개업을 개시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명칭사용의 제한 등	①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육도우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보육도우미 소개업자가 아니면 보육도우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위탁을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 VII-2-3〉 보육도우미 조항(안)

구분	내용
보육도우미 자격	① 보육도우미 자격은 보육도우미사업기관협회에서 실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자격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보육도우미 건강진단	① 보육도우미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보육도우미 소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아이돌보미로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육도우미의 준수사항	① 보육도우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육도우미는 활동시 반드시 육아일지 및 도우미 출퇴근 확인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도우미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안전과 건강 및 정서안정을 기하도록 환경을 조성함.

(표 계속)

보육도우미의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성장발달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배려하여야 함. - 아동 생활 상황을 항상 배려하여 건강 안전을 도모함. - 어린이 사고종류, 발생원인 등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긴급조치를 체제를 갖추. - 완구 및 도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보육하도록 환경을 정비함. - 가정보육시에는 부모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업무로 인하여 습득한 아동 및 가족 관련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
-------------	--

〈표 VII-2-4〉 국고 보조 및 비밀보장 의무 조항(안)

구분	내용
국고보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밀보장 의무	보육도우미 소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보육도우미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예상되는 문제

보육도우미 제도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또는 어려운 점은 첫째로 보육 중심의 보육도우미나 시터와 학습시터·영어시터 등 기타 기능 시터와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파출부 등 가사와 아이 돌보기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하는가하는 점도 문제이다.

바. 보육정책과의 관련성

보육시설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총량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의 부모들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많다. 보육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포함하여 시설보육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부모의 요구는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가정내 보육지원은 보육정책의 주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

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시설보육과는 보완관계이고 또한 대체관계이다.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이 있고 또한 부모의 근로형태가 비정형적이거나 야간 작업이 많을 경우 등으로 시설보육이 취약보육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의 연령이나 기질 특성 상 단체보육보다는 개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이 있다. 다음으로 가정내 보육이 시설보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예로는 방과후 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등의 사례가 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만, 기관 이용을 전후하여 성인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부모 부담 비용을 지원할 경우 대체관계에만 적용하여,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권 외(2000). 영유아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 연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 서문희 외(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지원 방안. 육아정책 개발센터.
- 서문희·이상현(2002).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지미 외(2006).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설치를 위한 연구. 노동부.
- 여성가족부(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 이옥 외(2004).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부.
-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병휴 외(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노동부.
- 정민자 외(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정민자(2006). 영아보육의 과제와 전망-아이돌보미제도를 중심으로-. 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 1호.
- 황덕순 외(200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노동부.
- 日本 社團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1). 社團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의 概要.
- 日本 社團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編(2005). 在宅保育の考え方と實際 ベビーシッター 講座.

- 日本 社団法人 全国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5). 2005 ベビーシッター now.
- 日本 社団法人 全国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사업보고서.
- 日本 社団法人 全国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国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
年の 추이.
- 日本 社団法人 全国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 日本 社団法人 全国 베ビー시ッター協會(2007). 베ビー시ッター利用 가이드.
- 日本 財団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베ビー시ッター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編(2006). 保育年報.
- 日本 厚生省(2000). 厚生福祉.
- 福川須美(2000). 家庭的保育制度の現状と課題. 保育通信. No.542.
- 上村康子·福川須美(1998). 家庭的保育制度の全國實態調査報告(上).保育情報. No.262.
- Bertram, & Pascal(1999).
- Brown-Lyons, M., A. Ribertson, & J. Layzer(2001). *Kin and Kith- Informal Child Care: Highlights from Recent Research,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 Capizzano, J., & Adams, G.(2000). The Number of Child Care Arrangement Used by Children Under Five: Variation Across States. Number B-12 in Series. *New Federalism: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Urban Institute.
- Casper(1995). Who's minding our preschooler? *Current Population Report Household Economic Studies.* 70-52. US Census Bureau.
URL:<http://www.census.gov/population/socdemo/childcare.html>
- Department of Labor(2001).
- Fagnani(2004). France. in M. Fine-Davis etc. (ed.). *Fathers and Mothers: Dilemmas of the work-life bala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agnani(2005). *Child Care and Caring Rime Pilices in France: Old Challenges, New Tensions.* Child Care in a Changing World. Workshop 자료.

- Fuller B. S. L. Kagon, et al.(2000). *Remember the Children: Mother's Balance Work and Child Care under Welfare Reform*. Yale Univ.
-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 Gillian Doherty, Martha Friendly, & Jane Beach(2003).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anadian Background Report*.
- ILO(2004). *Government Programmes in France: National Family Allowance Office*. www.ilo.org
-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 Letablier, M-T.(2003).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1.
- Martin, C. A. Math, & E. Renaudat(1998).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and dependent elderly people in France: Towards a Commodification of social care?* in J. Lewis (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pp.139-174.
- Morgan(2002). *Does anyone have a "libre Chiox?" :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In S. Michel and R.Maho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N.Y: Routledge.
- Morgan, G. et al(2001). *Non-Licensed Forms of Child Care in Hom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State Support*.
- NICHHD(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11. No.3. pp.269~306.
- OECD(2000).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 OECD(2003).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Canada*.
- OECD(2004).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 OECD(2005). *Economic survey of the United kingdom 2005. Ch5.*
- OECD(2006). *Start Strong II.*
- Ontario(2000). *Fact Sheet–Employment Standards Act.*
- Piecyk, J. B., A. Collins & J. L. Kreader(1999). *Patterns and Growth of Child Care Voucher Use by Families Connected to Cash Assistance in Illinois and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 Pollard J.(1991). *Ideology, Social Policy and Home-Based Child Care.* Irene Kyle, Martha Friendly, & Lori Schmidt (eds.) Proceedings from the Child Care Policy and Research Symposium Occasional Paper No.2.
- Porter, T.(1998). *Neighborhood Child Care: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alk about Caring for Other People's Children.* 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 NY.
- Preparing Children To Stay Alone(2001)
- Silvera, R. (2004). *Gender Impact Assesment & the Employment Strategy in France. EC's Expert Group on Gender and Employment.*
URL:<http://www.2umist.ac.uk>.
- Tracey Bushnik(2006). *Children and Youth Research Paper Series–Child Care in Canada. Statistic Canada Special Surveys Division.*
- U.S. Census Bureau(2001).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2001 Panel. Wave 4.*
- Zinsser, C.(1991). *Rased in East Urban: Child Care Challanges ina Working Class Community.* Teachers College Press in Columbia Univ.
- URL:<http://a257.g.akamaitech.net>
- URL:<http://cache.org.uk>
- URL:<http://canadaonline.about.com>
- URL:<http://daegu.baby-care.co.kr>
- URL:http://neofederalism.urban.org/html/series_b/b12/b12.html.

URL:<http://netcircus.com/babysitter/guide3.htm>
URL:<http://www.americannantjobsrarch.com>
URL:<http://www.baby-care.co.kr>
URL:<http://www.babycenter.com/refcap/baby/babychildcare/6045.html>
URL:<http://www.babysitter114.com>
URL:<http://www.bestbear.co.uk>
URL:<http://www.bumomaum.co.kr>
URL:<http://www.canada-nanny.com>
URL:<http://www.canadiannanny.ca>
URL:<http://www.census.gov/prod/2005pubs/p70-101.pdf>
URL:<http://www.cfc-efc.ca/images/nats.jpg>
URL:<http://www.charmlove.co.kr>
URL:<http://www.childcareapprovalscheme.co.uk>
URL:<http://www.childminder.com>
URL:<http://www.costhelper.com/cost/child/babysitter.html>
URL:<http://www.dhs.gov/dhs/famchild/dcspgm.htm>
URL:http://www.direct.gov.uk/en/NI1/Newsroom/DG_10038080
URL:<http://www.enannysource.com/nanny/contract.aspx>
URL:<http://www.familycare.co.kr>
URL:<http://www.familycare21.com>
URL:<http://www.good-sitter.com>
URL:<http://www.helpkids.co.kr>
URL:<http://www.joymom.com>
URL:<http://www.kobsga.or.kr>
URL: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URL:<http://www.mybabysitter.com>
URL:<http://www.nanniesandsitters.com>
URL:<http://www.nanny.org>.
URL:<http://www.nannydirect.co.uk/childcareequa.php>
URL:<http://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evenefits.html>
URL:<http://www.nannytaxusa.com>
URL:<http://www.nanny1.org>
URL:<http://www.needananny.ca>
URL:<http://www.needbabysitter.com>
URL:<http://www.nccic.org/Choose.Quality.Care/babysit0.html>
URL:<http://www.nccic.org/poptopics/homealone.html>
URL:<http://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f08cb1ee8076>
URL:http://www.payscale.com/embed/US/Job=Babysitter/Hourly_Rate/by_State
URL:<http://www.safety-council.org>
URL:<http://www.sitters.co.uk>
URL:<http://www.sitters.co.uk/cost.aspx>
URL:<http://www.suffolk.gov.uk>
URL:<http://www.surestart.gvt.uk>
URL:<http://www.thesittertime.com>
URL:<http://www.toronto.ca/ems>
URL:<http://www.worldkids.net>

부 록

부록 1. 프랑스 노동법전 중 특수형태근로자 부분: 가정보육모

부록 2. 베이비시터회사 조사표

부록 3. 베이비시터 조사표

부록 4.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표

부록 1.

〈부표 1〉 프랑스 노동법전 중 특수형태근로자 부분 - 가정보육모

구분	내용
제1절	총칙(Dispositions générales)
L.773-1조	-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가 규정하는 승인(l'agrément)을 받은 자가 보수를 목적으로(moyennant rémunération) 특정 사인(des particuliers) 또는 사법상의 법인(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으로부터 위탁된 아동(des mineurs)을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으로 맡아 돌보는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L.773-2조	- 본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다음의 노동법전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1권 제2편 제2장 : L.122-28-1조~L.122-31조, L.122-46조, L.122-49조, 제3장 : L.123-1조의 마지막 항 · 제1권 제3편 (단체협약) · 제1권 제4편 : 제1장 (남녀간의 임금평등), 제3장 (임금지불), 제5장 (사용자에 의해 지급된 임금의 압류·금지 및 양도), 제6장 (혼인여성의 임금) · 제2권 제2편 제2장 제2절 (5월 1일에 관한 특칙), 제3장 제2절 (휴가기간), 제6장 (가족사를 이유로 한 휴가) · 제3권 제5편 제1장 제1절 (총칙) · 제4권 제1편 (직업단체), 제2편 (종업원대표), 제3편 (기업위원회) · 제5권 (노동분쟁) · 제9권 (평생직업교육훈련) 단, 제7편은 제외.
L.773-3조	- 일시적으로(à titre non permanent) 아동을 맡아 돌보는 부모는 보수를 지급받으며, 아동 1인당 1일의 보수 최저액은 최저임금(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을 참고하여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이러한 보수는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L.773-3-1조	- 항상적으로(à titre permanent) 아동을 맡아 돌보는 부모는 아동을 돌보는데 사용하기 위해 수령하는 비용금 및 필요품 이외에 계약(le contrat d'accueil)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장된 보수(une rémunération garantie)를 지급받는다. 시간단위 및 아동 1당 보수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 이러한 보수의 최저액은,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아동 돌보기가 계속적인가 또는 단속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 아동이 부모의 주거를 확정적으로 떠나는 때에 보수의 지급이 정지된다.
L.773-4조	- 아동을 돌보는데 쓰이는 비용금 및 필요품은 아동이 부모의 가정에 맡겨지거나 부모 가족에 의한 실제적인 책임 하에 두어지는 (아침에서 저녁 사이의 낮시간 동안의) 날들(les journées)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L.773-4-1조	- 공중보건법전(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L.149-1조 및 L.773-17조에 규정된 교육(formation) 기간 동안 부모의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L.773-5조	- 아동이 맡겨지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à titre non permanent) 다른 아동을 맡아 돌보는 부모는 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원래의 아동이 평상시처럼 맡겨졌어야 할 각 날에 대한 보상수당(une indemnité compensatrice)을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저액은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 그러나 이러한 수당은 다음의 경우에 지급되지 않는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부재가 부모 또는 부모가족의 사유 때문인 경우 · 아동의 부재가 아동의 질병 또는 사용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경우⁹⁷⁾
L.77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연차휴가수당(une indemnité représentative du congé annuel payé)을 지급받으며, 이러한 수당액은 L.773-3조, L.773-3-1조, L.773-5조, L.773-10조의 적용에 따라 수령하는 보수 및 이전 연도의 연차휴가수당 합산액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 전체를 다 사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 부분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계약의 해지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구별할 필요 없이(즉, 해고이든 사직이든)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닌 한 지급되어야 한다(즉, 그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L.77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즉, 부모)에게 더 이상 아동의 돌보기를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의 발송일은 L.773-8조 또는 L.773-13조에 의해 보장되는 예고기간(le délai-congé)의 기산점이 된다. 이러한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2절	<p>특정인에 의해 고용된 자에 관한 특칙 (Dispositions spéciales aux personnes employées par des particuliers)</p>
L.77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사용자가 아동 돌보기의 위탁을 종료하려면 15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L.77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을 통해 3개월 이상 돌보던 아이를 더 이상 맡아 돌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그 기간의 단축을 수락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 이러한 요건의 미준수는 계약해지의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des dommages-intérêts)을 발생시킨다.
제3절	<p>사법상의 법인에 의해 고용된 자에 관한 특칙 (Dispositions spéciales aux personnes employées par 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p>
L.773-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장애, 질병 또는 적용근란에 따른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인상 및 이러한 인상의 최저액에 관한 사항은 L.773-3조 및 L.773-3-1조가 예정하는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L.773-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경우 주휴, 법정 공휴일, 연차휴가, 입양휴가(congé d'adoption), 교육훈련휴가(congés de formation) 또는 가족경조사휴가(congés pour événements familiaux)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아동 돌보기를 중단할 수 없다. - 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아동의 상황, 특히 아동의 심리적·감성적 욕구 및 (부모의 휴가 등의 기간동안) 아동가족에 의한 아동 돌보기의 가능 여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아동을 맡아 돌보는 자의 가족의 바람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부모의 연차휴가기간 동안에도 아동이 해당 부모의 주거에 맡겨지는 경우에는 L.773-6조가 규정하는 수당 외에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 임신(une maternité)과 관련하여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잠정적으로 아동 돌보기의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휴가기간의 한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임신 7개월 말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L.773-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부모에게 어떠한 아동도 위탁하지 않는 조

구분	내용
	<p>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우 부모는 L.773-5조에 규정된 보상수당(indemnité compensatrice)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급되는 일일수당(une indemnité journalière)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사용자와 부모간에 합의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안에 부모가 이전의 아동을 다시 맡아 돌본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의해 3개월 이상 사용되었던 자에게만 적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당사자에 의한 위의 약정의 미준수는 계약해지의 남용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 연속된 3개월의 기간 동안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L.773-7조가 규정하는 등기우편 통지서를 부모에게 발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렇지만 사용자는 서면으로 부모에게 청문절차(un entretien) -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앞으로 더 이상 아동을 위탁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함 - 의 소집을 알린 이후에만 이러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사용자는 L.773-7조가 규정하는 통지서에 전항이 규정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L.773-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사용자에게 의해 3개월~6개월 사용된 경우 15일의 해고예고 ·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의 해고예고 ·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의 경우 2개월의 해고예고
L.773-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의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15일 이전의 예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그 기간의 단축을 수락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 자신에게 위탁된 아동을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 위의 규정들의 미준수는 계약해지의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L.773-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L.773-7조가 규정하는 수당 이외의 해고수당이 지급된다. - 이러한 해고수당의 최저액은 해고 이전 6개월의 월평균임금액에 의거하여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L.773-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2장 제5-2절 및 제4권 제6편 제1장의 규정들은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 적용된다.
L.773-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 첫 번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에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부모는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위탁된 아동에 고유한 욕구·필요에 상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시간 동안 위탁된 아동의 돌보기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교육의 기본적 내용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부모가 이전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교육면제에 관한 사항은 데크레(décret)로 정한다.

97) [역주 : 보상수당은 평상시처럼 아동이 부모에게 맡겨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인 부모에 의해 지급되게 된다. 보상수당은 일시적으로 다른 아동을 맡아 돌보는 부모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다 돌보는 부모는 L.773-3-1가 규정하는 보장된 보수를 수령하며 이것은 아동의 일시적 부재의 경우에도 지급된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보상수당은 학교 방학 또는 부모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최소 15일 이전의 충분한 사전 통지를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록 2.

조사지역	조사표 번호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베이비시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베이비시터 회사 운영자의 현황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오로지 통계 및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여성가족부 장관·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연락처: 서문희 연구위원 02)730-3053 suhmh@kicce.re.kr
 신나리 부연구위원 02)733-2327 shinary@kicce.re.kr
 이정원 부연구위원 02)730-3811 dian74@kicce.re.kr
 이세원 연구원 02)730-3059 eghao@kicce.re.kr

회 사 명		
출 폐 이 지 주 소		
연 락 처	tel)	Fax)
소 재 지		

육 아 정 책 개 발 센 터

6. 귀 회사에서는 베이비시터를 모집할 때 학력·경력 및 연령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질 문	답 변
학력을 제한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제한 없음
경력을 고려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고려함 <input type="checkbox"/> ② 고려하지 않음
연령을 제한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제한함(____세부터____세) <input type="checkbox"/> ② 제한하지 않음
결혼 상태를 제한합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기혼 유자녀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② 기혼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③ 제한 없음

7. 귀 회사에서는 베이비시터를 모집할 때 선호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자격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유치원 교사 ② 초등학교 교사 ③ 보육교사 ④ 간호사
 ⑤ 기타(무엇:_____) ⑥ 없음

8. 귀 기관에 새로 등록하는 베이비시터 희망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초기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시간

9. 교육은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 ① 자체 직원 ② 초빙 인사
 ③ 외부 베이비시터 훈련기관에 위탁 ④ 기타 _____

10. 어떤 교재를 사용합니까?

- ① 자체 제작 ② 총연합회 공통 교재
 ③ 외부 단행본 ④ 기타 _____

11.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커리큘럼을 수집하세요)

12. 귀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베이비시터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어느 정도 충분 ③ 약간 부족 ④ 매우 부족

12-1. 교육이 보완되는 경우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교육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교육기간	비용
_____시간 과정에	<input type="checkbox"/> ① 회비에 포함(교육비 추가 부담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회비에 불포함(교육비: _____원)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_____

14. 귀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나 됩니까? (없으면 0이라고 기입)
 약 _____%

15. 신규 교육 이외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습니까?

-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지 않는다



15-1. 얼마마다 몇 시간을 실시합니까? _____마다 _____시간
--

16. 활동하는 베이비시터간 자체 정기 모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기는 얼마입니까?

- ① 월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연 2회 ④ 연 1회 ⑤ 없음

17. 회사 주관의 베이비시터 정기 모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기는 얼마입니까?

- ① 월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연 2회 ④ 연 1회 ⑤ 없음

18. 베이비시터 수요에 비하여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부족 ④ 매우 부족

19. 귀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동 1인당 베이비시터 서비스의 기본적인 서비스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구 분	요 금
시간제	최소 ()시간에 ()원, 시간당 ()원 추가 아이 1명 추가시 ()원
종일제 하루	()시간 하루에 ()원
종일제 한달	()원

20. 귀 회사에서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탁아 이외에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입주 베이비시터 | <input type="checkbox"/> ② 현장학습 대행시터 | <input type="checkbox"/> ③ 영어 시터 |
| <input type="checkbox"/> ④ 학습 시터 | <input type="checkbox"/> ⑤ 아픈 아동 시터 | <input type="checkbox"/> ⑥ 이벤트 대행 |
| <input type="checkbox"/> ⑦ 실버 시터 | <input type="checkbox"/> ⑧ 놀이 시터 | <input type="checkbox"/> ⑨ 산모 도우미 |
| <input type="checkbox"/> ⑩ 가사 도우미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무엇: _____) | |

21. 귀 회사에서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탁아 베이비시터 업무는 전체 회사 업무 중 몇 %를 차지합니까?

약 _____%

22. 귀 회사는 베이비시터나 서비스 이용자와 일정한 약관 및 양식에 의한 서면계약을 합니까?

질문	서면계약 여부	약관 여부
베이비시터	<input type="checkbox"/> ①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이용자	<input type="checkbox"/> ①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23. 귀 회사에서 베이비시터에게 육아 일지를 쓰게 합니까? 또한 베이비시터가 이를 잘 지킵니까?

- ① 베이비시터가 반드시 일지를 쓴 후 부모 확인을 받아 제출함
- ② 베이비시터가 반드시 일지를 쓴 후 제출하도록 함
- ③ 베이비시터에게 일지를 쓰도록 하나 잘 안 지킴
- ④ 베이비시터에게 일지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24. 귀 회사에서 베이비시터에게 육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하루 단위로 일할 때 마다 ② 주 단위로 보고 받음 ③ 월 단위로 보고 받음 ④ 안 받음



24-1. 보고를 받으시는 경우 어떻게 받으십니까?

- ① 전화로
- ② 서면으로(양식을 수집하세요)
- ③ 시터가 업체에 방문하여
- ④ On-line(홈페이지, 이메일 등) 상으로
- ④ 기타 _____

25. 귀 회사에서 2007년 1월 이후 베이비시터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25-1.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26. 베이비시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없다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			
베이비시터 회사 협회 가입			
베이비시터 공동 교육			
표준화된 교재 제작			
교육 인력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 절차			
표준화된 규정, 복무 규칙 등			

27. 귀 회사 베이비시터로 등록되어 지난 1개월간(2007. 7월) 한 번이라도 일을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28. 귀 회사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아동 어머니의 취업과 전업주부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취업모 _____%, 전업주부 _____%

29. 귀 회사에서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아동 대상 보험	시터 대상 보험	회사 보험	기타

30. 귀 회사의 주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는 어떠하며,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령	만 3세 미만(2004년~2007년 출생)	전체의 %
	만 3세 이상~만 5세까지(2003년 출생~취학 전)	전체의 %
	초등학교 취학 연령	전체의 %
	계	100 %
기관 이용 여부	미취학 전체 아동 중 집에만 있는 아동	%
	미취학 전체 아동 중 기관(보육시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
	계	100 %

31. 귀 회사 베이비시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통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자녀유무	학력	자격
남 ()%	20대 ()%	기혼·유자녀()%	대학생 ()%	보육교사 ()%
여 ()%	30대 ()%	기혼·무자녀()%	고졸미만 ()%	유치원교사 ()%
계 (100)%	40대 ()%	미혼 ()%	고졸 ()%	기타 ()%
	50대이상()%	계 (100)%	전문대졸 ()%	별 자격 없음 ()%
	계 (100)%		4년제대졸이상 ()%	계 (100)%
			계 (100)%	

32. 귀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귀 회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구)에 거주하는 베이비시터는 몇 % 정도 됩니까? _____%

33. 귀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기록하거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연 령	회사 운영기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만 _____세	_____년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 베이비시터 이용에 따른 요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함(질문 10번으로) ② 적절하지 않음(9-1번으로)
 ↓
- 9-1. 베이비시터 이용 요금이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당 ()원
10. 베이비시터를 하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① 가사도우미 ② 학습지 교사 ③ 보육교사
 ④ 이외 아동 양육에 관련된 직업 ⑤ 아동 양육과 무관한 직업 ⑥ 없음
11. 베이비시터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시간 활용이 용이해서 ②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③ 수입이 괜찮아서 ④ 구직이 쉬워서
 ⑤ 주변의 소개로 ⑥ 기타 _____
12. 베이비시터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② 생각해 보지 않았음
 ③ 생각해 보고 있음 ④ 다른 일을 찾고 있음(12-1번으로)
- 12-1. (12번에서 ③ 다른 일을 찾고 있음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적성에 안 맞아서 ② 업체와의 갈등 때문에
 ③ 아동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④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서
 ⑤ 평생 직업으로 삼기 어려워서 ⑥ 기타 _____
13. 현재 베이비시터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① 다른 주업이 있고 베이비시터를 부업으로 하고 있음
 ② 베이비시터가 주업이고 다른 부업과 병행함
 ③ 베이비시터로만 종사함
14. 현재 본 베이비시터 업체 외 다른 베이비시터 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베이비시터 일만 하고 있음 ② 다른 베이비시터 업체 일도 하고 있음
15. 베이비시터로 일한 경력은 어떠합니까?
 ()년 ()개월

16. 귀하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세
2)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고졸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대(중퇴)졸 <input type="checkbox"/> ④ 4년제 대학(중퇴)졸 이상
3)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기혼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 또는 사별
4) 자녀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자녀수 명)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5) 보육관련 자격	<input type="checkbox"/> ①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유치원 교사 <input type="checkbox"/> ④ 초등학교 교사 <input type="checkbox"/> ⑤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⑥ 간호조무사
6)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원 소득을 모두 합산)	월 ()만원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조사지역	조사표 번호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단한 질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소장

지난 3개월 동안 베이비시터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2. 귀하께서는 베이비시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① 매우 자주 ② 비교적 자주 ③ 가끔 ④ 어쩌다가 한번
3. 귀하께서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정기적으로 이용 ② 필요할 때만 부정기적으로 이용
4.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1회 이용시 몇 시간, 총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에 ()시간 이용	한달에 ()회 이용
한달에 총 ()시간 이용	

5. 한번에 주로 몇 명의 자녀를 동시에 돌보게 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6.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이 돌보는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답변
1)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2) 성별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녀
3) 현재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유치원(영어유치원 제외) <input type="checkbox"/> ②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학원(영어유치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⑥ 다니는 곳 없음
4) 낮시간에 주로 누가 돌보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모 <input type="checkbox"/> ② 모 이외 조부모 등 가족 <input type="checkbox"/> ③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④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7. 귀하께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시는데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월 평균 _____원

8. 귀하께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몸이 불편할 때 ② 집안 일로 바쁠 때 ③ 취미활동, 외출 등 사회활동 때문에
 ④ 평소에 자녀 돌보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⑤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⑥ 기타(_____)

9. 보육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음(9-1번으로) ② 모름(10번으로)

9-1. (9번에서 ① 알고 있음에 대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서도 시간제 보육을 하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② 아이가 보육시설에 적응을 잘 못해서
 ③ 보육시설을 믿을 수 없어서 ④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
 ⑤ 내 아이에 대한 집중적 보육을 원해서 ⑥ 기타(_____)

10. 귀하께서는 베이비시터를 선택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양육 경험 ② 학력 ③ 연령 ④ 교양
 ⑤ 인성 ⑥ 기관의 신뢰도 ⑦ 기타(_____)

11. 현재 이용하는 베이비시터 파견 업체 관계자와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사업 관계자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베이비시터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현재 이용하는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문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성실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3. 다른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본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요금이 적절해서 ② 기관 이미지가 좋아서
 ③ 베이비시터의 인성, 전문성 등이 마음에 들어서
 ④ 입회 및 이용이 수월해서 ⑤ 기타(_____)

14.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의 연령, 최종학력, 직업과 귀댁의 월 평균 총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령	어머니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직업	근무시간	가구 월 평균 수입 () 어머니의 월 평균 수입 () (아래에서 골라 번호로 기재)
만__세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고졸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대(중퇴)졸 <input type="checkbox"/> ④ 4년제대(중퇴)졸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 직업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③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④ 판매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⑤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⑥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② 반일제 <input type="checkbox"/> ③ 부정기적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⑦ 350~399만원 ⑧ 400~449만원 ⑨ 450~500만원 ⑩ 500만원 이상 ⑪ 없음

15. 베이비시터 파견사업 관계자이나 베이비시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탁보고 2007-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07년 11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